재보험 시장분석

<집필자>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과 장(시장구조개선과) 고행석 사무관(시장구조개선과)

(사) 보험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 연 구 원 권오경 연구원 정인영 연구원

➢요 약 ≪

I. 재보험시장 구조·행태·성과

1. 시장획정

- □ [관련 상품시장] 관련 상품시장은 공급대체성과 수요대체성에 따라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2개의 재보험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다만, 재보험의 기능 및 효용을 고려하여 일반손보, 장기 손보,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등 4개의 재보험시장으로 구분하여 같 이 살펴보도록 함.
 - 공급대체성 평가: 손보와 생보 재보험종목별로 별도의 기술, 경험, 통계,
 조직 등이 필요하므로 손해 또는 생명재보험만을 취급한 재보험사가 영업
 종목을 변경 또는 확대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함.
 - 따라서 손해재보험시장에 또는 생명재보험시장에 유의미한 요율인상이 있더라도, 재보험사들은 종목 전환 또는 확대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을 수있음.
 - 수요대체성 평가: 고객인 원수손보사와 원수생보사가 손해재보험과 생명 재보험을 대체재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장기손보(상해, 질병 담보)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생명재보험사와 손해재보험사에 모두 출재할 수 있음.
 - 즉, 수요자가 요율변동에 따라 손해재보험을 생명재보험으로 전환하는 것 은 불가능함.
- □ [관련 지리적 시장] 재보험서비스 수요자의 지리적 전환비용과 공급 자의 지리적 전환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시장을 국 내시장으로 봄이 타당함.
 - 재보험서비스의 본원적 요소가 위험분산 등 위험통제적인 가치임을 고려할 때 재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요자는 요율수준과 함께 위험관리 측면의 제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해외소재 재보험사와의 업무시간 등의 차이가 국내 원보험사 입장에서는 지리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요자의 지리적 전환비용이 적지 않음.

- 해외소재 재보험시는 우리나라 보험업법, 상법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내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해외소재 재보험시와 거래한 원보험시는 다음과 같은 비용 및 위험에 노출됨: ① 거래상대방인 해외소재 재보험시에 대한 정보 및 감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재보험 사의 파산 및 지급불능 위험에 대한 우려가 국내소재 재보험사와 거래할 때 보다 현저히 큼. ② 거래상대방인 재보험시의 파산 및 지급불능 시 국내 소재 이해관계자가 청산과정에서 더 불리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③ 국내 원보험시가 지급불능에 처할 경우 청산인이 해당 원보험시와 계약을 체결한 해외소재 재보험시로부터 재보험금을 회수하는 데 법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해외소재 재보험사의 대면영업이 금지되고 보험중개사의 법적·실무적 권한과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급자의 지리적 전환비용이 적다고 보기 어려움.

2. 시장규모

- □ 국내 재보험시장규모는 2011년¹⁾ 기준 6조 2,773억 원(총 출재보험료)으로 원보험시장규모(145조 8,315억 원)의 4.3%를 차지함.
 - 손해재보험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5조 535억 원(출재보험료)으로 전체 재보험시장의 81%를 차지함.
 - 재보험시장규모는 2005~2011년 기간 동안 연평균 1.9%씩 증가한 반면, 원보험시장규모는 8.9%씩 증가함.
 - o 한편, 2011년 기준 원보험사를 포함한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국내지 점의 총(재)출재보험료는 8조 2,426억 원임.

3. 시장구조

국나	내시장에서는	코리안리,	해외	재보험시	ㅏ 국내지점	l, 해외소자	ㅐ 재보험
사.	원보험사가	재보험공급	자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¹⁾ 본 보고서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사용함. 2011 회계연도는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o 국내소재 전업재보험사는 재보험과 재보험관련서비스만을 취급하는 회사 로서, 현재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 등 9개사가 영업 중임.
- 코리안리, 제너럴리, 뮌헨리, 스위스리, RGA, 스코리, 하노버리, 동경해상, AIG UG
- ㅇ 해외소재 재보험사는 제한적으로 국내 보험사와 재보험거래를 할 수 있음.
- o 보험종목별로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원보험사는 재보험을 취급할 수 있음(보 험업법 제4조 제2항).
-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회사는 영위하는 보험업의 범위 내에서 생명보 험뿐만 아니라 제3보험의 재보험을 취급할 수 있음.
- □ 코리안리의 손해생명재보험시장 점유율은 2011년 61%로 RBC제도 도입이후 생명재보험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면서 전체 재보험시장 점유율도 증가함.
 - o 동기간 코리안리의 손해재보험시장 점유율은 65%임.
 - 원보험사의 재보험의존도가 높은 일반손보 점유율은 59%에 이름.
 -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점유율은 각각 75%, 87%임.
 - 코리안리의 생명재보험시장 점유율은 2011년 기준 43.2%로 전년(24.1%)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 2009년부터 RBC제도의 부분 시행으로 인해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해외출재가 급감한 반면 국내출재는 소폭 증가함.
- □ 해외소재 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25%로 RBC제도 도입이전에는 50% 대를 유지함.
 - o 해외소재 재보험사의 손해재보험시장 점유율은 26%이고 원보험사의 재보험의존도가 높은 일반손보 점유율은 31%임.
 - o 해외소재 재보험시의 생명재보험시장 점유율은 24%로 2008년(74.1%)의 1/3수준에 불과함.
 - 2009년부터 RBC제도의 부분 시행으로 인해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해외출재 가 급감한 반면 국내출재는 소폭 증가함.
- □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과 원보험사의 재보험시장점유율은 14%로 지난 7년(2005~2011년)동안 3배 이상 성장함.

- ㅇ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과 원보험사의 손해재보험시장 점유율은 10%임.
- o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의 생명재보험시장 점유율은 32.7%임.
- 2009년부터 RBC제도의 부분 시행으로 인해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해외출재 가 급감한 반면 국내출재는 소폭 증가함.

4. 시장행태

가. 재출재

- □ 코리안리는 2011년의 경우 원보험사가 출재한 보험료의 61%를 인수 하고 이중 44%를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 원보험사, 해외소재 재보 험사 등에 재출재함.
 - 원수손보사가 출재한 보험료의 65%를 인수하고 이중 47%를 재출재함.
 - 국내 원수손보사로부터 수재한 보험료의 39%는 해외로 재출재됨.
 - 또한 원수생보시가 출재한 보험료의 43%를 인수하고 이중 26%를 해외로 재출재함.
 - 특히, 코리안리가 국내 원보험사로부터 수재한 보험료의 47.5%에 해당하는 일반손보의 경우 재출재율이 79%에 이름.
 - 이 따라서, 일반손보의 경우 '뮌헨리' 등 해외재보험사 8개 지점의 코리 안리에 대한 의존도는 2010년에 적어도 57%에 이름.

나. 요율경쟁

- □ 먼저, 코리안리는 국내수재시장보다는 해외수재시장에서 보다 치열 한 경쟁에 직면하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 o 관찰기간 동안 코리안리의 해외수재 평균 손해율과 수수료율은 모두 국 내수재에 비해 높음.
 - 특히, 코리안리의 일반손보 손해율은 국내수재가 50%로 해외수재에 비해 약 30% 낮은 반면, 수수료율은 해외수재보다 2% 낮음.

- o 다만, 일반손보의 경우 꼬리리스크(tail risk)²⁾가 요율에 반영되기 때문에 7개년(2005~2011년) 손해율을 비교함으로써 경쟁도를 유추하기에는 관찰기간이 짧을 수 있음.
- 즉, 관찰기간 7년 내내 국내시장에서는 운이 좋아 대형보험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동기간 해외시장에서는 7년 내내 상대적으로 운이 나빠 대형보험사고가 일어났을 현저히 극단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음.
- □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은 일반손보 부문에서 안정적이고 상호 유사한 실적을 보임.
 - o 관찰기간 동안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은 약 50%의 손해율과 25%에 못 미치는 수수료율을 제시하고 있음.
 - 코리안리의 최근 7년(2005~2011년)간 일반손보 평균 손해율은 50%로 미국 또는 세계 주요재보험사보다 매우 낮은 편임.
 - 미국소재 재보험사의 최근 7년(2006~2012년)간 평균 손해율은 67%, 세계 주요재보험사의 최근 5년(2008~2012년)간 평균 손해율은 65%임.

5. 시장성과

- □ 최근 10개년 동안 코리안리는 보험영업에서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지 만, 투자영업에서 이를 보전함으로써 2012년에는 1,355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함.
 - o 코리안리는 해외수재에서 큰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수재만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양호한 보험영업실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됨.
 - 코리안리는 관찰기간 동안 내내 일반손보에서 보험영업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 보험영업적자의 주요인인 해외수재를 감안하더라도, 코리안리의 최 근 10개년 평균 ROE는 11.6%로 세계 주요 재보험사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
 - o 세계 주요 재보험사들의 최근 5개년(2008~2012년) 평균 ROE(Return on

²⁾ 꼬리리스크(tail risk)란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헤어나기 어려운 리스크를 의미함.

Equity)³⁾를 살펴보면, 미국버뮤다 소재 재보험시는 7.7%, 유럽소재 대형4시는 7.8%, 로이드는 11.7%임.

- 동기간 코리안리의 평균 ROE는 10.4%임.
- 또한, 2011년 보유보험료 기준 상위 10대 재보험사들의 2002~2010년(9년)기간 동안 평균 ROE는 9.9%이며, 동기간 코리안리의 평균 ROE는 13.5%임.
- 싱기 세계 10대 재보험시는 Munich Re, Swiss Re, Hannover Re, SCOR Se, Partner Re, Everest Re, Transatlantic Holdings를 포함함.
- 2001년에는 911테러공격과 2005년에는 허리케인 Katrina, Rita, Wilma 등 대형 자연재해로 인해 세계 주요 재보험사들의 보험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반면, 2006~2010년 사이에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영업실적의 악화 외에는 대형재해가 없었음.
- o 한편, 코리안리는 코리안리의 ROE가 세계 주요재보험사보다 높은 것은 낮은 사업비에 기인한 것이지 유효경쟁 부재 및 독점적 요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코리안리가 상기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해외 주요 재보험사의 사업비율은 각각 뮌헨리 5.5%, 하노버리 2.5%, 스코르리 4.2%, 토아리 5.9%이며, 코리안리의 사업비율은 1.8%임.
- ROE는 자본총계 대비 당기순이익으로, 사업비율이 증가할수록 당기순이익 및 ROE가 감소함.
- □ 한편, 코리안리와 달리 해외수재를 하지 않고 국내수재에 집중하는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의 영업기간 동안 평균 ROE는 뮌헨리 50%, 스위스리 44%로 높은 수준임.
 - 한면, 손해재보험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분산된 생명재보험에 집중한 하노버리나 RGA의 경우 평균 ROE는 타 지점에 비해 현저히 낮음.

³⁾ ROE(Return on Equity)는 자기자본이익률로, 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기간이익의 비율임.

Ⅱ. 정부규제

- □ 재보험규제는 재보험사에 대한 직접규제와 출재사를 통한 간접규제 가 있음.
 - 직접규제란 감독당국이 재보험사의 진입, 가격, 영업행위, 건전성 등을 직접 규제하는 것임.
 - 간접규제란 감독당국이 자국에서 영업하는 해외소재 재보험사에 대해 직접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국 출재사의 재보험거래에 대해 규제함으로 써 재보험사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임.
 - 국경간 거래라는 재보험의 성격상 소재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재보험 사를 자국 감독기관이 직접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구체적으로 출재사의 재보험자산 인정요건(책임준비금 적립면제조건), 지급여력조건, 재보험관리모범규준 등을 통해 일정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재보험사의 진입을 간접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 재보험사에 대한 직접규제는 다음과 같음.
 - 국내에서 재보험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법인설립, 지점설립, 비인 가 재보험사로서 역외에서 영업하는 등 세 가지가 있음.
 -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하며, 국내지점설립을 위해서는 30억 원 이상의 영업기금이 요구됨.
 - 해외소재 재보험사도 국내 원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임원 및 직원이 대한민국 안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업 무, 즉 대면영업을 할 수 없음.
 - ㅇ 원보험사와 달리. 재보험사의 요율 및 수수료에 대한 규제는 없음.
 - 재보험사는 재무건전성기준, 공시, 검사 및 제재조치에 대해 원보험사와 동일한 규제 및 감독을 받음.
 -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은 법인형태의 재보험사와 동일하게 보험업법의 적 용을 받음.
- □ 재보험사에 대한 간접규제는 다음과 같음.
 - o 첫째, 재보험을 받은 회사가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인 경우 해당 출재 분은 출재사의 재보험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재보험시는 시장진입을 위해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을 유지할 유인이 있음.
- 둘째, 신용위험액⁴⁾ 산출시 재보험자산에 대한 위험계수는 재보험사의 신용등급별로 0.8~6%를 적용함.
- 재보험을 받은 회사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출재사의 요구자본5)에 대한 부 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재보험사는 영업을 위해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할 유인이 있음.
- o 셋째,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은 출재사가 재보험계약을 관리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들을 권고함.
-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은 재보험사 선택과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재보험거래의 경우 집중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역별 한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Ⅲ. 해외사례

- □ 국영재보험사의 독점체제를 장기간 유지하다 재보험시장을 해외재보 험사 등에 개방하는 경우 국영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로 하락하는 등 경쟁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관찰됨.
 - 브라질 IRB는 2008년 4월 시장개방 후 2년만에 점유율이 26%(2010년)로 하락하였고 중국의 China Re는 손해재보험시장에서 2011년 기준 38%의 점유율을 보임.
- □ 역설적이게도, 브라질의 원보험사 또는 재보험사에 적용되는 각종 출재 및 재출재 제한은 해외재보험사들이 브라질에 법인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함.
 - 원보험시는 수입보험료의 50%를 초과하여 출재할 수 없고 출재보험료의 40%를 현지 재보험사에 우선 출재해야 하며, 출재보험료의 10%를 초과하

⁴⁾ 신용위험액은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중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위험액을 의미함.

⁵⁾ 요구자본은 해당 보험회사에 내재된 보험·금리·시장·신용·운용위험액의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된 필요 자기자본을 의미함.

- 여 Occasional 재보험사에 출재할 수 없음.
- o 더욱이, 현지 재보험시는 수재보험료의 50%를 초과하여 재출재할 수 없고 계열재보험사에 20% 이상을 재출재할 수 없음.
- 따라서, 해외재보험사들이 우리나라처럼 특정 재보험사로부터 재출재받는
 는 사업모형을 지향하는 경우 일정수준이상의 매출 및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음.
- 즉, 해외재보험사가 브라질 재보험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매출 및 수 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브라질에 합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함.
- □ 중국 재보험사의 낮은 재출재율은 재보험시장 개방 이후에도 유지되어 해외재보험사들이 국영재보험사로부터 재출재받는 사업모형을 추구하는 대신 중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경쟁을 촉진함.
 - 중국 원보험사와 국영재보험사의 (재)출재율은 10% 미만임.
 - o 경제성장과 함께 원보험과 재보험 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지만, 커 진 시장을 China Re가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해외재보험사에 재출재하는 구조가 형성되지 않음.
 - o 커진 재보험시장을 China Re와 해외재보험사들이 각사의 담보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경쟁적으로 수재하는 구조가 형성됨.
- □ 중국과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영재보험사의 독점체제를 장기간 유지하다 비슷한 시기에 시장을 개방하였으나, 현재 우리나 라와는 대조적인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음.
 - 브라질과 중국은 경제규모가 크고 시장개방 당시 보험시장의 성장이 진행 중이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보험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음.
 - 시장개방 당시 우리나라는 모든 차별적 규제를 폐지하고 재보험거래에 대한 구속력 있는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반면 브라질과 중국은 국내우선 출재제도 등 차별적 규제를 점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재보험거래 에 대한 각종 규제(출재 및 재출재 규제)를 제 · 개정함.

Ⅳ.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지배적지위 추정 사업자 존재

- □ 관련 상품시장을 손해재보험시장과 생명재보험시장으로 구분하고 관련 지리적 시장을 국내시장으로 상정할 경우 독점규제법 제4조에 의거하여.
 - o 코리안리는 손해재보험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점유율 60% 이상)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
 - 생명재보험시장에서는 코리안리의 점유율이 43%이지만, 이는 2009년 RBC 제도 도입으로 인해 원수생보사의 출재보험료가 급감한 상황에서 도출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상황의 점유율에 근거하여 경쟁도를 판단하기는 곤란함.

2. 재출재율 47%의 의미: 경쟁유인 약화와 비효율 증가

- □ 손해재보험시장에서 코리안리의 65% 점유율은 사실상 47%의 재출재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음.
 - 세계 주요재보험사들의 재출재율이 10% 미만이고 이들이 경쟁사와 언더라이팅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최소한의 재출재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리안리의 재출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이는 세계재보험시장의 보편적인 관행이라 보기 어려움.
- □ 무엇보다도, 코리안리의 높은 재출재율은 타 재보험사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는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경쟁하려는 유인 또는 의지를 약화시킬 개연성이 높음.
 - o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 또는 해외소재 재보험사에 코리안리는 고객(출재 사)이자 경쟁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국내시장에 진입하여 적극 적으로 경쟁할 유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내재함.
 - 해외소재 재보험사가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국내위험 수재에 성공한다더라도. 그 규모가 코리안리의 재출재가능 위험의 규모에 비할 바가 아니

기 때문에, 해외소재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중개사를 통해 국내 원보 험사로부터 수재하는 것을 포기하고 코리안리의 재출재 물건을 수재할 유인이 큼.

- □ 또한, 원보험사 입장에서 코리안리의 높은 재출재율은 적어도 이론 적으로는 거래비용이 이중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비해 보다 높은 요율로 귀결될 수 있음.
 - ㅇ 즉, 유통단계가 짧을수록 거래비용이 줄어든다는 단순한 논리임.

3. 높은 진입장벽 존재: 초기 자본금 압박

- □ 현재 재보험사 법인 설립 시 2가지 종류의 진입장벽이 존재함.
 - o 첫째, 법인 설립 인가를 위한 자본금은 3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정상적 인 재보험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초기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함.
 -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재보험을 받은 회사가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투자부적격인 경우에는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하여야 함.
 - 비꿔 말하면, 원보험시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투자부적 격인 재보험시에 출재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재보험사가 정상적인 재보험영업을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투자적격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그러나, 신생업체의 경우 아무리 재무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좋은 신용등 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함.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신용등급은 5년 이상 큰 손실 없이 보험영업을 잘했을 경우 A- 정도의 등급을 획득할 수 있음.
 - o 둘째,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는 선발사업자의 존재는 그 자체로 신규 진입자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선발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초기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함.

4. 요율경쟁과 수익성

□ 코리안리의 상대적으로 낮은 손해율과 높은 ROE를 감안하면, 국내 재보험시장에 요율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 려우며, 적어도 국내 재보험시장의 수익성이 좋지 않아 신규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5. 고집중 재보험시장 존재의 의미

-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여부에 상관없이 코리안리의 60%에 육 박하는 시장점유율 및 유효경쟁부재는 다음의 관점에서 문제가 됨.
 - ㅇ 첫째, 경쟁 및 시장효율성 악화
 - ㅇ 둘째, 신용리스크 증가와 원보험사계약자 피해
 - 출재가 특정 재보험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원보험사 입장에서는 거래 상대방리스크, 즉 신용리스크(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출재보험료의 60%가 코리안리로 간 상황에서 국지적 대재해(인재 또는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재출재를 통한 위험분산에 상관없이 코리안리는 일순 상당한 지급책임에 직면하게 됨.
 - o 셋째. 원보험사와 시장지배적사업자간 담합유인 제공
 -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요율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암묵적 담합을 통해 독점적 이윤을 공유하는 상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보험시장 이 독점적이거나 원보험사들 간에 담합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원보험 사들이 독자적으로는 독점이윤을 얻지 못하고 재보험사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여야 하며, 셋째,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수가 적어야 함.
 - 일반손보의 경우, 공동인수(☞ 원보험시간 공동행위 가능성 내재)와 협의 요율(☞ 원보험시의 재보험시에 대한 의존도 심화), 재출재(재보험시장 경 쟁유인 약화) 등 상기 조건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환경임.

V.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1. 기본원칙: 건전성제고와 부합하는 경쟁촉진
- □ 재보험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건전성규제 목적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 모색

2. 유효경쟁 촉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

- 가. 원보험과 구분된 재보험 법제 마련 필요성
- 1)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재보험업은 손해보험업으로 분류되어 재보험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제가 없음.
 - 원보험과 재보험은 위험전가의 수단이고 신용리스크와 투자리스크가 존 재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 □ 재보험은 계약의 유형 및 복잡성, 변동성, 지역적 범위(국경간 거래), 현금흐름, 수재위험에 대한 정보, 요율체계 측면에서 원보험과 다르고, 이러한 차이는 원보험업과 재보험업간 상이한 규제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먼저 원보험은 손해보험의 대형리스크를 제외하고는 계약이 대체로 표준화되어 있는 반면 재보험은 출재사의 특정요구를 충족시키는 개별계약이 일반적이며 재보험사는 원보험사 뿐만 아니라 재보험사, 재 재보험사로부터 수재하기 때문에 위험의 구성이 원보험에 비해 훨씬 복 잡함.
 - 이는 재보험사의 실제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보험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함.
 - ㅇ 둘째, 재보험사업은 원보험사업보다 변동성이 더 큰 경향이 있음.
 - 원보험은 익스포저가 비교적 작은 다수의 증권들로 구성된 반면 재보험은

누적손실에 노출되어 있고 대형손실의 가능성이 큼.

- 통상 재보험시는 최종 위험인수자로서 원보험사에 비해 보유율이 높음.
- 셋째, 원보험과 달리 재보험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국경간 거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보험에 적합한 국내기반 감독은 재보험에 적합하지 않음.
- 넷째, 요율이 사전에 정해진 원보험계약과 달리 재보험계약에서는 이익수수료 또는 요율조정을 통해 재보험사와 출재사가 위험뿐만 아니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임.
- 요율조정조건부 계약은 고정요율조건부 계약보다 리스크 익스포저가 더 낮은 경향이 있음.
- ㅇ 다섯째, 원보험과 달리 신용등급은 재보험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대부분의 국가가 원보험사의 지급불능에 대비한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보험계약 체결시 원보험사의 신용등급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님.
- □ 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원보험업과 동일한 규제를 재보험업에 적용 하는 것은 건전성과 공정경쟁 측면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음.
 - 예를 들어, 재보험거래는 원보험에 비해 상당히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원보험과 동일한 보고 및 공시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재보험시장의 구조·행태·성과 뿐 아니라 재보험사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2) 해외사례

- □ EU의회는 2005년 재보험지침(Reinsurance Directive)을 승인하여 EU 회원국이 2007년 12월까지 동 지침을 자국법에 반영하도록 함.
 - EJ 재보험지침은 재보험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재보험사업 영위 요건 등 재보험관리감독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기술함.
 - o EU가 재보험지침을 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재보험에 대한 규제가 회원국간 상이하여 역내 국경간 거래가 위축되고 재보험 영업과 감독에 비효율이 초래됨에 따라 EU는 회원국간 표준화된 재보험감독기준의 필요성을 절감함.
 - 둘째, 원보험과 다른 재보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재보험감독기준의 필요 성을 절감함.
- □ 중국은 2005년 재보험업 경영에 대한 규제(Regulations on

Administration of Reinsurance Business)를 제정하여 적용함.

3)	개선방안
	재보험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재보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재보험업에 대한 법제는 건전성뿐만 아니라 재보험시장의 경쟁 및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나	. 재보험거래에 대한 보고 및 공시 정보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 원보험사와 재보험사는 재보험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 및 공시하고 있는데, 현행 보고 및 공시 정보로는 재보험시장 규모는 물론 재보험시장의 구조·행태·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함.
 - o 현행 업무보고서상의 자료만으로는 허핀달 지수는 물론 특정 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함.
 - 원보험사의 원수보험료 중 일부가 어느 재보험사에 얼마나 출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허핀달 지수를 산출할 수 없음.
 -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직접 수재한 보험료와 타 재보험사 등으로부터 재출재받은 보험료가 구분되지 않아 재보험사의 점유율 파악이 불가능함 (따라서, 특정 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거래내용이 거래단계별로 구분되지 않아(예를 들어, 출재보험료와 재출 재보험료가 구분되지 않음) 재보험시장 규모는 물론 재보험시장의 구 조·행태·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함.
- □ 특정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투명성 부족은 거래당사자의 반경쟁적 행위 발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2	\ 7L	ᅛ	ш	늰인
۷.	/ / [1	. 0	

- □ 건전성뿐 아니라 공정하고 경쟁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 도록 재보험거래에 대한 보고 및 공시 정보를 전면 개선해야 함.
 - 무엇보다도, 거래상대방별·거래단계별 출수재보험료 등 거래내용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해야 함.

3) 기대효과

□ 재보험거래의 보고 및 공시 정보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는 거래당 사자의 반경쟁적 행위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3. 유효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가. 집중도 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
- 1) 현황 및 문제점
- □ 특정 재보험사에 대한 높은 집중도는 경쟁 및 효율성, 그리고 건전 성 및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를 규제할 실효 성 있는 법규가 없음.
 - o 재보험시장에 점유율 50%이상의 선발사업자는 그 자체로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으로써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또한, 지역적으로 다변화되지 않은 유사위험을 특정 재보험사가 60% 이상 수재한 상황에서 국지적 대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원보험사, 원보험계약자(가계 및 기업) 등이 연쇄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음.
 - o 한편,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은 재보험거래의 집중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역 별 한도 등이 명시된 문서화된 기준을 마련하도록 출재시에 권고하고 있 으나 동 모범규준은 실효성이 부족함.

2) 해외사례

- □ 주요국의 경우 출재집중도를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음.
 - IAI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출재사의 재보험사 선택 및 평가 기준의 최소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보험사의 지급능력 평가 뿐 아니라 1사당 또는 1그룹당 거래한도 등 집중도 평가에 대한 기준 마련을 권고 하고 있음.
 - 이 미국과 영국의 경우 특정 재보험사에 대한 재보험 의존도가 일정 수준이 상이면 감독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 o 호주의 경우, 요구자본산출시 자산집중리스크⁶⁾를 반영함으로써 원보험사의 출재가 특정 재보험사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

3) 개선방안

- □ 다음과 같은 개선이 고려되어야 함.
 - 특정 재보험사에 대한 재보험 의존도가 일정 수준이상일 경우 출재사가 이를 감독당국에 통보하도록 해야 함.
 - 둘째,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작성 시, 출·수재사 모두 거 래상대방별 출·수재보험료를 보고토록 해야 함.
 - 셋째,RBC에서 신용리스크에 대한 요구자본산출시 집중리스크를 반영함으로써 원보험사의 출재가 특정 재보험사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야함.
- 나. 법인 재보험사 인가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1) 현황 및 문제점
- □ 법인 재보험사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인가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인가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고 시장참여자(특히, 투자자)들의 불신이 존재함.

⁶⁾ 자산집중리스크란 보험회사의 자산이 특정 거래상대방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발생하는 잠재적인 손실을 의미함.

- o 재보험시장의 유효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인 재보험사 설립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진입이 필요함.
- 동태적 학습효과나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 신규진입사업자가 수재를 늘려감에 따라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경우, 현재 비효율적인 사업자라도 시장에서의 공급확대를 통해 충분히 효율적인 사업자가 되어 장기적으로는 유효한 경쟁을 창출할 수 있음.
- o 법인 설립 인가를 위한 자본금은 3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정상적인 재보 험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를 위해서는 초기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함.
- o 게다가, 정상적인 재보험영업이 가능한 수준의 자본금을 유치하기 위해 서는 해당 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인 설립 인가여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함.

2) 개선방안

- □ 법에 명시된 인가요건만 충족하면 재보험사 설립을 인가하겠다는 정 책적 신호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보내야 함.
 - 인가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있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정책적 판단의 기준을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인가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3) 기대효과

□ [기대효과] 재보험시장의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인가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 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정책당 국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지지하는 신호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보낼 경우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임.

4. 기타 경쟁당국의 모니터링 이슈

□ 재보험거래는 원보험과 달리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복잡하며 재보험 사에 요구되는 보고 또는 공시 정보만으로는 재보험사의 행태를 파

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적용사례는 우리 경 쟁당국이 향후 재보험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
□ 본 보고서의 IV장 3절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적용사례'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EU와 미국 경쟁당국은 각각 공동재보험에서 재보험사간 담합, 그리고 보험중개사와 재보험사간 담합에 대해 경쟁법을 적용 또는 적용·검토한 바 있음.
가. 공동재보험에서 재보험사간 담합
□ EU집행위는 공동재보험 참여사간 단일 요율 및 조건, 최혜대우조항 적용, 후발참여사들에게 간사사의 요율 및 조건 공개 등을 경쟁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함
O EU집행위가 공동재보험에 대해 경쟁 측면의 문제를 제기하자 유럽보험중 개사협회는 자발적으로 문제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함.
□ EU 소재 재보험사들이 재보험서비스의 주요 공급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재보험과 관련된 거래행태는 지역에 상관없이 유사할 것으로 짐작됨.
□ 따라서 향후 경쟁당국은 공동재보험의 거래행태와 이에 대한 EU 등 주요국 경쟁당국의 입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나. 시장지배력을 가진 재보험중개사와 재보험사간 담합
□ 미국 코네티컷 주 검찰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재보험중개사 GC의 영향권 내에 있는 재보험사들이 GC의 중개물건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을 가지는 대신 서로 경쟁하지 않고 GC가 정한 재보험 거래조건과 가격을 따르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들이 50년 이상 출재사와 원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독점적 이윤을 누린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함.

우리나리	·에도	Mars	h, Aon	, GC	등 다국	적 보험	중개사기	- 진입하	해 있지
만 현행	보고	및 공	공시 체	계로는	이들의	l 거래행	태를 명	확히 파	악하기
어려움.									

□ 향후 재보험거래당사자의 보고 및 공시 체계가 개선될 경우, 경쟁당 국은 재보험중개사와 재보험사간 공동행위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목 차 <</p>

Ⅰ. 재보험시장 개요	301
1. 재보험산업 개요	301
가. 재보험의 의미	301
나. 재보험거래	301
다.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의 관계	303
라. 재보험산업의 특징	304
2. 재보험시장 현황	306
가. 관련시장 획정	306
나. 시장규모	312
다. 공급현황	314
라. 수요현황	315
Ⅱ. 시장 구조·형태·성과	317
1. 시장구조	317
가. 시장점유율	317
나. 시장진입 및 퇴출	323
2. 시장행태	325
가. 재출재	325
나. 요율경쟁	329
3. 시장성과	331
Ⅲ. 정부규제	336
1. 정부규제 현황	336
가. 직접규제 ······	
나. 간접규제	
2. 과거 규제개혁	
가. 국영재보험사 설립 ·····	

	나. 민영화 및 시장개방	344
	다. 재보험관리모범규준	345
IV.	해외사례	346
1	. 세계 재보험시장	346
	가. 규모	346
	나. 특징	347
2	. 해외 각국의 시장현황	349
	가. 브라질	350
	나. 중국	358
	다. 대만	362
	라. 미국	363
	마. 소결	368
3	.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적용사례	369
	가. 미국: 시장지배력을 가진 보험중개사와 재보험사간 담합 …	370
	나. EU: 공동재보험에서 재보험사간 담합	374
V.	경쟁상황 평가	377
1	. 시장지배적지위 추정 사업자 존재	377
	가. 관련 법규정	377
	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의 추정	378
2	. 재출재율 47%의 의미: 경쟁유인 약화와 비효율 증가	379
3	. 높은 진입장벽 존재: 초기 자본금 압박	381
4	. 요율경쟁과 수익성	383
5	. 고집중 재보험시장 존재의 의미	384
	가. 경쟁 및 시장효율성 저해	385
	나. 신용리스크 증가와 소비자피해	386
	다 워보험사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담한유인 제공	387

VI.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389
1. 기본원칙 389
가. 건전성제고와 부합하는 경쟁촉진방안 강구 389
나. 재보험에서 건전성 이슈가 중요한 이유 390
2. 유효경쟁 촉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 394
가. 원보험과 구분된 재보험 법제 마련 필요성 394
나. 재보험거래에 대한 보고 및 공시 정보의 개선 396
3. 유효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397
가. 집중도 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 397
나. 법인 재보험사 인가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400
4. 기타 경쟁당국의 모니터링 이슈 401
가. 공동재보험에서 재보험사간 담합 401
나. 시장지배력을 가진 재보험중개사와 재보험사간 담합 402
참고문헌 403

【표 차례】

<班	I - 1>	재보험사 직접규제 vs 간접규제	305
<班	I - 2>	국내 원수보험료 규모	312
<班	I - 3>	국내 원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출재보험료 규모	313
<班	I - 4>	국내소재 전업재보험사 개요(2011년)	314
<班	I - 5>	원수손보사의 보험종목별 출재보험료 비중	315
<班	I - 6>	원수손해보험 출재율	315
<班	I - 7>	원수생보사의 출재보험료 및 출재율	316
<표	<u>∏</u> − 1>	출처별 원보험사의 국내 총출재보험료	320
<班	∏− 2>	코리안리 시장점유율: 업무보고서 근거	321
<표	∏- 3>	코리안리 시장점유율: 협회자료 근거	321
<班	∏- 4>	해외소재 재보험사 시장점유율	322
<丑	∏- 5>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과 원보험사의 시장점유율	323
<班	∐− 6>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 및 사무소 설립 현황	324
<丑	<u></u>	과거 신규재보험사 설립 추진 사례	325
<丑	∏- 8>	코리안리의 국내수재의존도	325
<班	∏- 9>	코리안리 국내수재 구성	326
<班	∏-10>	코리안리의 재출재율	327
<班	∏-11>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과 코리인리간 상호의존도(일반손보) …	328
<표	∏-12>	코리안리의 보험종목별 수재수수료율과 손해율	330
<班	∏-13>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의 손해율과 수수료율	331
<표	∏-14>	코리안리 보험종목별 보험영업이익	332
<班	∐-15>	코리안리 사업실적	333
<班	∐-16>	세계 주요 재보험사의 사업실적	334
<班	∐-17>	세계 주요 재보험사와 코리안리 ROE 비교	334
<丑	∐−18>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의 ROE	335
<₩	Ⅲ- 1>	진입형태볔 재보험사에 대한 직접규제	339

<班	IV- 1>	세계 재보험시장 규모(2010년) 346
<班	IV- 2>	세계 재보험시장 실적 347
<班	IV- 3>	세계 재보험시장 점유율 348
<班	IV- 4>	소재국별 재보험그룹의 시장점유율 349
<₩	IV- 5>	브라질 재보험시장 진입가능 유형 352
<₩	IV- 6>	브라질 원보험사의 출재율 355
<班	IV- 7>	브라질 재보험시장구조 356
<₩	IV- 8>	IRB의 재출재율 357
<₩	IV- 9>	IRB의 시장성과
<班	IV-10>	중국 원보험사의 출재율 360
<₩	IV-11>	2011 중국 손해재보험 시장점유율
<₩	IV-12>	China Re의 사업실적
<₩	IV-13>	미국소재 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2012년) 367
<班	IV-14>	미국소재 재보험사의 성과 368
<₩	V- 1>	세계 주요재보험사의 재출재율(2011년) 380
<₩	V- 2>	신용평가회사(Moody's) 의 재보험사 평가방법 사례 382
<班	VI- 1>	재보험회사의 지급거절 사유391
<₩	VI- 2>	재보험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 391

【그림 차례】

<그림	I −1>	재보험시장	311
<그림	∏-1>	국내 재보험시장 구조(2011년)	327
<그림	IV-1>	브라질의 출재 제한	353
<그림	IV-2>	브라질 보험시장 성장 추이(2003~2012년)	354
<그림	IV-3>	미국 재보험시장 점유율(1997~2012년)	367
<그림	IV-4>	재보험거래의 당사자	372

Ⅰ. 재보험시장 개요

1. 재보험산업 개요

가. 재보험의 의미

- □ 재보험은 일정한 급부를 전제로 보험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사에게 인수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임.
 - 원보험이 개인이나 기업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라면 재보험은 보험사의 보상책임을 분담해주는 제도임.
 - 보험계약상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보험계약을 통하여 다른 보험시에 이전하는 것을 출재(出再)라고 하며, 반대로 다른 회사의 보상책임을 인수하는 재보험거래를 수재(受再)라고 함.
- □ 재보험은 위험 분산 및 전가를 통해 원보험사의 인수능력을 증대시 키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함.
 - 원보험사가 담보력의 제한으로 인해 대행위험 또는 특정위험에 대한 단독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재보험사에 전가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음.

나. 재보험거래

- □ 원계약자의 위험담보를 위해 원보험사가 부과하는 보험료와 같은 위험을 인수하기 위해 재보험사가 요구하는 재보험료간에는 차액 (arbitrage)이 존재하며, 이로써 재보험거래가 발생함.
 - o 재보험사는 대수(大數)의 법칙 및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가지고 있고 보 유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위험자본비용이 원보험사에 비해 낮고, 경험, 통계,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동일물건에 대해 원보험사보다 더 낮은 요율 및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함.
 - o 상기 차액으로 인해 출재사인 원보험사는 수수료라고 하는 차액수입을 얻을 수 있음.

- □ 재보험의 기본구조는 원보험사가 재보험사에 출재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재보험사는 사전에 약속된 계약에 따라 출재보 험료에 상응하는 출재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임.7)
 - o 재보험시는 원보험시의 사업비를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금액을 출재 시에 되돌려주는데, 이를 출재수수료라 하며 출재보험료의 일정비율로 표시됨.
 - 재보험료에서 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익이 발생하면 재보험사는 이익의 일부를 원보험사에 돌려주는데 이를 이익수수료라 함.
 - 이익수수료를 계산할 때 재보험사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들어 간 사업비를 이익에서 먼저 차감한 후 이익수수료를 계산함.
 - 이는 재보험시의 시업비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수재보험료의 일정비율 로 표시됨.
 - 따라서, 일반적으로 재보험거래에서 재보험조건으로 출재·이익수수료와
 재보험사의 사업비율을 거론할 수 있음.
 - 원보험사들은 보다 높은 출재·이익수수료와 낮은 사업비율을 제시하는 재보 험사와 계약을 하고자 함.
- □ 재보험은 2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임의재보험과 특약재보 험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재보험으로 구분하 는 것임.
 - ㅇ 재보험거래 유형에 따라 임의재보험과 특약재보험으로 구분
 - 임의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은 원보험사가 재보험을 원하는 위험 만 재보험사에 제시하여 재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임.
 - 특약재보험(treaty reinsurance)은 원보험사와 재보험사 사이에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자가 인수한 어떠한 특정종목의 보험을 자동적으로 후자에게 인수시키는 재보험방식임.
 - ㅇ 재보험 책임분담 방법에 따라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재보험으로 구분
 - 비례재보험(proportional reinsurance)에서는 보험금액에 대한 출재사의 보유액과 재보험사의 인수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배분되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로 각자의 부담액이 산출됨.
 - 비비례재보험(non-proportional reinsurance)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⁷⁾ 김석영(2012)

을 기준으로 출재사와 재보험사의 책임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일정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재보험사가 책임지게 되고 재보험료도 초 과손해액의 발생가능성과 손해액의 규모를 감안하여 별도로 정해짐.

다.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의 관계

- □ 상법은 제661조에서 재보험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8) 제726 조에서 책임보험규정의 재보험에의 준용을 명시하고 있음.
 - 책임보험에서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상법 제724조),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 한 규정이 재보험에도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이 발생 함.9)
 - 장덕조(1999)는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고 책임 보험에서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재보험계약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원 보험수익자와 재보험사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함.
 - 특히, 재보험특약에 직접청구조항(cut-through clause)이 있을 경우 원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원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재보 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음.
- □ 재보험사는 원보험사와 공동운명의 책임을 짐.
 - O 재보험사의 무익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재보험계약에는 일반적으로 공동운명조항(Follow-the-fortune clause)이 있는데, 이는 재보험사가 해당 재보험계약상 모든 사항에 있어 원보험사가 처리하는 조치에 따라야한다는 조항임.
 - o 공동운명조항은 원보험사에 대한 재보험회사의 보상의무 범위를 정할 때 결정적인 해석기준이 되고 있으며, 계약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하나의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음.

⁸⁾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즉, 원보험사는 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지급을 이유로 재보험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재보험사의 재보험금의 지급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음.

⁹⁾ 장덕조(1999)

- □ 원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재보험계약에도 최대신의(utmost good faith)원칙이 적용됨.
 - o 원보험시는 출재 시 보험인수여부 결정이나 보험료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성실히 고지할 의무가 있음.
 - o 다만, 최근 재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해 재보험계약 당사자간 최대신의성실원칙을 이행할 유인이 작아짐에 따라 보상책임 범위를 둘러 싼 법적 분쟁이 잦아지고 있음.

라. 재보험산업의 특징

- □ 첫째, 국경간 거래(보험업법시행령 제7조)
 - 특정 국가의 원보험사가 인수한 대형위험이 세계 주요재보험시장을 경유 하여 다수의 재보험사로 분산됨.
 - 따라서 국내에 법인이나 지점 설립 없이도 해외재보험사는 국내보험사와 재보험영업이 가능함.

□ 둘째. 원보험사를 통한 간접규제

- 우리 감독당국은 해외소재 재보험사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원보험사의 재보험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재보험사를 간접 규제하는 방식을 취함.
- 간접규제는 출재사의 재보험자산¹⁰⁾인정요건(즉, 책임준비금 적립면제요 건), 자기자본규제¹¹⁾ 등을 통해서 이루어짐.

¹⁰⁾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래에 있을 지급책임(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받은 순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해 놓은 금액을 의미함.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부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별도의 자산으로 표기하여야 하는데, 이를 재보험자산이라 함.

¹¹⁾ 자기자본규제란 금융회사에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해 산출한 금융회사의 총위험액 대비 일정비율을 자기자본으로 보유토록 의무화함.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서 적립하는 예비자금이 '준비금(책임준비금 등)'이며, 자기자본은 급격한 경제위기 등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한 최종적인 예비자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2012)을 참조 바람.

- 비인가(역외) 재보험사의 신용등급별 담보설정, 투자적격 이상 신용등급, 출재한도, 분쟁 시 자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계약조항 삽입 등 국가마다 다 다양한 재보험자산 인정요건이 있음.
- o 이러한 간접규제는 타국의 감독을 받는 비인가 재보험사의 지급불능위험 으로부터 자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음.
- o 따라서 해외소재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간접규제가 일종의 진입규 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구분	직접규제	간접규제
규제대상	재보험사	원보험사
규제목적	재보험시장의 신뢰 유지	원보험사의 지급불능위험 방지
규제유형	- 인가조건 - 지배구조 -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 자산운용규제 - 부채관리규제 - 자본적정성과 건전성 - 영업행위 - 경영공시	 재보험프로그램 검사 위험노출액한도 제한 재보험자산인정요건(책임준비금 적립면제요건) 담보설정요구 위험분산(다각화) 요건 비인가재보험사와의 거래에 대한 제한

<표 I-1> 재보험사 직접규제 vs 간접규제

- □ 셋째, 대수법칙의 함의, 규모의 경제
 - o 대수의 법칙을 근간으로 재보험시는 위험단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확한 미래손실을 예측하고 적정 위험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음.
 - 즉 위험단위가 증가할수록 집단 전체 위험의 변동성이 줄어들어 평균비용이 감소함.
 - 보험상품의 비용은 시업비와 위험의 변동성 관련 비용으로 구분가능
 - o 생명보험물건과 달리 기업성물건의 경우 동질 또는 유사 위험물건이 대 량으로 존재하지 않아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재보험을 통 해 위험을 한데 모음으로써 집단 전체 위험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음.

2. 재보험시장 현황

가. 관련시장 획정

- □ 재보험서비스의 관련 상품시장은 손해재보험시장과 생명재보험시장 으로 구분하되, 관련 지리적 시장은 국내시장으로 봄이 타당함.
- □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 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음.12)

1) 관련 상품시장

- □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인하)될 경우 동 상품 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을 의미함.
 - 특정 상품이나 용역이 동일한 거래분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상품이나 용역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사업분류
- □ 공급대체성과 수요대체성을 고려할 때, 손해재보험시장과 생명재보 험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 ㅇ 공급대체성 평가
 - 재보험종목별로 별도의 기술, 경험, 통계, 조직 등이 필요함.
 - 즉, 손해재보험 또는 생명재보험만을 취급한 재보험시가 영업종목을 변경 또는 확대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함.

¹²⁾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52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개정 2012. 8. 13.

- 따라서 손해재보험시장에 또는 생명재보험시장에 유의미한 요율인상이 있더라도, 재보험사들은 종목 전환 또는 확대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현재 본사의 영업정책에 의해, 하노버리 국내 지점의 경우 생명재보험만을 취급하는 반면, 동경해상 국내 지점의 경우 손해재보험만 취급함.
- ㅇ 수요대체성 평가
- 고객인 원수손보시와 원수생보시가 손해재보험과 생명재보험을 대체재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즉, 수요자가 요율변동에 따라 손해재보험을 생명재보험으로 전환하는 것
 은 불가능함.
- 다만, 장기손보(상해, 질병 담보)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생명재보험시와 손해재보험시에 모두 출재할 수 있음.
- □ 그러나, 재보험시장을 출재의 기능 및 효용에 따라 세부종목별로 구 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¹³⁾
 - ㅇ 심사기준14)에 따르면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서 공급대체성과 수요대체성
- 13) 한기정·이봉의(2013)는 재보험시장을 장기·자동차생명비례 재보험시장과 나머 지 재보험시장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장기·자동차생명비례재보험은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희박한 가계성 종목으로서 수익성이 미미하여 다른 외국계 재보험사들은 거의 수재하지 않는 특성을 갖 고 있음. 코리안리의 경우도 국내 재보험시장 전반의 보호 및 외형유지 차원 에서 수재하고 있고. 원보험사로서는 무엇보다 RBC 비율개선을 목적으로 재 보험출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여타 재보험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 특히 생명 비례 재보험의 경우 위험변동성이 적어 원보험사로서는 재보 험의 필요가 거의 없고 코리안리로서도 수익성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원보험 사의 지원 및 외형 유지를 위하여 수재를 하고 있을 뿐이어서 보험의 주목적 인 위험분산과는 그 성질과 기능이 매우 상이함. 무엇보다 수요자인 원보험사 의 입장에서 볼 때 당초 보험의 성격이 전혀 상이하여 재보험 요율의 변동에 따라 통상의 재보험을 장기·자동차생명비례재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없고 통상의 재보험과는 다른 기능과 특성을 가짐." 한기정·이봉의(2013)는 이처럼 재보험시장을 장기·자동 차생명비례 재보험시장과 통상의 재보험시장으로 상정할 경우 통상의 재보험 시장에서 코리안리의 시장점유율은 48.4%에 불과하므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반손해재보험만을 보 더라도 코리안리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기준 약 60%임.
- 1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52호, 개정 2012. 8. 13)을 의미하며, 이하 심사기준이라 함.

- 외에 상품이나 용역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등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음.
- o 출재사 입장에서 재보험은 위험분산, 인수능력확대 및 재무구조개선의 기능을 수행함.
- 이 경우, 공급대체성과 수요대체성을 고려하여 손해재보험과 생명재보험
 으로 구분하되, 재보험의 기능 및 효용을 고려하여 일반손보,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등 세부종목별로 검토할 수 있음.
- □ 공급대체성과 수요대체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고 재보험의 기능 및 효용에 따른 시장 구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요소가 존재하므로, 본고에서는 다음 세 가지 상황을 모두 기술하도록 함:
 - ㅇ 재보험을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보거나. 또는
 - 공급대체성과 수요대체성에 따라 손해재보험시장과 생명재보험시장으로 구분하거나, 또는
 - o 재보험의 기능 및 효용에 따라 일반손보, 장기손보, 자동차보험, 생명보 험으로 구분함.

2) 관련 지리적 시장

- □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가격인하)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의미함.
 - o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부패성, 변질성, 파손성 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 (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 운송비용
 -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 시간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 □ 재보험서비스 수요자의 지리적 전환비용과 공급자의 지리적 전환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시장을 국내시장으로 봄이 타당함.
- □ 무엇보다도, 재보험서비스의 본원적 요소가 위험분산 등 위험통제적 인 가치임을 고려할 때 재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요자는 요율수준과 함께 위험관리 측면의 제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 수 요자의 지리적 전환비용이 적지 않음.
 - 국내 원보험사가 출재하는 재보험에는 국내외 재보험사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외로의 출재나 해외소재 재보험사의 국내수재에 법·제도적 차별(영업방법 제외) 존재하지 않음.
 - O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국내 원보험사가 국내소재 재보험사에서 해외 소재 재보험사로 구매를 전환할 경우 적지 않은 비용 및 위험이 초래된 다는 것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첫째, 해외소재 재보험사는 우리나라 보험업법, 상법 등 국 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내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해외소재 재보험사와 거래한 원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비용 및 위험에 노 출됨.
 - 거래상대방인 해외소재 재보험사에 대한 정보 및 감시가 상대적으로 부족 하므로 재보험사의 피산 및 지급불능 위험에 대한 우려가 국내소재 재보험 사와 거래할 때 보다 현저히 큼.
 - 거래상대방인 재보험사의 파산 및 지급불능 시 국내 소재 이해관계자가 청 산과정에서 더 불리한 조치를 받을 기능성이 있음.
 - 국내 원보험사가 지급불능에 처할 경우 청산인이 해당 원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해외소재 재보험사로부터 재보험금을 회수하는 데 법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위험관리 측면의 비용 때문에 미국이나 호주 등은 해외소재 재보험 사로 하여금 지급준비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자국내에 설정토록 유도하거나 분쟁발생시 자국법을 적용토록 유인하고 있음.
 - 둘째, 해외소재 재보험사와의 업무시간, 언어 등의 차이는 국내 원보험 사 입장에서는 지리적 장벽으로 작용함.
 - 국내소재 재보험사와 거래할 경우 동시간대 및 동일 언어사용에서 오는 거 래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음.

- 셋째, 수요자인 원보험사 입장에서 보험중개사는 원보험(기업성보험) 시장에서 경쟁자이며 여러 법규(원보험·재보험 동시중개 등)를 두고 갈등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을 연결하는 보험중개사의활동이 제한적임
- o 요컨대, 재보험서비스 수요자의 지리적 전환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 안할 때, 재보험서비스의 지리적 시장을 국내시장으로 볼 수 있음.
- □ 또한, 해외소재 재보험사의 대면영업이 금지되고 보험중개사의 법적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급자의 지리적 전환비용 이 적다고 보기 어려움.¹⁵⁾
 - 구체적으로 첫째, 해외소재 재보험사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대한민국 안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고 보험중 개사 등을 통해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제1-6조(보험계약체결방법)에 따르면, 해외소재 재보험사는 우편, 전화, 모시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거나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중개시에게 계약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거나 위임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나아가, 재보험관리모범규준 제5-1-8조는 '국내보험회사의 그 임원 또는 직원은 외국보험회사가 우편, 전화, 모시전송, 컴퓨터 통신의 방법 외에 대한민국 안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모집 및 재보험거래 증진활동, 재보험계약 중개 및 알선 등 영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시 그 업무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16)

¹⁵⁾ 한기장·이봉의(2013)는 지리적 관련시장을 국내시장이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국내 원보험사가출재하는 재보험에는 지리적 장벽이 없어 국내외 재보험사들이 쉽게 경쟁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외로의 출재나 해외 재보험사의 국내 수재에 아무런 법적·제도적·기술적 장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보험시장은 지리적인 관점에서 세계시장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함. 더구나 보험중개사는 해외재보험사들이 국내에서 수재를 받는, 즉 국내에서 코리안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재보험사를 위하여 코리안리와 직접 수재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보험시장은 국경 없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세계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함." 한기정·이봉의(2013)는 이처럼 재보험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획정할 경우 코리안리의 시장점유율은 2.3%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¹⁶⁾ 금융감독원은 2013년 11월 개정된 재보험관리모범규준에 국내 원보험사가 해 외소재 재보험사의 불법 대면영업 상대방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

- o 둘째, 우리나라에서 보험중개사의 법적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해 외소재 재보험사가 보험중개사를 통해 코리안리와 동등한 경쟁조건에서 수재경쟁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중개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하 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보험료의 수령 또는 환급,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의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 또는 통지사항의 수령 또는 환급,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책임 유무의 판단이나 보험금의 결정에 관한 권한이 없음.
- 상기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과 보험업감독규정 제1-6조는 해외소 재 재보험시가 국내소재 재보험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이 시실 상 불가능함을 의미함.
- o 셋째, 각종 재보험 계약문서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은 업무시간대와 언어 등이 다른 해외재보험사에 지리적 비용으로 작용함.
- 재보험관리모범규준에 따르면, 출재사는 재보험 계약 체결 전에 재보험사가 서명하여 완전히 확정된 재보험 계약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확보하여야 함.
- 이러한 권고사항은 재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이나 재보험사의 지급불능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에서는 보다 엄격히 요구되고 있는 추세임.

3) 관련 거래단계 시장

□ 재출재는 관련시장에서 제외함.



나. 시장규모

- □ 국내 재보험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6조 2,773억 원(총 출재보험료)으로 원보험시장규모(145조 8,315억 원: 원수보험료)의 4,3%를 차지함.17)
 - o 손해재보험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5조 535억 원(출재보험료)으로 전체 재보험시장규모(6조 2.773억 원)의 81%를 차지함.
 - 재보험시장규모는 2005~2011년 기간 동안 연평균 1.9%씩 증가한 반면, 원보험시장규모는 8.9%씩 증가함.
 - o 한편, 2011년 기준 원보험사를 포함한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국내지 점의 총(재)출재보험료는 8조 2.426억 원임.

<표 Ⅰ-2> 국내 원수보험료 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기율
손해보험	257,241	295,862	339,819	374,954	438,323	522,445	579,955	14.5
생명보험	614,722	664,549	750,956	735,614	769,568	830,074	878,360	6.1
계	871,963	960,411	1,090,775	1,110,568	1,207,891	1,352,520	1,458,315	8.9

주: 2005~2011년 기간 동안 연평균증가율 = {(2011년 원수보험료/2005년 원수보험료)^(1/6)-1}× 100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 □ 구체적으로, 손해재보험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5조 535억 원으로 원수손보시장규모(57조 9.955억 원)의 8.7%를 차지함.
 - 2005~2011년 기간 동안 원수손보시장규모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였으나. 동기간 손해재보험시장규모는 7.4%씩 성장함.
 - o 원수시장에 비해 재보험시장의 성장률이 낮은 이유는 재보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이 원수시장의 성장을 견인하 고 있기 때문임.
- □ 생명재보험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1조 2,238억 원으로 원수생보시 장규모(87조 8,360억 원)의 1.4%를 차지함.

¹⁷⁾ 국내 재보험시장 규모는 재보험시장의 정의 및 획정에 따라 국내 원보험사의 총 출재보험료로 함.

- 2005~2011년 기간 동안 원수생보시장규모는 연평균 약 7%씩 성장하였으나, 2009년 4월부터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이하 RBC제도)¹⁸⁾ 도입으로 재보험의 RBC비율 제고 효과가 제한됨에 따라 생보사의 출재보험료가 감소함.¹⁹⁾
- RBC비율에서 보험리스크 비중이 기존 지급여력제도에 비하여 축소(46%→ 12%)됨에 따라 출재를 통해 지급여력을 높이는 효과가 감소하게 됨.
- 2009년 3조 36억 원(출재보험료) → 2010년 1조 9,989억 원 → 2011년 1조 2,238억 원

<표 Ⅰ-3> 국내 원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출재보험료 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_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	국내	21,353	22,805	25,154	26,594	31,666	33,484	37,576	9.9
	율	해외	11,660	11,705	12,075	13,277	11,535	12,195	12,958	1.8
원보		계	33,014	34,510	37,229	39,871	43,201	45,678	50,535	7.4
전모 험사		국내	5,708	6,767	7,845	7,634	8,439	9,023	9,285	8.4
HAL	생	해외	17,381	18,311	18,676	21,793	21,597	10,966	2,953	-25.6
		계	23,089	25,078	26,522	29,427	30,036	19,989	12,238	-10
		계	56,103	59,588	63,751	69,298	73,237	65,667	62,773	1.9
재보	코i	리안리	8,878	9,678	10,529	12,226	13,592	14,464	17,169	11.6
험사	7	지점	1,619	2,703	2,038	2,634	2,278	2,544	2,484	7.4
	계		66,599	71,968	76,317	84,158	89,108	82,676	82,426	3.6

- 주: 1) 업무보고서상 '공제 등 부수사업'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농협생명과 농협손보의 출재보 험료를 포함함.
 - 2) 코리안리는 국내 또는 해외시장에서 수재한 물건을 국내 또는 해외로 재출재하며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도 국내에서 수재한 물건의 일부를 해외로 재출재하는데, 상기 출재보험료는이를 포함한 금액임.
- 3) 2005~2011년 기간 동안 연평균증가율={(2011년 출재보험료/2005년 출재보험료)^(1/6)-1}×100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¹⁸⁾ RBC(Risk-based Capital)제도란 보험회사에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 도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보험금라시장·신용·운용리스크 등 보험회사가 가진 각종 위험을 정밀히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임. 동 제도는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 및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로,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에 예상 치 못한 손실 발생시 이를 보전하여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버퍼(risk buffer)로서 자본금, 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요구자본은 해당 보험회사에 내재된 보험·금리·시장·신용·운용위험액의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된 필요 자기자본을 의미함.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RBC비율을 산출함.

^{19) 2009}년 4월부터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RBC제도를 선택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RBC제도를 전면 시행함.

다. 공급현황

- □ 국내시장에서는 코리안리,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 해외소재 재보험 사. 원보험사가 재보험공급자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 o 국내소재 전업재보험사는 재보험과 재보험관련서비스만을 취급하는 회사로 서. 현재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 등 9개사가 영업 중임.
 - 코리인리, 제너럴리, 뮌헨리, 스위스리, RGA, 스코르리, 하노바리, 동경해상, AIG UG
 - ㅇ 해외소재 재보험사는 제한적으로 국내 보험사와 재보험거래를 할 수 있음.
 - 보험종목별로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원보험사도 재보험을 취급할 수 있음(보 험업법 제4조 제2항).
 -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회사는 영위하는 보험업의 범위 내에서 생명보 험뿐만 아니라 제3보험의 재보험을 취급할 수 있음.
- □ 국내소재 전업재보험사의 자본총계는 2011년 기준 1조 3,498억 원으로 국내 원보험사의 총 출재보험료(6조 2,773억 원)의 약 22%임.
 - 국내소재 전업재보험사의 국내수재보험료는 2011년 기준 5조 1,799억 원으로 자본총계의 약 26%임.

<표 Ⅰ-4> 국내소재 전업재보험사 개요(2011년)

(단위: 억 원)

						, —	/
국내소재	인가	국	내수재보험.	료	자본	자산	본사
전업재보험사	연도	손보	생보	계	총계	총계	소재국
코리안리	1963	35,056	6,373	41,429	12,563	69,635	한국
제너럴리(지점)	2001	93	416	509	557	821	독일
뮌헨리(지점)	2001	2,985	799	3,784	1,108	3,500	독일
스위스리(지점)	2001	1,219	533	1,752	675	2,384	스위스
동경해상(지점)	2003	176	-	176	135	281	일본
스코리(지점)	2004	1,651	-	1,651	338	2,247	프랑스
AIG UG(지점)	2008	16	-	16	40	111	미국
RGA(지점)	2004	-	2,172	2,172	553	1,759	미국
하노버리(지점)	2008	-	310	310	218	531	독일
계	-	41,196	10,603	51,799	13,498	81,269	-

- 주: 1) 국내수재보험료는 업무보고서상 '공제 등 부수사업'을 제외한 금액임.
 - 2) 각 사의 국내수재보험료는 원보험사로부터 직접 수재한 보험료뿐만 아니라 재보험사로부터 재출재받은 보험료도 포함함.

자료: 국내수재보험료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자본 및 자산 총계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포털

라. 수요현황

1) 손보사

- □ 원수손보사의 최근 7개년 총 출재보험료 중 일반손보(화재·해상·특종 보험)가 차지하는 비중은 58.4%로 가장 높음.
 - O 자동차보험의 출재보험료 비중은 16.8%로 신규 자동차 전업재보험사나 지급여력이 불충분한 회사의 재보험거래가 비교적 높음.

<표 Ⅰ-5> 원수손보사의 보험종목별 출재보험료 비중

(단위: 억 원, %)

구분	화재	해상	특종	자동차	장기	보증	해외 원보험	계
2005-11년 평균	3.8	13.3	41.3	16.8	19.4	2.5	3.0	100

주: 업무보고서상 '공제 등 부수사업'을 제외함.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 원수손보사는 2011년 원수보험료의 8.7%를 출재하였으며, 그중에서 일반손보 출재율은 약 55%에 이름.

<표 Ⅰ-6> 원수손해보험 출재율

(단위: 억 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원수보험료	257,241	295,862	339,819	374,954	438,323	522,445	579,955
출재보험료	33,014	34,510	37,229	39,871	43,201	45,678	50,535
출재율	12.8	11.7	11.0	10.6	9.9	8.7	8.7

주: 출재율 = 출재보험료/원수보험료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2) 생보사

- □ 생보사는 2011년 전체 위험보험료의 12.3%, 수입보험료의 1.4%인 1조 2,238억 원을 출재함.
 - ㅇ 생보시는 2009년 이전까지는 33% 이상의 출재율(위험보험료 대비)을 보임.
 - 우리나라 생보사의 수입보험료 대비 출재보험료의 비율은 최근 6개년 4% 미만임.

<표 ፲-7> 원수생보사의 출재보험료 및 출재율

(단위: 억 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위험보험료	69,510	75,362	80,367	84,351	88,284	93,322	99,812
수입보험료	614,603	664,549	750,956	735,613	769,568	830,074	885,879
출재보험료	23,089	25,078	26,522	29,427	30,036	19,989	12,238
위험보험료 대비 출재보험료	33.2	33.3	33.0	34.9	34.0	21.4	12.3
수입보험료 대비 출재보험료	3.8	3.8	3.5	4.0	3.9	2.4	1.4

주: 위험보험료는 순보험료 중 보험가입자가 사망·상해·입원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부분

자료: 수입보험료와 위험보험료는 금융통계포털, 출재보험료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Ⅱ. 시장 구조·형태·성과

1. 시장구조

가. 시장점유율

- □ 독점규제법²⁰⁾ 시행령 제4조 제②항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은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중에서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함.
- □ 따라서 시장점유율은 원보험사의 총 출재보험료 중에서 특정 사업자 가 국내에서 수재한 보험료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음.
 - 특정 사업자가 해외에서 수재한 보험료는 제외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 에서 올린 매출액은 포함함.
 - 즉, 재보험사 A의 시장점유율 = A사가 전체 원보험사로부터 수재한 보험 료/전체 원보험사의 총 출재보험료

1) 산출 방법 및 한계

- □ 재보험시장 점유율 산출을 위한 통계
 - o 출처별 재보험거래 통계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나 정보의 양과 질, 그리고 분석의 일관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를 사용함.
 - 동 자료는 최근 7개년(2005~2011년) 세부보험종목별, 보험회사별, 국내외 출재보험료, 발생손해액, 경과출재보험료, 수수료 등을 포함함.
 - 다만, 원보험사의 출재보험료가 재출재를 포함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음. 원보험사의 수재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보험사의 출재보험 료에서 재출재보험료의 규모도 미미할 것으로 유추됨.
 -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게시 자료는 보험종목별 국내외 재보험거래 현황 통계를 제시하지 않음.
 - ㅇ 또한, 시장점유율 산출 시 코리안리의 국내수재보험료에 대해서는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의미하며, 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함.

2005~2008년 기간 동안 공제로부터 수재한 보험료가 업무보고서에서 '공제 등 부수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타 보험종목에 혼재되어 있다는 주 장이 있어 코리안리가 별도로 제출한 최종자료(2013.11.15)를 이용함.²¹⁾

- 코리인리 제출자료는 공제로부터 수재한 보험료를 제외함.

□ 재보험시장 점유율 산출 기준

- ㅇ 관련 상품시장
- 관련상품 시장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공급대체성, 수요대체성, 그리고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바, ① 재보험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하는 경우, ② 재보험시장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구분하는 경우, ③ 일반손보자동차보험·장기보험·생명보험 재보험시장으로 구분하는 경우 등 세 가지를 모두 기술함.
- o 관련 지리적 시장
- 상술한 바와 같이 재보험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전환비용이 적지 않은 바, 재보험서비스의 지리적 시장을 국내시장으로 상정함.
- ㅇ 관련 거래단계 시장
- 재출재는 관련시장에서 제외함.
- ㅇ 재보험수요자
- 국내 원수손보사(전업재보험사 제외), 원수생보사
- 공제는 제외함. 즉,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상 '공제 등 부수사업'에 해 당하는 통계를 점유율 산출시 제외함.
- ㅇ 재보험공급자
- 코리인리,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 8개사, 해외소재 재보험사, 원보험사
- O 재보험사 A의 시장점유율
- 재보험사 A의 시장점유율 = A사가 전체 원보험사로부터 수재한 보험료/전 체 원보험사의 총 출재보험료

²¹⁾ 코리안리는 국내 원보험사로부터 수재한 보험료 내역을 2013년 9월 13일 최초 제출한 이후 총 3차례에 수정·제출함. 자료 제출 당시 코리안리의 설명에 따르면, 1차 자료는 공제와 농협손생보로부터 수재한 보험료를 포함함. 2차 자료(2013.09.16)에서는 2011년 농협생보와 농협손보로부터 수재한 보험료를 차감함. 3차 자료(2013.09.24)에서는 공제로부터 수재한 보험료를 차감하고 2011년 특종보험과 생명보험의 수재보험료를 조정함. 4차 자료(2013.11.15)에서는 2011년 농협손생보 실적의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함.

- □ 재보험시장 점유율 산출의 한계(1):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이 원보 험사로부터 직접 수재한 보험료 파악 불가
 - o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의 점유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원보험사로부터 직접 수재한 보험료 규모가 필요함.
 - 그러나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의 수재보험료는 원보험사로부터 직접 수 재한 보험료, 코리안리로부터 재출재받은 보험료, 보험중개사를 통해 코 리안리로부터 재출재받은 보험료가 혼재함.
 - 코리안리는 국내원보험사로부터 수재한 보험료의 약 44%(일반손보의 경우 80%, 2011년 기준)를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 원보험사, 해외소재 재보험 사에 재출재함.
 - 특히 코리안리가 보험중개시를 통해 재출재하는 경우 해당 물건이 어느 재 보험사로 갔는지 확인할 수 없음.
 - o 따라서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과 원보험사의 점유율은 코리안리와 해외 소재 재보험사의 점유율을 차감한 값으로 함.
- □ 재보험시장 점유율 산출의 한계(2): 기초통계의 오류
 - ㅇ 보험회사별로 보험종목별 수재보험료 표기 기준에 차이가 존재함.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는 세부종목을 화재, 해상, 특종, 자동차, 장기, 보 증, 해외원보험, 생명보험, 공제 등 부수시업으로 구분함.
 - 그러나 일부회사는 '공제 등 부수사업'에 해당하는 수재보험료를 해당 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타 보험종목에 포함시킴.
 - 또한 코리안리가 A사에 화재물건을 재출재하였으나, 동기간 A사의 화재보험 수재보험료는 0으로 표기되는 등 오류로 인해 화재보험의 국내 총수재 보험료가 과소산출됨.
 - 상술한 기초통계의 오류는 세부종목별 시장점유율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포괄종목별 시장점유율이나 전체 재보험 시장점유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재보험시장 점유율 산출의 한계(3): 자료출처별 원보험사의 총 출재 보험료 차이 존재
 - 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 출처에 따라 국내 원보험사의 총 출재보험 료 규모에 차이가 존재함.
 - ㅇ 구체적으로, 2006~2011년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로부터 산출

- 한 값이 손생보협회 게시 자료로부터 산출한 값보다 239억 원~1,803억 원 작은 것으로 관찰됨.
- 그러나 상술한 자료별 총 출재보험료의 차이로 인한 코리안리의 시장점 유율 차이는 3‰ 내외이며, 이는 시장점유율에 근거하여 코리안리의 시 장지배적사업자 지위를 추정함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됨.

<표 Ⅱ-1> 출처별 원보험사의 국내 총출재보험료

(단위: 억 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A)	56,103	59,588	63,751	69,298	73,237	65,667	62,773
손・생보협회 게시 자료(B)	54,197	59,995	63,392	69,815	73,476	66,287	64,576
A-B	1,906	- 407	359	- 517	- 239	- 620	-1,803

2) 시장점유율

- □ 코리안리의 손해·생명재보험시장 점유율은 2011년 61%로 RBC제도 도입이후 생명재보험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면서 전체 재보험시장 점유율도 증가함.
 - ㅇ 동기간 코리안리의 손해재보험시장 점유율은 65%임.
 - 원보험사의 재보험의존도가 높은 일반손보 점유율은 59%에 이름.
 -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점유율은 각각 75%, 87%임,
 - 코리안리의 생명재보험시장 점유율은 2011년 기준 43.2%로 전년(24.1%)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 2009년부터 RBC제도의 부분 시행으로 인해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해외출재 가 급감한 반면 국내출재는 소폭 증가함.

<표 Ⅱ-2> 코리안리 시장점유율: 업무보고서 근거

(단위: %)

구분		손해져	내보험		생명재보험	손해·생
干七	일반손보	자동차	장기	계	생성재모임	명재보험
2005	55.8	71.9	81.1	63.6	16.2	44.1
2006	61.9	56.0	71.3	62.3	15.6	42.6
2007	61.9	59.3	72.0	62.6	15.9	43.2
2008	58.3	61.6	74.9	61.2	13.8	41.0
2009	58.1	67.9	79.1	62.1	14.7	42.7
2010	58.4	68.9	83.1	63.4	24.1	51.4
2011	59.2	75.0	87.0	64.9	43.2	60.7

- 주: 1) 코리안리 시장점유율= 코리안리가 국내 전체 원보험사로부터 직접 수재한 보험료/ 국내 전 체 원보험사의 총 출재보험료
 - 2) 일반손해보험은 화재, 해상, 특종을 포함하며, 손해보험은 일반손보, 자동차, 장기, 보증, 해외원보험을 포함함.
 - 3) 농협생명과 농협손보가 2012년 1월부터 3월 기간 동안 출재한 보험료를 포함시키고, 전 기간 동안 '공제 등 부수사업'은 점유율 산출 시 분모, 분자 모두에서 제외함.
 - 4) 원수생명보험회사(24개사): ING생명(주), PCA생명(주); 교보생명(주); 녹십자생명(주), 농 협생명, 대한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주), 라이나생명(주), 메트라이프, 미래에셋생명 (주), 삼성생명(주), 신한생명(주), 아메리카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 알리안츠생명(주), 에이스생명, 우리아비비생명, 카디프생명, 케이디비생명, KB생명(주), 푸르덴셜, 하나에이 치에스비씨생명(주), 흥국생명(주)
 - 5) 원수손해보험회사(24개사): 그린손보(주), 농협손해보험, 다스법률비용, 더케이손보, 동부화재, Royal, 롯데손보, 메리츠화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 삼성화재, 서울보증(주), 악사손보, 에르고다음, ACE, 엘아이지손보, 제일화재,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 차티스손해보험, 퍼스트어메리칸, Federal, 한화손보,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 현대해상, 흥국화재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코리안리 제출자료(2013.11.15)

<표 Ⅱ-3> 코리안리 시장점유율: 협회자료 근거

(단위: %)

구분	손해재보험	생명재보험	손해 · 생명재보험
2005	68.1	16.0	45.6
2006	61.8	15.5	42.3
2007	63.4	15.8	43.4
2008	60.6	13.7	40.7
2009	62.0	14.6	42.5
2010	62.7	23.9	50.9
2011	63.1	41.8	59.0

- 주: 1) 시장점유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국내 전체 원보험사의 총 출재보험료를 손생보협회 게시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함.
 - 2) 2011년 코리안리의 시장점유율 산출시, 4/4분기(2012.01~03)에 한해 농협손보와 농협생명의 출재보험료를 포함함.

- □ 해외소재 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25%로 RBC제도 도입이전에는 50% 대를 유지함.
 - o 해외소재 재보험사의 손해재보험시장 점유율은 26%이고 원보험사의 재보험의존도가 높은 일반손보 점유율은 31%임.
 - o 해외소재 재보험사의 생명재보험시장 점유율은 24%로 2008년(74.1%)의 1/3수준에 불과함.
 - 2009년부터 RBC제도의 부분 시행으로 인해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해외출재 가 급감한 반면 국내출재는 소폭 증가함.

<표 Ⅱ-4> 해외소재 재보험사 시장점유율

(단위: %)

7 범		손해져	내보험		생명재보험	손해·생명
구분	일반손보	자동차	장기	계	생당새모임	재보험
2005	41.5	24.2	-	35.4	75.3	51.8
2006	32.8	42.8	27.9	33.9	73.0	50.4
2007	31.3	38.5	27.5	32.4	70.4	48.2
2008	34.0	36.1	23.4	33.3	74.1	50.6
2009	28.9	13.2	19.3	26.7	71.9	45.2
2010	30.3	10.8	16.4	26.7	54.9	35.3
2011	31.0	0.4	-	25.6	24.1	25.3

주: 해외소재 재보험사 시장점유율 = 해외소재 재보험사가 국내 원보험사로부터 직접 수재한 보험 료/원보험사의 국내외 총 출재보험료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 □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과 원보험사의 재보험시장점유율은 14%로 지 난 7년(2005~2011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함.
 - o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과 원보험사의 손해재보험시장 점유율은 9.5%임.
 - ㅇ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의 생명재보험시장 점유율은 32.7%임.
 - 2009년부터 RBC제도의 부분 시행으로 인해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해외출재 가 급감한 반면 국내출재는 소폭 증가함.

<표 Ⅱ-5>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과 원보험사의 시장점유율

(단위: %)

						(- 11 / 7 / 7	
구분		손해기		생명재보험	손해·생명		
⊤र	일반손보	자동차	장기	계	생정새보험	재보험	
2005	2.8	3.8	-	1.1	8.5	4.1	
2006	5.3	1.2	0.8	3.8	11.4	7.0	
2007	6.9	2.2	0.5	5.0	13.7	8.6	
2008	7.7	2.3	1.7	5.5	12.1	8.3	
2009	13.0	18.9	1.6	11.2	13.4	12.1	
2010	11.3	20.3	0.5	9.9	21.0	13.3	
2011	9.8	24.6	0.9	9.5	32.7	14.0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코리안리 제출자료(2013.11.15)

나. 시장진입 및 퇴출

- □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표 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개의 해외재 보험사 국내지점이 설립되었음.
 - 통상 해외재보험사는 국내사무소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조사 등을 수행하다가 재보험영업을 하기 위해 지점 인가를 받음.
 - 해외재보험사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내사무소는 재보험업을 경영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방법에 의하여 보험시 장의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을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

<표 Ⅱ-6>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 및 사무소 설립 현황

진입 형태	재보험사	모회사 소재지	허가일	임직원 수	비고
	제너럴리	독일	2001-04-30	9	2010.7.1 쾰른리에서 사명 변경
	스위스리	스위스	2001-07-28	32	
	뮌헨리	독일	2001-07-28	36	
지점	임플로이어스리	미국	2003-03-14	-	2007.4.27 스위스리 한국지점으로 보험계약 이전
	동경해상	일본	2003-06-13	8	
	스코리	프랑스	2004-04-16	13	
	RGA	미국	2005-03-25	43	
	하노버리	독일	2008-05-23	9	
	AIGUG	미국	2008-03-28	11	
	Partner Re	프랑스	1990-12-14	1	
	Transamerica Occidental Life Insurance Company	미국	2000-03-21	-	
사무	Hannover Re	독일	2000-12-04	-	2008.5.23지점허가
소	Zurich Insurance Company Ltd	스위스	2010-09-06	1	
	Asia Capital Reinsurance Group Pte. Ltd	싱가포르	2010-12-23	1	

주: 지점 및 사무소 임직원수는 2013.6월말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웹페이지

- □ 한편, 2002년부터 신규 재보험사 설립이 5차례 시도되었으나 결국 중단됨.
 - ㅇ 신규재보험사 설립 추진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 코리안리의 주장에 따르면 시업성 부족 및 국내재보험거래 전망 불투명성 으로 설립이 무산됨.
 - 그러나 그외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가여부에 대한 불투명성 등으로 설립이 무산됨.

<표 Ⅱ-7> 과거 신규재보험사 설립 추진 사례

구분	사업참여자				
1차(2002~2003)	Warburg Pincus(미)				
2차(2006)	국내 손보사 공동				
3차(2006~2007)	ACR사(싱가폴)				
4차(2008)	신한지주, 국민연금, C.V.Starr				
5차(2010)	산업은행				

자료: 코리안리 제공

2. 시장행태

가. 재출재

- □ 코리안리의 전체 매출액(수재보험료) 중 국내 매출액이 약 80%를 차 지할 정도로 코리안리의 국내시장의존도가 높음.
 - o 국내 원보험사의 코리안리 의존도는 약 63%이고 코리안리의 국내 원보험 사에 대한 의존도는 80%로 상호 주요 판매자와 구매자로 역할하고 있음.

<표 Ⅱ-8> 코리안리의 국내수재의존도

(단위: %)

구분		손해져	재보험		생명재보험	손해·생명
丁七	일반손보	자동차	장기	계	생생생모임	재보험
2005	82.2	91.2	100.0	87.9	98.3	89.5
2006	80.2	76.1	99.9	83.6	97.3	85.7
2007	77.1	67.8	99.2	79.6	96.1	81.9
2008	70.1	71.4	99.9	76.0	92.3	78.3
2009	72.0	83.9	100.0	79.6	89.7	81.1
2010	72.4	95.9	100.0	81.6	84.5	82.1
2011	69.7	94.9	100.0	79.9	80.7	80.0

주: 코리안리의 국내수재의존도 = 국내수재보험료/국내외수재보험료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 □ 코리안리는 2011년 기준 국내 원보험사로부터 3조 9,248억 원을 수 재하였고, 이중 86%는 원수손보사로부터 수재함.
 - 종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손보 48%로 가장 높고, 장기손보 23%, 생보 14%, 자동차보험 14%순으로 높음.

<표 Ⅱ-9> 코리안리 국내수재 구성

(단위: 억 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24,736	25,400	27,522	28,443	31,256	33,768	39,248
	일반	44.5	47.8	47.0	47.4	47.4	47.1	47.5
손	장기	18.4	19.2	19.1	20.1	21.6	22.8	22.9
	자동차	18.4	14.3	15.7	14.7	14.3	13.0	13.5
보	기타	3.6	3.3	2.9	3.5	2.6	2.8	2.3
	소계	84.9	84.6	84.7	85.7	85.9	85.7	86.2
-	생보	15.1	15.4	15.3	14.3	14.1	14.3	13.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주: 1) 2011년의 경우 전기간(2011.04~2012.03)에 걸쳐 농협손보와 농협생명의 수재보험료 포함함.
 - 2) '기타'는 보증과 해외원보험을 포함함.

자료: 코리안리 제출자료(2013.09.24)

- □ 코리안리는 2011년의 경우 원보험사가 출재한 보험료의 61%를 인수 하고 이중 44%를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 원보험사, 해외소재 재보 험사 등에 재출재함.
 - 원수손보사가 출재한 보험료의 65%를 인수하고 이중 47%를 재출재함.
 - 국내 원수손보사로부터 수재한 보험료의 39%는 해외로 재출재됨.
 - 또한 원수생보시가 출재한 보험료의 43%를 인수하고 이중 26%를 해외로 재출재함.
 - ㅇ 코리안리의 점유율 61%는 시실상 재출재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음.

<표 Ⅱ-10> 코리안리의 재출재율

(단위: %)

2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37.2 (30.4)	38.3 (29.6)	36.5 (27.4)	39.0 (29.4)	40.7 (32.5)	40.7 (33.5)	43.7 (33.9)	
	일반	67.4 (52.2)	67.7 (49.6)	66.1 (47.1)	70.1 (50.5)	74.5 (57.5)	74.2 (59.1)	79.4 (59.0)	
손보	장기	4.0 (4.0)	2.4 (2.3)	1.7 (1.6)	0.9 (0.9)	0.5 (0.5)	0.7 (0.7)	0.6 (0.6)	
근모	자동차	0.9 (0.8)	1.1 (1.1)	1.1 (1.1)	8.0 (7.9)	6.1 (6.1)	8.9 (8.9)	16.3 (15.8)	
	계	36.4 (35.8)	39.1 (35.0)	37.5 (32.4)	40.7 (34.3)	42.6 (37.8)	42.4 (39.1)	46.6 (39.3)	
샛 보.		41.3 (41.3)	34.3 (34.3)	31.2 (31.2)	28.5 (28.5)	29.4 (29.4)	30.2 (30.2)	25.9 (25.9)	

- 주: 1) 재출재율은 코리안리가 원보험사로부터 수재한 보험료 중 원보험사, 해외재보험사 국내지 점. 해외소재 재보험사에 재출재한 비율임.
 - 2) 괄호 안은 코리안리가 원보험사로부터 수재한 보험료 중 해외로 재출재한 보험료의 비율임.
- 3) 2011년의 경우 전기간(2011.04~2012.03)에 걸쳐 농협손보와 농협생명의 수재보험료를 포함함.

자료: 코리안리 제출자료(2013.09.24)

□ 특히, 2011년 코리안리가 국내 원보험사로부터 수재한 보험료의 48% 에 해당하는 일반손보의 경우 재출재율이 79%에 이름.

<그림 Ⅱ-1> 국내 재보험시장 구조(2011년)



- 주: 1) 괄호 안은 각각 손보, 일반손보, 생보를 나타냄.
 - 2) 재출재율은 코리안리가 원보험사로부터 수재한 보험료 대비 재출재한 보험료의 비율임.

- □ 따라서, 일반손보의 경우 '뮌헨리' 등 8개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 의 코리안리에 대한 의존도는 2010년에 적어도 57%에 이름.
 - o 코리안리도 국내 재출재보험료(일반손보)의 40% 이상을 해외재보험사 국 내지점에 재출재함.
 - 즉,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은 경쟁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라는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음.

<표 Ⅱ-11>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과 코리안리간 상호의존도(일반손보)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내지점의 코리안리에 대한 의존도	40.1	33.7	33.7	54.1	56.0	57.7	34.3
코리안리의 국내지점에 대한 의존도	64	59	57	53	57	56	41

- 주: 1)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의 코리안리에 대한 의존도 =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이 코리안리로부터 직접 수재한 일반손보 보험료/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수재한 일반손보 보험료
 - 2) 코리안리의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에 대한 의존도 = 코리안리가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에 직접 재출재한 일반손보 보험료/코리안리가 재출재한 일반손보 보험료

자료: 코리안리 제출자료(2013.09.24),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 □ 요컨대, 해외재보험사 또는 그 국내지점은 코리안리와 수재경쟁을 하기보다는 코리안리로부터 재출재 받는 사업모형을 유지할 유인이 있음 22)
 - o 해외재보험사와 코리안리 관계: 경쟁사업자인 동시에 판매자와 구매자라 는 수직적 관계임.
 - o 코리안리의 높은 재출재율은 타 재보험사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 하지는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경쟁하려는 유인 또는 의지를 약화시킬 개 연성이 높음.
 - 구체적으로, 국내 재보험시장에서 재보험요율이 일정기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편의상, '독점요율'이라 함) 해외재보험사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음: ① 코리안리가 독점요율로 수재한 물건을 재출재 받음으로써 독점이윤 공유하기, ② 독점요율보다 낮은 요율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기

²²⁾ 다만, 기술보험, 원자력보험, 항공우주보험의 경우 코리안리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해외재보험사 또는 그 지점이 해당 국내물건을 수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②를 선택할 경우 국내시장에는 결국 경쟁요율이 형성될 것이므로 해외재 보험사 입장에서는 ②를 선호할 유인이 작음.

나. 요율경쟁

- □ 재보험사의 요율을 직접 관찰·비교할 수 없으므로 경과손해율과 수 재보험료 대비 출재·이익수수료(수수료율)로부터 이를 유추함.
 -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재보험계약자(즉, 출재사) 입장에서 볼 때 상대적 으로 낮은 요율이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 o 또한, 재보험사의 요율경쟁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손해율이 높게 나타난 경우 이익(재보험료-재보험금-사업비)이 작기 때문에, 수재보험료 대비수수료(이익수수료+출재수수료)도 낮을 가능성이 높음.
 - 즉, 원보험시장에서 유효경쟁이 존재할 경우 사후적으로 높은 손해율과 낮은 수수료율은 재보험시장의 요율경쟁이 유효함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원보험시장의 유효경쟁 부재 시에는 원보험사의 독점이윤 추구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재보험사에 대한 교섭력 우위의 결과, 사후적으로 낮은 손해율과 높은 수수료율이 재보험시장의 유효경쟁을 의미할 개연성 이 있음.
- □ 구체적으로, 대표적 판매자인 코리안리의 경과손해율과 수수료율을 다음과 같이 보험종목별로 다각도에서 비교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요율경쟁도를 유추하고자 함.
 - ㅇ 첫째. 코리안리의 국내수재와 해외수재 실적 비교
 - ㅇ 둘째.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의 실적 비교
 - ㅇ 셋째, 코리안리와 미국소재 또는 세계 주요재보험사의 실적 비교
- □ 관찰기간 동안 코리안리의 해외수재 평균 손해율과 수수료율은 모두 국내수재에 비해 높음.
 - 특히, 코리안리의 일반손보 손해율은 국내수재가 50%로 해외수재에 비해 약 30% 낮은 반면, 수수료율은 해외수재보다 2% 낮음.
 - o 다만, 일반손보의 경우 꼬리리스크가 요율에 반영되기 때문에 7개년 (2005~2011년) 손해율을 비교함으로써 경쟁도를 유추하기에는 관찰기간 이 짧을 수 있음.

- 즉, 관찰기간 7년 내내 국내시장에서는 운이 좋아 대형보험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동기간 해외시장에서는 7년 내내 상대적으로 운이 나빠 대형보험사고가 일어났을 현저히 극단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음.

<표 Ⅱ-12> 코리안리의 보험종목별 수재수수료율과 손해율

(단위: %)

			국	내수재(2	2005-2011	년)	하	해외수재(2005-2011년)			
	구분		경과손	-해율	수수	수수료율		흔해율	수수료율		
1 6			평균	변동 계수	평균	변동 계수	평균	변동 계수	평균	변동 계수	
		화재	46.9	18.9	40.3	7.6	79.2	32.3	31.0	4.0	
	일 반	해상	53.5	17.2	17.3	4.6	83.2	15.5	24.8	2.9	
손 해	손 보	특종	49.2	19.4	23.8	11.6	77.2	37.9	23.8	19.2	
보		계	49.5	18.2	24.6	9.4	79.8	23.8	26.9	7.8	
험	자	동차	82.1	6.5	17.4	19.5	66.4	25.0	28.8	16.8	
	7	왕기	89.4	8.3	9.8	59.6	47.4	89.6	-83.9	-319.3	
	계		63.6	12.1	21.0	15.7	78.3	21.2	27.5	8.7	
	생명보험		89.3	2.3	8.7	26.7	63.5	8.2	28.8	19.8	
	전기	테	68.2	9.1	18.7	15.9	77.0	19.0	27.5	8.8	

- 주: 1) 경과손해율 = 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 2) 수수료율 = (수재수수료+이익수수료)/수재보험료
 - 3) 변동계수 = 표준편차/평균
 - 4) 손해보험은 일반손보,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보증, 해외원보험을 포함함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 □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은 일반손보 부문에서 안정적이고 상호 유사한 실적을 보임.
 - O 관찰기간 동안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은 약 50%의 손해율과 25%에 못 미치는 수수료율을 제시하고 있음.

<표 Ⅱ-13>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의 손해율과 수수료율

(단위: %)

	일반손보(2	005-2011년)	생명보험(2005-2011년)			
구분	경과손해율	수수료율	경과손해율	수수료율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코리안리	49.5	24.6	90.3	9.0		
	(18.2)	(9.4)	(89.4)	(22.4)		
해외재보험사	50.9	22.0	67.0	27.0		
국내지점	(16.5)	(14.6)	(62.0)	(24.8)		

- 주: 1) 경과손해율 = 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 2) 수수료율 = (수재수수료+이익수수료)/수재보험료
 - 3) 괄호 안은 변동계수(=표준편차/평균)임.
 - 4)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의 실적은 코리안리로부터 재출재받은 실적을 포함함.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 □ 코리안리의 최근 7년(2005~2011년)간 일반손보 평균 손해율은 50%로 미국 또는 세계 주요재보험사보다 매우 낮은 편임.
 - 미국소재 재보험사의 최근 7년(2006~2012년)간 평균 손해율은 67%, 세계 주요재보험사의 최근 5년(2008~2012년)간 평균 손해율은 65%임.
- □ 종합하면, 국내 일반손해 재보험시장에 활발한 요율경쟁이 존재한다 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3. 시장성과

- □ 최근 10개년 동안 코리안리는 보험영업에서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지 만, 투자영업에서 이를 보전함으로써 2012년에는 1,355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함.
 - o 코리안리는 해외수재에서 큰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수재만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양호한 보험영업실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됨.
 - 코리안리는 관찰기간 동안 내내 일반손보에서 보험영업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표 Ⅱ-14> 코리안리 보험종목별 보험영업이익

(단위: 억 원)

구분	일반손보	자동차	장기	해외수재	계
2005	347	-143	-63	-51	132
2006	255	-221	50	-49	-43
2007	134	-242	-53	-719	-716
2008	260	-57	-75	-1,674	-1,568
2009	1,391	-151	-426	574	579
2010	475	-151	-527	88	-233
2011	494	-85	-357	-1,588	-994

자료: 보험개발원 각 연도『보험통계연감』.

- □ 보험영업적자의 주요인인 해외수재를 감안하더라도, 코리안리의 최 근 10개년 평균 ROE는 11.6%로 세계 주요 재보험사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
 - o 세계 주요 재보험사들의 최근 5개년(2008~2012년) 평균 ROE를 살펴보면, 미국버뮤다 소재 재보험사는 7.7%, 유럽소재 대형4사는 7.8%, 로이드는 11.7%임.
 - 동기간 코리안리의 평균 ROE는 10.4%임.
 - 또한, 2011년 보유보험료 기준 상위 10대 재보험사들의 2002~2010(9년)기 간 동안 평균 ROE는 9.9%이며, 동기간 코리안리의 평균 ROE는 13.5%임.
 - 상기 세계 10대 재보험사는 Munich Re, Swiss Re, Hannover Re, SCOR Se, Partner Re, Everest Re, Transatlantic Holdings를 포함함.
 - 2001년에는 911테러공격과 2005년에는 허리케인 Katrina, Rita, Wilma 등 대형 자연재해로 인해 세계 주요 재보험사들의 보험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반면, 2006~2010년 사이에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영업실적의 악화 외에는 대형재해가 없었음.
 - o 한편, 코리안리는 코리안리의 ROE가 세계 주요재보험사보다 높은 것은 낮은 사업비에 기인한 것이지 유효경쟁 부재 및 독점적 요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코리안리가 상기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해외 주요

재보험사의 사업비율은 각각 뮌헨리 5.5%, 하노버리 2.5%, 스코르리 4.2%, 토이리 5.9%이며, 코리안리의 사업비율은 1.8%임.²³⁾

- ROE는 자본총계 대비 당기순이익으로, 사업비율이 증가할수록 당기순이익 및 ROE가 감소함.

<표 Ⅱ-15> 코리안리 사업실적

(단위: 백만 원. %)

구분	보험영 업이익	당기순 이익	경과손 해율(A)	순사업 비율(B)	합산비 율(A+B)	운용자산 이익률	ROA	ROE
2003	37,639	65,012	69.6	25.5	95.1	5	2.9	17.9
2004	25,885	53,782	67.3	28.1	95.4	4.4	2.3	12.8
2005	13,203	62,551	69.7	26	95.6	4.9	2.4	14
2006	-4,293	57,679	71	26.1	97.1	4.8	2	11.9
2007	-71,631	37,651	73.2	25.7	99	5.5	1.1	7.3
2008	-156,779	60,751	79.3	23.8	103.1	8.2	1.6	11.5
2009	57,868	78,952	75.5	20.4	95.9	3	1.9	12.7
2010	-23,252	107,626	79.1	19.3	98.5	5.9	2.4	15.2
2011	-99,430	43,422	84	18.6	102.6	4.8	0.4	2.2
2012	77,937	135,534	79.7	17.8	97.6	3.1	1.9	10.2
평균	-14,285	70,296	74.8	23.1	98.0	5.0	1.9	11.6

- 주: 1) 경과손해율은 해외출수재를 포함함.
 - 2) 합산비율 = 경과손해율 + 순사업비율
 - 3) 순사업비율 = 순사업비/보유보험료, 여기에서 순사업비는 유지관리비 뿐 아니라 수재보험수 수료와 수재이익수수료를 포함함.
 - 4) 운용자산이익률 = 투자영업이익/{(당기말운용자산 + 전년동기말 운용자산 직전1년간 투자 영엽이익)/2} * 100
 - 5) 보험영업이익 = (경과보험료 발생손해액 순사업비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환입 계약 자이익배당준비금적립 + 비상위험준비금환입 - 비상위험준비금적립)
 - 6) ROA(Return on Assets)는 자산총액 대비 당기순이익이고, ROE는 자본총계 대비 당기순이익임.
- 자료: 보험영업이익·당기순이익·경과손해율·순사업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포털, 운용자산이익률ROA-ROE는 코리안리 경영통일공시자료 각연도.

²³⁾ 여기에서 사업비율은 경과보험료 대비 유지관리비(수재보험수수료와 수재이익수수료를 제외)의 비율을 의미하며, 다만 토아리의 사업비율은 보유보험료 대비 유리관리비의 비율임. 각 사의 사업비율은 연차보고서를 참고함.

<표 Ⅱ-16> 세계 주요 재보험사의 사업실적

(단위: %)

구분	미국·버뮤다 소재 재보험사			유럽	소재 대형	형4사	로이드		
	손해율	합산 비율	ROE	손해율	합산 비율	ROE	손해율	합산 비율	ROE
2008	64.2	93.6	-0.7	68.1	97.4	1.8	61.4	93.2	13.7
2009	56.1	85.8	16.0	65.5	94.3	8.8	51.6	87.4	23.9
2010	61.8	92.7	11.9	68.8	98.8	8.3	58.6	94.5	12.1
2011	77.3	107.3	1.0	77.5	107.0	6.6	71.3	108.1	-2.8
2012	63.4	93.1	10.6	61.6	91.3	13.0	54.0	91.1	15.1
5년 평균	64.7	94.7	7.7	68.1	97.6	7.8	59.2	95.0	11.7

주: 1) 미국버뮤다 지역 재보험사 중 Berkshire Hathaway제외(원자료)

2) 유럽소재 대형4사는 Munich Re, Swiss Re, Hannover Re, SCOR를 포함

자료: A.M. Best(2013)

<표 Ⅱ-17> 세계 주요 재보험사와 코리안리 ROE 비교

(단위: %)

			(= 11 /4/			
구분	2011년 보유보험료	ROE 평균				
丁七	기준 순위	2002~2010년(9년)	2006~2010년(5년)			
Munich Re	1	8.8	11.7			
Swiss Re	2	6.2	7.6			
Hannover Re	4	14.3	15.7			
SCOR Se	6	1.3	11.8			
Partner Re	8	13.4	15.2			
Everest Re	9	10.3	11.6			
Transatlantic Holdings	10	10.2	11.4			
코리안리	11	13.5	11.7			

- 주: 1) 보유보험료 기준 순위는 2011년 S&P 발표 자료임.
 - 2) 2001년에는 9/11테러공격과 2005년에는 허리케인 Katrina, Rita, Wilma 등 대형자연재해로 인해 세계 주요 재보험사들의 ROE가 낮은 반면 2006~2010년 사이에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 한 투자영업실적 악화 외에는 대형재해가 없었음.
 - 3) 2001년 미국의 9/11테러공격을 기점으로 9/11 이후에 설립된 소규모 신생재보험사들의 2002~2010년 평균 ROE는 14.2%이고 2006~2010년 평균 ROE는 17.7%임.

자료: S&P(2011), Global Reinsurance Highlights

- □ 한편, 코리안리와 달리 해외수재를 하지 않고 국내수재에 집중하는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의 영업기간 동안 평균 ROE는 뮌헨리 50%, 스위스리 44%임.
 - 뮌헨리나 스위스리 등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은 원보험사로부터 직접 수 재하기도하고 코리안리로부터 재출재를 받기도 함.
- □ 특히, 손해재보험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분산된 생명재보험에 집중한 하노버리나 RGA의 경우 평균 ROE는 타 지점에 비해 현저히 낮음.
 - o 이는 국내 생명재보험거래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상당히 활발히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표 Ⅱ-18>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의 ROE

(단위: %)

구분	제너럴리	뮌헨리	스위스리	스코리	동경해상	AIG UG	RGA	하노버리
2003	-3.8	39.5	-26.8					
2004	12.6	132.5	80.9		164.7			
2005	10.4	61	17.1	13.6	102.2			
2006	9.5	87.3	34.3	53.6	62.5		22.5	
2007	15.5	77	67.5	47.9	31		0	
2008	20.4	45.8	48	12.4	48.8		0.7	
2009	21.5	-6.7	25.5	-21.7	108.3	-42.6	-35.7	-2.1
2010	22.1	8.2	121.2	8.4	50.4	-16.5	-7.5	-1.8
2011	18.5	38.2	24.3	-7.7	58.6	-25.2	31	-13.9
2012	15.6	17	44.9	26	18.2	-43.9	6.4	-3.9
평균	14.3	50	43.7	16.6	71.6	-32.1	-1	-5.4
표준편차	7.7	41.3	40.1	25.6	45.7	13.4	24.1	5.8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포털

- □ 관찰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최소한 국내 재보험 시장의 수익성이 좋지 않아 신규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 o 국내 재보험시장에 참여한 재보험시들은 타 재보험시들에 비해 높은 수 익을 누리고 있음.

Ⅲ. 정부규제

1. 정부규제 현황

- □ 재보험규제는 재보험사에 대한 직접규제와 출재사를 통한 간접규제 가 있음.
 - o 직접규제란 감독당국이 재보험사의 진입, 가격, 영업행위, 건전성 등을 직접 규제하는 것임.
 - 간접규제란 감독당국이 자국에서 영업하는 해외소재 재보험사에 대해 직접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국 출재사의 재보험거래에 대해 규제함으로 써 재보험사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임.
 - 국경간 거래라는 재보험의 성격상 소재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재보험 사를 자국 감독기관이 직접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구체적으로 출재시의 재보험자산 인정요건(책임준비금 적립면제조건), 지 급여력조건, 재보험관리모범규준 등을 통해 일정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재보험사의 진입을 간접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가. 직접규제

1) 진입규제

국내에서	재보험영업	을 할	수	있는	방법어	는	법인설립,	지점설립,
비인가 재	보험사로서	역외에	서	영업ㅎ	나는 등	세	가지가 있-	음.

- □ 먼저, 재보험업 영위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00억 원 이상 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함. 다만, 취급하고 있는 보험종목에 대한 재보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보험업법 제9조).
 - 재보험은 손해보험업 보험종목 중 하나이며, 재보험업을 경영하기 위해 서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²⁴⁾

²⁴⁾ 보험업법 제4조 제2항.

- o 보험업법 제10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하나,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²⁵⁾의 재보험은 겸영이 가능함.
- □ 외국재보험사가 국내에서 지점의 형태로 재보험업을 경영하려는 경 우에는 30억 원 이상의 영업기금이 요구됨(보험업법시행령 제14조).
 - 추가조건으로는 첫째,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보험업과 같은 보험업을 외국 법령에 따라 경영하고 있어야 함(보험업법 제6조 제2항).
 - o 둘째, 자산상황, 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야 함.
 - 구체적으로, 지점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신용 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소재국의 감독기 관이 정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셋째,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경영하려는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함.
 - ㅇ 넷째,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 함.
- □ 해외소재 재보험사도 국내 원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그 재보험계약체결 방법은 제한적임.
 - o 보험업감독규정 제1-6조(보험계약체결방법)에 따르면, 해외소재 재보험 사는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을 이용하거나, 대한민국에 소재 하는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즉, 해외소재 재보험시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대한민국 안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업무, 즉 대면영업을 할 수 없음.
 - o 나아가, 2013년 11월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을 개정하여 국내 원보험사가 해외소재 재보험사와 불법 대면영업 상대방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을 신설함(동 모범규준 제5-1-8).

²⁵⁾ 제3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 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 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하기가 곤란하여 제3보험으로 분류하고 있음.

- 2) 요율 및 수수료 규제

 □ 원보험사와 달리 재보험사의 요율 및 수수료에 대한 규제는 없음.

 3) 사업규제

 □ 재보험사는 재무건전성기준, 공시, 검사 및 제재조치에 대해 원보험사와 동일한 규제 및 감독을 받음.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경영공시)에 의거, 생손보 협회에서정하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라 매 반기말 재보험 거래현황, 보험위험의 집중 및 재보험 정책, 재보험거래 익스포져(exposure) 현황을 공시하여야함.

 □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은 법인형태의 재보험사와 동일하게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음.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봄(보험업법 제4조 제6항).

 □ 다만,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은 대한민국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
 - 법적으로 국내지점은 외국에 있는 본점에 소속된 영업소에 불과하므로 그 자산은 외국보험회사 본점 자산의 일부에 불과한데, 국내지점의 자산 이 외국에 있는 본점의 자산과 구분 없이 운용될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에 보유하여야 함(보험업법 제75조).

- o 자산의 국내보유의무 때문에 국내지점은 보험자산의 해외운용 측면에서 법인형태의 재보험사보다 불리함.
- 현재 법인 재보험사는 최고 총자산의 30%를 해외에서 운용할 수 있음. 국내 지점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 총자산의 80~90% 내외에 달하고 있음 을 감안할 때 국내지점은 10~20% 내외의 자산만 해외에서 운용할 수 있음.
- o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국내보유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보험업법의 다른 위반행위에 비하여 처벌이 엄격함.

<표 Ⅲ-1> 진입형태별 재보험사에 대한 직접규제

(단위: %)

진입 형태	법인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	해외소재 재보험사
진입 규제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함. (다만, 취급하고 있는 보험 종목에 대한 재보험을 하 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신용등급 투자적격 이상 -소재국의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	없음.
가격 규제	없음.	없음.	없음.
자산 운용 규제	-원보험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최고 총자산의 30%를 해외에서 운용할 수 있음.)		없음.
사업 규제	- 재무건전성기준, 공시, 검사 일한 규제 및 감독을 받음	· - - - - - - - - - - - - - - - - - - -	없음.

나. 간접규제

우리	감독당국은	타국	감독당국의	│ 규제를	받으면서	너 국내	원보험사
등과	재보험거래	를 하는	하외소재	재보험사	에 대해	어떠한	통제권도
없음.							

따라	서 우리	감독	투당국은	출재사	의 재도	브험거리	ㅐ를	관리힘	<u> 0 i</u>	로써	해외
소재	재보험	사의	지급불	능위험으	2로부터	국내	원토	험사	및	계익	: 자를
보호	하고 있	음.									

1) 출재사의 재보험자산 인정요건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별도의
자산(재보험	자산)으로	표기	함.26)			

²⁶⁾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13조.

-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재보험을 받은 보험사(즉, 수재사)는 재보험을 받은 부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함.²⁷⁾
- □ 해당 재보험거래가 출재사의 재보험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재 보험거래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²⁸⁾
 - ㅇ 첫째,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고,
 - o 둘째, 해당 재보험계약으로 인해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 손실 발생 가능 성이 있어야 함.
- □ 다만, 재보험을 받은 회사가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다음과 같은 투자부적격인 경우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하여야 함.²⁹⁾
 - o 구체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 내의 신용평가에서 평가등급(이에 상응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 급을 포함)이 투자적격이 아닌 경우,30)
 - o 다만, 외국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외국보험회사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 가에서 해당 정부가 받은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는 제외함.

2) 지급여력규제

□ 지급여력비율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출재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 4월 도입된 RBC제도에서는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반영되는 출 재율을 재보험납입보험료의 최대 50%로 제한하고,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은 재보험으로 인정하지 않음.

²⁷⁾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²⁸⁾ 재보험거래는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②항 1, 2의 요 건에 부합하는 거래를 말함.

²⁹⁾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30) 2010}년 5월부터 손해보험사 재보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격 재 보험사 Listing 제도를 시행함. 동 제도는 법규상 적격성 요건을 갖춘 재보 험사 List를 손해보험사에 제공함으로써 적격 재보험사와의 거래를 유도할 목적임.

- 과거 보험사가 100억 원의 원수위험보험료(수재위험보험료 제외)를 거둬이를 모두 재보험에 출재할 경우 보유위험보험료는 0원이었지만, RBC제도 하에선 100억 원 모두 출재해도 50억 원의 보유위험보험료가 남아있다고 계산함.
- o 재보험 출재가 거대 위험에 대비하는 원래 목적보다는 지급여력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임.
- o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재보험사의 신용등급도 출재사의 신용리스크에 반 영됨.
- □ 재보험을 받은 회사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출재사의 요구자본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재보험사는 영업을 위해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할 유인이 있음.
 - 신용위험액 산출시 재보험자산에 대한 위험계수는 재보험사의 신용등급 별로 0.8~6%를 적용함.

3) 재보험관리모범규준

- □ 1997년 재보험 자유화정책 이후 재보험사 또는 출재사의 재보험거래 를 규제하는 감독규정이 없었으나 2005년 6월부터 재보험관리모범규 준을 통해 시장자율규제를 유도해 왔음.
 -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능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보험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재보험계약 을 관리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권고함.
 - 구체적으로, 재보험사 선택과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재보험 거래의 경우 집 중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역별 한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 동 모범규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
 - o 2008년 금융위기 때 선박선수금환급(RG)31) 보험사태 등 재보험관련 문제

^{31) 2008}년 금융위기 시, 선박선수금환급보험(RG, Refund Guarantee보험, 조선소가 선박건조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조선소가 선주로부터 선박건조를 위해 받은 선수금을 보험회사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보험) 부실출재로 인해 거액의 재보험금 미회수 사고 발생

- 가 생기면서 금융감독원은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을 개정하여 2011년 4월부터 시행함.
- o 2013년 11월 불합리한 재보험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동 모범규준을 재개 정함.
- 주요 개정내용으로 ① 합리적 출재수수료 부과, ② 외국보험회사의 불법 재보험영업 규제, ③ 중개사 경유계약의 재보험거래선 관리, ④ 외국계보 험회사 국내지점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등이 있음.

2. 과거 규제개혁

가. 국영재보험사 설립

- □ 1959년에서 1962년까지 정부의 개입으로 의무재보험이 시도됨.
 - 동 기간 중 재보험사는 국제재보험(주), 안보재보험(주), 한국재보험공 사 등이 있었으나 경영의 어려움으로 1~2년 내에 원보험회사로 전환하거 나 흡수·합병됨.
 - 1959년 이전까지는 정부의 특별한 규제없이 원보험사간 자율적으로 상호재 보험이 이루어짐
- □ 1962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법³²⁾을 제정하여 대한손해재보험공사를 단일창구로 하는 의무재보험 실시, 그로부터 15년간 국영재보험의 독점형태로 영위됨.
 -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보험회사수재감사단의 건의에 따라 설립된 대한소해재보험공사⁽³³⁾가 출범해서 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함.
 - 동법에 따르면 국내재보험의 경우, 모든 보험사업자는 자기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 공사에 재보험 출재하여야 하며, 공사는 자기가 인수한 재보험계약을 다시 재재보험으로 출재할 수 있고, 재보험과 재재보험의 종류와 한도 등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함(대한손해재보험공사법 제16조 국내재보험).

^{32) 1962}년에 제정, 1977년에 폐지

^{33) 1968}년부터 대한재보험공사로 개칭

- 외국재보험의 경우, 공사만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규제는
 그 후 일부 완화되어 1969년부터는 원 보험자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됨 (대한손해재보험공사법 제17조 외국재보험).
- □ 1968년 보험업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잉 여금 및 재보험 관리규정」이 만들어짐.
 - 동 규정은 1998년 「손보사·생보사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현행 보험감독 규정 제25조 내지 제32조로 흡수)」의 제정시까지 30년간 보험사업자의 담보능력 증대와 재보험처리 등에 기준이 되어온 중요한 규정임.
 - o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보험에 있어서 보험사업자의 연간보유보험료 총액은 보험계약자잉여금의 500%를 초과할 수 없고 재보험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일반원칙으로 손보시는 보험계약을 출재할 때 국내의 다른 손보시에 우선 출재하여야 함(국내우선출재제도)
 - 보유한 보험금액을 비례적으로 재보험으로 출재할 수 없음.
 - 해외 재보험사의 신용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Security Guideline)을 제정·운영하여야 햄(1993.4 신설. 1995.9 폐지).
 - o 국내우선출재제도는 국내 우선출재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험료의 해외유출을 가급적 억제하고 국내시장의 담보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보유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 1977년 제3차 개정보험업법³⁴⁾ 제18조(재보험)에서는 보험사업자는 그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책임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보험에 붙여야 한다고 규정함.
 - o 그러나 이 조항은 재보험규제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보험사업자의 위험인수 및 보유에 대한 미비점이 대두됨.³⁵⁾

^{34) 1977}년에 종전의 다기화된 보험관계 4개 법률이 하나의 보험업법으로 통합·개 정되면서 재보험에 관한 규정도 새로운 보험업법으로 통합됨.

³⁵⁾ 노상봉(1998), 『보험업법 해설』, 매일경제신문사, p.277

나. 민영화 및 시장개방

- □ 정부의 보험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1978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가 민 영화되면서 재보험거래도 상업베이스의 경쟁체제로 전환하게 됨.
 - 민영화조치 이후에도 1984년 초까지 국내의 재보험은 대부분 대한재보험 (주)에 집중되어 왔음.
- □ 1983년 보험요율구득제도가 시행됨.
 - 보험요율구득제도는 적정한 보험요율수준을 유지하고 지나친 요율경쟁 및 계약자에 대한 차등요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특종, 선박, 항공 보험 등에서 요율서에 명시된 협정요율을 사용하지 않는 계약은 재보사 로부터 요율을 구득토록 하는 11개 원보험사와 재보험사 간의 협정임.
 - o 이에 따라 화재, 특종, 선박, 항공보험 중 현행 요율서상 인가요율 사용 이 어려운 계약에 대해서는 대한재보험(주)이 해외에서 구득한 요율을 사용하며, 동 계약에 대한 재보험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대한재보험(주) 과의 특약 등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재보험망을 사용함.
- □ 원보험사의 의무재보험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1990년 폐지됨.
 - o 1984년 정부는 화재, 선박, 적하, 기계 등 4개 종목만을 의무출재토록 하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제하고 원보험사간 상호재보험도 허용함.
 - 이들 4개 종목에 대한 의무출재도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연치적으로 그 출재비율을 축소함.
 - o 1990년 의무재보험제도가 철폐되어 의무출재종목과 의무출재비율이 폐지 되었으나, 재보험거래가 원보험사의 자율에 완전히 맡겨졌다고 할 수는 없음.
 - 1968년에 제정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잉여금 및 재보험 관리규정」 (생보사의 경우는 1969년 제정된 「생명보험재보험 교환준칙」)에 의한 「국 내우선출재제도」와 1983년에 체결된 「보험요율구득제도」가 유효하였음.

□ 1997년 4월 재보험시장 자율화

o 국내우선출재제도와 보험요율구득제도는 그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축소 되어 1997년 4월 최종적으로 폐지됨.

o 재보험사유화일정:

- 1단계(1993.4): 항공, 재산종합

- 2단계(1996.4): 선박, 자동차, 보증, 적하, 상해, 근재, 장기 등

- 3단계(1997.4): 화재, 특종

다. 재보험관리모범규준

□ 2005년 6월, 보험회사의 재보험업무 관리기능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 보험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보험거래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지 켜야할 최소한의 관리기준인「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함.

Ⅳ. 해외사례

1. 세계 재보험시장

가. 규모

- □ IAIS에 따르면³⁶⁾, 2010년 기준 세계 원수보험료는 4조 3,380억 달러로 원수보험료의 약 5%가 출재되며 수재보험료의 약 13%가 재출재됨.
 - 즉, 세계 재보험시장 규모는 약 2,140억 달러로 추정되며 손해재보험이 77%를 차지함.
 - O A.M. Best 발표에 따르면, 세계 50대 재보험사의 수재보험료는 2010년 1,910억 달러, 2012년 2,170억 달러이며 재출재율을 각각 15%, 12%임.

<표 Ⅳ-1> 세계 재보험시장 규모(2010년)

(단위: 10억 달러)

구분	원수보험료 (A)	재보험료 (B)	재출재 보험료(C)	출재율 (B/A)	재출재율 (C/B)
손해	1,818	164	23	9%	14%
생명	2,520	50	4	2%	8%
계	4,338	214	27	5%	13%

주: 2010년 Gross Premium Written 기준

자료: IAIS, Global Reinsurance Market Report 2012.

□ 세계 주요 재보험사의 최근 5년(2008~2012) 평균 손해율은 65%, 합 산비율은 96%, ROE는 8.3%임.

³⁶⁾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국제보험감독자 협의회임.

<표 IV-2> 세계 재보험시장 실적

(단위: %)

						(= 11 117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5년 평균
경과손해율	65.2	58.9	63.8	76.1	60.7	64.9
사업비율	29.8	30.6	31.6	31.3	31.3	30.9
합산비율	95.0	89.5	95.4	107.4	92.0	95.9
ROE	2.1	14.6	10.6	2.5	12.1	8.3

주: 세계재보험시장 자료는 미국과 버뮤다 시장(Berkshire Hathaway 제외), 세계 4대 재보험사 (Munich Re, Swiss Re, Hannover Re, SCOR)와 로이즈의 합임.

자료: A.M. Best(2012, 2013)

나. 특징

- □ 세계재보험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소수의 대형 재보험사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 1987년 상위5개 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30.8%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에는 60%에 이르렀으며, 이는 원보험시장 집중도의 2배 이상임.
 - 2010년 상위5개사의 순경과보험료는 870억 달러임.
 - 손해보험은 총 재보험료의 약 80%를 차지하는데, 최근 10개년 손해보험부 문의 집중도는 평균 50.6%로 생명 및 건강 보험부문의 집중도(90% 이상) 보다 높음.³⁷⁾
 - 규모의 경제, 대형 자연재해 위험에의 노출, 활발한 진입 및 퇴출, 그리고 재보험사의 적극적인 M&A 결과, 세계 재보험시장 집중도가 높아짐.38)
 - IAIS(2012)는 계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결국 높은 산업집중도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지적함.
 - 그러나 높은 산업집중도로 인해 원수보험사, 보험중개사, 기타 재보험 이해관계자들은 소수의 대형 재보험사의 실적에 종속됨.
 - 또한 IAIS(2012)는 높은 재보험시장 집중도가 위험의 집중과 상호연관성을 높임으로써 산업간 시스테믹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함.

³⁷⁾ IAIS(2012)에 따르면, 손해보험부문은 생명 및 건강 보험부문과 비교하여 진입, 퇴출, 인수, 합병 등이 활발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³⁸⁾ Cummins and Weiss(2000).

<표 IV-3> 세계 재보험시장 점유율

(단위: %)

			(는 11 · 70)
구분	CR3	CR5	CR10
1987	25.1	30.8	43.1
1988	25.0	30.7	43.8
1989	24.8	31.4	45.1
1990	24.5	31.9	45.8
1991	24.7	31.7	46.0
1992	23.9	31.1	45.2
1993	25.6	32.2	45.3
1994	29.2	35.5	48.1
1995	24.6	31.1	43.7
1999	45.7	59.6	79.9
2001	44.9	59.2	79.9
2003	45.9	58.7	75.9
2005	47.0	60.8	73.7
2007	50.8	63.7	80.1
2009	48.5	63.7	81.5
2010	43.9	60.0	79.0

주: 보유보험료 기준 집중도이며, C3, C5, C10은 각각 상위 3사, 5사, 10사의 시장점유율의 합임. 자료: Outreville(1998, 2012)

[□] 둘째, 재보험공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0년 EU지역의 점유율은 50%를 상회하는 등 특정지역에 대한 재보험의존도가 높음.

^{○ 2000}년대 초반 이후 5개 국가 소재 재보험그룹이 세계 재보험시장의 80% 이상(수재보험료 기준)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 30년 동안 독일, 미국, 스위스 등 3개국 소재 재보험그룹은 세계 재보험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Ⅳ-4> 소재국별 재보험그룹의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독일	29.8	32.5	27.1	22.5	26.4	30.2	28.4
미국	26.7	24.7	19.1	20.9	19.9	17.6	19.1
버뮤다	2.3	4.7	11.3	16.2	12.9	13.8	15.8
스위스	18.8	19.1	17.5	15.7	17.7	14.3	13.1
영국	4.8	6.1	4.8	4.5	5.6	6.7	6.7
프랑스	5.9	7.4	4.4	3.8	5.8	6.3	6.2
일본	2.3	1.9	6.1	5.9	6.2	4.7	4.4
나머지	9.4	3.6	9.7	10.5	5.5	6.4	6.3

자료: Outreville(2012)

2. 해외 각국의 시장현황

- □ 본 절에서는 브라질, 중국, 대만, 그리고 미국의 재보험시장 구조를 살펴보기로 함.
 - o 브라질과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국영재보험사의 독점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하다 2000년대 들어 재보험시장을 개방하였지만, 개방 이후 우리나라 와는 상이한 시장구조나 사업행태를 보이고 있어 검토의 의미가 있음.
 - 대만 역시 국영재보험사의 독점구조를 유지하다 시장을 개방하였지만,
 브라질이나 중국과 달리 경제규모 및 성장과정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토의 의미가 있음.
 - 경제규모가 크고 대형재해노출 빈도가 잦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재 보험수요자로서, 경쟁과 건전성 규제,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의 경계에서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가 다양하며 EU를 제외한 호주, 캐나다 등의 벤 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의미가 있음.

가. 브라질

1) 재보험시장 개요

(1) 발전과정

- □ 브라질은 1939년, 정부지분 50%와 의결권 없는 보험회사 지분 50%로 구성된 국영재보험사를 설립함.
 - o IRB는 재보험사인 동시에 재보험규제기관이기도 함.
- □ 2008년 재보험시장을 개방하기 전까지 브라질 내 모든 원보험사는 IRB를 통해서만 재보험구입이 가능함.
 - ㅇ 시장개방 전 해외재보험사가 브라질 시장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임:
 - IRB의 재재보험을 받거나.
 - 특정 종목의 경우 조건부 직접출재(재보험수수료와 출재보험료에 적용되는 2% 고정 재재보험세 납부 조건)를 통해 이에 참여함.
- □ 브라질의 경제성장과 함께 IRB의 인수규모가 커지자 해외재출재 규모도 증가하여 2001년 IRB의 해외재출재보험료는 수재보험료의 52%에 이름.
 - 1999년 IRB는 수재보험료의 15%를 국내시장에 재출재하고 28%를 해외시 장에 재출재함.
 - 2001년 IRB의 해외재출재는 52%로 증가하여 1999년 국내외 재출재보험료 의 합보다 커짐.
 - o IRB가 해외시장에 재출재한 보험료의 규모는 수재보험료 대비 1998년 18.9%, 2000년 31.7%, 2001년 52.1%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 2000년대 초 IRB의 해외재출재규모가 급증하자 재보험시장 개방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여러 정치적 이유로 무산되고 결국 2008년 4월 17일이 되서야 재보험시장이 개방됨.
 - 시장정체기와 2005년의 정치스캔들의 여파로 IRB의 임원진이 전면 교체 되면서 브라질 재보험시장 개방 움직임이 활발해짐.

- 이 시장개방과 함께 SUSEP(Superintendence of Private Insurance)이 재보험 규제기관이 되고 IRB는 현지 재보험사로서만 역할함.
- 구체적으로 브라질의 민영보험 규제기관은 National Council of Private Insurance(CNSP)이며 SUSEP는 CNSP의 규제 및 정책을 집행구체화하는 기관임.
- □ 재보험사는 Local 재보험사, Admitted 재보험사, Occasional 재보험사 등 세 가지 형태로 브라질에서 영업할 수 있음.
 - o Local 재보험사는 브리질에 합자회사(joint stock company)로 설립되어 SUSEP의 감독하에 브라질법(최소자본, 건전성, 감독규제를 받음)의 적용을 받는 전업재보험사를 의미함.
 - 최소자본금은 3,300만 달러임.
 - 연간 수재보험료의 50%까지 재출재 가능하고 해외 계열재보험사에 20%까지 재출재 가능함.
 - 2011~2016년 기간 동안 국내 원보험사로부터 40% 우선수재 기능함.
 - O Admitted 재보험사는 타국에 본사를 두고 타 국법을 따르지만, 브라질 내에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을 둔 재보험사를 의미함.
 - 소재국에서 최소 5년 동안 재보험영업을 한 기록이 있고 소재국 법을 준수 해야 함.
 - 최소요구순자산은 1억 달러이며, 최소신용등급기준을 충족해야 함.
 - SUSEP에 연결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생명보험재보험의 경우 백만 달러, 그 외 종목의 경우 5백만 달러의 예치금을 내어야 함.
 - 보험료와 보험금 관련 준비금에 상응하는 담보가 브리질 내에 있어야 함. 다만, 재보험사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현지 담보금이 낮아짐.
 - o Occasional 재보험사는 타국에 소재한 재보험사로 브라질 내 주재사무소 가 없지만 브라질 감독당국으로부터 브라질내 영업허가를 받은 재보험사 를 의미함.
 - 세율이 20% 미만인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재보험시는 브라질에서 영업할 수 없음.
 - 최소요구순자산은 150만 달러이고, 소재국에서 최소 5년 동안 재보험영업 을 한 기록이 있고 소재국 법을 준수해야 함.
 - Occasional 재보험사는 Admitted 재보험사에 비해 최소요구순자산은 50만 달러 높고, 최소신용등급은 1단계 높음.

<표 Ⅳ-5> 브라질 재보험시장 진입가능 유형

진입	- Novelo	해외재	보험사
유형	Local 재보험사	Local 새모임사 Admitted 재보험사	
인가 요건	- 자본금 3,300만 달러 - 지급준비금 요건	- 최소요구순자산 1억 달러 - 예치금: 5백만 달러 (단, 생명보험만 취급할 경우 백만 달러) - 지급준비금에 상응하는 담보설정 - 신용등급 Baa3/BBB- 이상	- 최소요구순자산 1억 5천만 달러 - 신용등급 Baa2/BBB 이상 - 조세피난처 소재 재보험사 진입 금지
현지 대표	브라질 현지 법인	현지 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없음.
감독 규제	브라질 감독당국(SUSEP)의 감독을 받음.	소재국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음.	소재국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음.
출재 규제	- 원수사의 40% 국내우선출재의무 - 해외 재출재한도: 50% - 그룹내 출재 또는 재출재 한도: 20%	그룹내 재출재한도: 20%	원수사의 직접출재 한도: 연간 보험료의 10% (다만, 오일 리스크, 보증 등 특수위험의 경우 25% 한도)

(2)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

- □ 첫째, 원보험사의 국내우선출재의무
 - 원보험사는 시장개방 후 첫 3년(2008~2010년)간 IRB를 비롯한 현지 전업 재보험사에 출재보험료의 60%를, 이후 6년(2011~2016)간은 출재보험료의 40%를 우선 출재해야 함.
 - O 원보험사의 40% 국내우선출재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함.
 - Reg 225 of 2010 이전: 수재우선권을 가진 현지 재보험시는 원보험사와 협의 하에 요율 및 거래조건을 맞추거나 수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쌍방간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재시는 해외재보험사 (Admitted 또는 Occasional 재보험사)에 출재할 수 있음.

- Reg 225 of 2010: 보험시는 거래조건에 상관없이 현지 재보험사에 출재보 험료의 40%를 의무적으로 출재해야 함. 현지 재보험시는 출재사에 더 높은 요율을 요구할 수 있고 원보험시는 이러한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함.
- Reg CNSP 241 of 2011: 2011년 원보험사의 국내우선출재의무에 대한 반발 이 거세지자, 출재사와 현지 재보험사간 거래조건 및 요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할 수 있도록 허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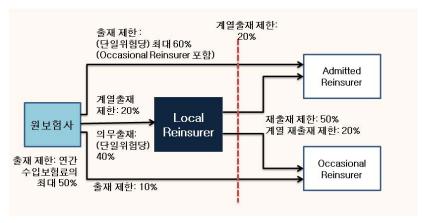
□ 출재 및 재출재 제한

- O 원보험사는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상을 출재할 수 없으며, 총 출재보 험료의 최대 10% 한도내에서 Occasional 재보험사에 출재할 수 있음.
- ㅇ 현지 재보험사는 연간 수재보험료의 50% 이상을 재출재할 수 없음.

□ 계열사 출재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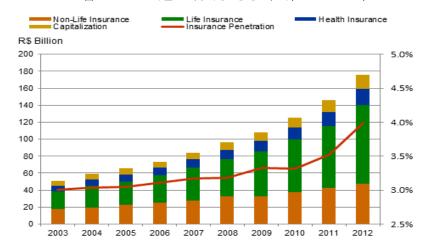
- 원보험사 또는 현지 재보험사는 해외소재 계열회사에 보험료의 20% 이상을 출재, 또는 재출재할 수 없음(Reg 232 of 2011).
- Reg 232 of 2011이 시행되기 이전, 원보험사는 그룹사의 계열재보험사에 무제한 출재할 수 있었음.

<그림 IV-1> 브라질의 출재 제한



(3) 시장규모

- □ 지난 5년 동안(2008~2012년) 브라질 보험시장의 평균성장률은 손해 보험 11.7%, 건강보험 13.3%, 생명보험 19.1%로 동기간 GDP성장률을 넘어서나 보험침투율³⁹⁾은 여전히 낮음.
 -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보험시장으로서, 2012년 기준 손생 보 보험료가 라틴아메리카의 50%를 차지함.
 - o 브라질 보험시장은 향후 성장의 여지가 충분함.
 - 스위스리의 시그마 리포트에 따르면, 브라질 보험시장은 2012년 기준 세계 시장의 1.8%로 13위를 기록함.
 - 2012년 기준 브라질의 보험침투율은 3.7%로 신흥시장(2.7%)보다는 약간 높고 선진시장(8.6%)보다는 훨씬 낮음.
 - IMF에 따르면 브라질은 2012년 경제규모가 세계에서 7번째(2조 3,960억 달 러)로 큼.



<그림 IV-2> 브라질 보험시장 성장 추이(2003~2012년)

자료: S&P(2013)

³⁹⁾ 보험침투율은 GDP 대비 수입보험료를 의미함.

- □ 원보험시장의 성장과 함께 재보험시장도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바, 2012년 출재보험료는 2008년(38억 헤알)의 1.7배인 약 65억 헤알에 이름.
 - ㅇ 원보험사의 출재율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기준 약 5%에 이름.
 - 1998~2012년 기간 동안 원보험시장은 3.7배 성장하고 재보험시장은 6배 성장함.

<표 Ⅳ-6> 브라질 원보험사의 출재율

(단위: BRL Billions.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8	2009	2010	2011	2012
원수보험료	19.4	20.3	23	25.3	42.9	48.1	55.6	64.6	73.2
출재보험료	1.0	1.1	1.2	1.7	3.8	4.3	4.5	5.5	6.5
출재율	5.3	5.7	5.2	6.6	8.9	8.9	8.0	8.5	8.8

자료: SUSEP 웹페이지 (Statistics System)

2) 시장구조

- □ 2012년 기준 현지 재보험사 12개, Admitted 재보험사 29개, 0ccasional 재보험사 61개, 총 102개사가 브라질내 재보험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음.
 - ㅇ 현지 재보험사로는 IRB Re, Munich Re, XL Re, ACE Re, Mapfre Re, Chartis Re, Austral Re, 그리고 J. Mauchelli가 있음.
 - 원보험사가 현지 재보험사에 우선적으로 출재해야하는 제도로 인해 세계 상위 재보험사들은 현지 재보험사 설립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음.
- □ 2012년 기준 IRB를 포함한 현지 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59%, 해외 재보험사(Admitted and Occasional 재보험사)의 점유율은 41%임.
 - 2011년 기준 브라질 원수보험료 총액은 미화 560억 달러(생보 52%, 손보 48%)이며 이중 약 30억 달러가 출재됨.
 - 2008년 브라질 재보험시장이 개방된 후, 해외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52%에 이름.
 - 그러나, 원보험사의 국내우선출재제도 강화, 원보험사와 현지 재보험사의 계열사 (재)출재 제한 등에 의해 해외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2010년 이후 감소하여 2012년 기준 41%임.

<표 IV-7> 브라질 재보험시장구조

(단위: BRL Millions,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수재보험료		-	3,802	4,286	4,454	5,521	5,532
	IRB	100	85	68	26	36	37
	IRB외 Local 재보험사	0	9	19	22	20	22
	계	100	93	87	48	57	59
해외재보험사(Admitted & Occasional 재보험사)		0	7	13	52	43	41

자료: SUSEP 웹페이지(2013.07.12), A.M.Best, Best's Special Report, 2013.09.02.

- □ 2008년 재보험시장 개방이후 IRB의 시장점유율이 대폭 하락하여 2010년 26%에 이르렀지만, 원보험사의 국내우선출재의무 및 출재한 도설정, 해외재보험사의 수재 제한 등에 의해 다시 증가하여 2012년 37%에 이름.
- □ IRB는 시장개방 이전과 마찬가지로 높은 재출재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원보험사의 국내우선출제제도나 해외재보험사의 수재제한과 같은 정책에 주로 기인함.
 - o 재출재율은 2008년 52.4%에 이르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 30%에 이름.
 - O 상술한 바와 같이 원보험사의 40% 국내우선출재의무로 인해 현지 재보험 사들이 1차적으로 대량의 위험을 수재할 수밖에 없고, 현지 재보험사는 재출재를 통해 위험을 분산함.
 - 재보험사는 50% 한도 내에서 해외재보험사에 재출재할 수 있음.

<표 IV-8> IRB의 재출재율

(단위: BRL Millions,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재출재 보험료	363	488	528	875	1,383	1,454	1,671	1,690	1,411	386
보유 보험료	670	661	661	799	1,516	1,947	1,597	1,536	1,587	912
재출재율	35.1	42.5	44.4	52.2	47.7	42.8	51.1	52.4	47.1	29.9

자료: FENASEG, SUSEP and IRB-Brasil Re

3) 시장성과

□ 2008년 시장개방 이후 손해율 및 합산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ROE가 약간 감소함.

<표 IV-9> IRB의 시장성과

(단위: %)

							(= 11 11)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ROE	26.8	20.1	26.1	21.7	19.7	19.7	20.7
경과손해율	37.4	49.2	46.1	76.3	61.8	56.9	63.3
합산비율	65.5	82.5	71.0	-	90.1	86.9	98.2

주: 1) ROE는 자기자본 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율임.

2) 경과손해율은 경과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의 비율임.

3)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합임.

자료: A.M.Best(2013)

나. 중국

1) 재보험시장 개요

(1) 발전과정

- □ 중국은 1988년부터 각 보험사로 하여금 수입보험료의 30%를 PICC로 의무출재하도록 함.
 - o 1979년 이후 십년 동안 PICC(People's Insurance Company of China)라는 한 보험회사만이 시장에 존재했고, PICC 내부에 법정 재보험사업을 관리하는 재보험부서가 존재했음.
 - o 1985년 중국 주의회는 보험사에 대한 규제(Provisional Regulations on Insurance Company)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각 보험사가 사업의 30%를 PICC에 출재해야 함을 규정
 - 1995년에 제정된 보험업법에서는 법정 재보험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음.
 - 2001년 말 중국은 WTO에 가입하였고, 이후 매년 5%씩 법정 재보험 비중을 줄여 2006년 중국의 법정 재보험은 완전히 사라졌음.
 - 현재 중국 재보험시장의 모든 재보험시업은 어떠한 법정 의무도 없는 상업 적인 재보험임.
- □ 1996년, 중국 최초의 전업재보험사이자 China Re의 전신인 PICC Reinsurance가 설립됨.
 - o 1996년부터 2002년까지 China Re는 중국 보험시장에서 유일한 전업재보 험사였음.
- □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2003년부터 해외재보험사들은 합작회사, 지점, 자회사의 형태로 생명재보험과 손해재보험을 공급할 수 있게 됨.
 - o 해외재보험사들이 지점, 합작회사, 자회사 등 영업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고,
 - 중국 본토에 적어도 2년 이상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 총 자산이 적어도 50억 달러 이상이고,

- CIRC(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무 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
- o 해외재보험사들은 중국에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지만, 고객 접촉과 같은 상업적인 활동이 아닌 시장조사활동만이 허가됨.
- 또한 해외재보험사들은 중국에 하나 이상의 지점을 내는 것이 허락되지 만, 각각의 지점들은 모두 최소한의 자본, 인력, 준수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경제적인 이유로 모든 해외재보험사들은 오직 하나의 지점 인가를 갖고 있음.
- □ 2005년 CIRC는 재보험업 경영에 대한 규제(Regulation on Administration of Reinsurance Business)를 제정하여 해외재보험 사에 대한 지급여력규제와 국내우선출재의무를 명시함.
 - O 나아가, 2007년 CIRC는 원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재보험사의 요건, 신용등급과 담보력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보험사업의 건전성에 대한 공지(Notification on the Security of Reinsurance Business)를 발표함.
- □ 그러나, CIRC는 중국의 WTO 협약에 따라 역외 재보험사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2010년 6월 재보험업 진입 규제 (Administrative Regulation on Reinsurance Business)를 개정함.⁴⁰⁾
 - o 의무재보험을 폐지하고 공시요건을 강화하며 CIRC의 감독권한을 확대함.
 - 특히, 원보험사가 보험리스크의 50%를 적어도 2개 이상의 국내 재보험사 에 우선 출재해야 하는 기존 규제가 폐지됨.

(2) 시장규모41)

□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원보험시장의 괄목할만한 성장세에 비하여 재보험시장의 성장은 그에 미치지 못하나 최근 중국은 손해보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재보험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⁴⁰⁾ Norton Rose Fulbright(2010.7)

⁴¹⁾ A.M.Best(2012.9.24), "Best Special Report: Asia-Pacific Reinsurance-Market Review", pp.2-4

- o 2007년 이전 10년간 중국의 GDP는 연평균 11.4%, 중국 보험시장은 21.9% 성장한 반편, 재보험시장은 연평균 9.2% 성장함.⁴²⁾
- 원보험과 재보험의 상관관계, 즉 재보험시장이 해당 지역의 원수보험 산업 성장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지역적 특성을 미루어볼 때 중장기적으로 중국 재보험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짐작할 수 있음.
- □ 중국 보험사들은 2011년 수입보험료의 7.8%를 출재하는 등 대체로 적극적인 보유전략을 가지고 있음.

<표 IV-10> 중국 원보험사의 출재율

(단위: 백만 위안,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출재보험료	49,708	57,988	77,067	64,404	111,937
출재율	7.1	6.0	6.9	4.4	7.8

자료: CIRC; AXCO 재인용

2) 시장구조

- □ 2013년 현재 중국은 국영 재보험사인 China Re를 제외하고 총 7개의 외국 재보험 지점을 가지고 있음.
 - Munich Re와 Swiss Re가 2003년, Gen Re 2004년, Lloyd's와 SCOR가 2007년, TPRe가 2009년, Hannover Re가 2010년에 중국시장에 지점의 형태로 진입함.
 - o 한편, 세계적인 재보험 브로커가 중국에 사무소를 열고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 중국 손해재보험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국영 재보험 사인 China Re가 38%로 가장 높고, 그 뒤를 Swiss Re(29%)와 Munich Re(23%)가 따르고 있음.

⁴²⁾ ktb 투자증권(2011.8.22), 「기업분석: 코리안리」

<표 Ⅳ-11> 2011 중국 손해재보험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재보험료	시장점유율		
China P&C Re	3,341	37.7		
Swiss Re	2,574	29.0		
Munich Re	2,030	22.9		
Taiping Re	299	3.4		
Hannover Re	278	3.1		
SCOR	274	3.1		
Lloyd's China	65	0.7		
General Re	2	0.0		
	·	·		

자료: Lloyd's(2013.1) Market Presentation, China

3) 시장성과

- □ 2003년 시장개방 이후 China Re의 시장점유율은 대폭 낮아졌지만 보 유보험료는 연평균 13%씩 빠른 속도로 증가함.
 - O China Re의 보유보험료는 2011년 520억 위안화로 2003년(191억 위안)에 비해 2.7배 더 높음.
 - o 중국의 경우 경제성장과 함께 원보험과 재보험시장이 성장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재보험사들이 China Re의 시장을 잠식하지 않고 안정 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감.
- □ China Re는 시장개방 여부에 상관없이 95% 이상(즉, 재출재율 5% 미만)의 높은 보유율을 보이고 있음.
- □ China Re의 ROE는 2003년 시장개방을 전후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01년과 2002년 ROE는 각각 39%, 27%인데 반해 2003년 -1.4%로 감소하고 이후 15% 미만을 유지함.

<표 IV-12> China Re의 사업실적

(단위: 백만 위안화, %)

						· - · ·	. –	_ ,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9	2010	2011
보유보험료	16,170	18,947	19,112	19,742	20,735	34,577	36,463	52,004
재출재율	0.9	1.2	1.9	1.2	3.8	2.8	4.4	4.9
손해율	60.7	62.3	69.4	63.6	66.2	67.7	63.9	64.9
사업비율	35.3	36.2	36.9	36.9	34.9	29.8	34.4	33.5
합산비율	96.0	98.5	106.3	100.5	101.1	97.5	98.2	98.4
ROE	38.9	26.7	-1.4	2.5	-0.7	13.8	7.8	4.9

주: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 자료: Bureau Van Dijk, Isis Database

다. 대만43)

- □ 대만의 경우도 재무부가 1968년 설립한 재보험사인 Central Re의 시 장점유율이 시장개방 후 경쟁증가로 인해 감소함.
 - o 센트럴리의 시장점유율은 2006년 26%에서 2010년 16%로 감소함.
 - 대만은 2001년 11월 재보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Central Re에 대한 의무출재규정이 폐지됨.
- □ 대만에서는 보험업법 Article 137에 의거하여 FSC(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의 허가 없이는 재보험사(지점, 사무소 포함)를 설립할 수 없음.
 - o 재보험사 설립요건은 원수손보사와 다르지 않으며, 외국계 회사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재보험사 설립에 요구되는 최소 납입자본금은 20억 대만 달러(6,700만 달러)로 자본금의 15%는 대만 국채를 매입해야만 함.
- □ 해외재보험사가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납입자본금 10억 대만 달러(3,034만 달러)가 요구되며 법인 설립과 동일하게 자본금의 15%는 대만 국채를 매입하여야 함.

⁴³⁾ 류성경·성주호(2011) 인용

- 모기업이 최소 5년 이상의 보험사업실적을 보유해야 하고 국제 신용평가 사로부터 A- 이상의 신용등급을 획득해야만 함.
- o 또한 대만에서 1년 이상의 사무소 운영 경력이 필요
- 아무소 개설에는 이를 규정하는 특별한 규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사무소 개설만으로는 재보험 영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사무소는 마케팅, 고객 관리 등의 활동만 허용됨.
- □ 대만에서는 국내 보험사가 해외재보험사로 출재하는 것에 대한 규제 는 없음.
 - o FSC가 보험사의 재보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출재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규제하는 제도도 없음.
 - o 원보험사의 재보험 출재율에 대한 상한선과 하한선은 존재하지 않으나 원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10%를 최대 순보유로 운영하고 있음.

라. 미국

- 1) 재보험 관련 규제44)
- □ 미국의 일반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는 회계제도를 이용한 출재사와 수재사의 동시규제로 요약될 수 있으며 미국 대부분의 주는 재보험 크레디트⁴⁵⁾의 허용조건, 즉 수재사의 지급책임 이행능력에 관한 요 건과 절차사항을 입법화해서 시행하고 있음.
 - O 미국보험감독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 이하 NAIC라 함)의 재보험인정모델법·규제(Credit for Reinsurance Model Act-Regulation, 이하 각각 CRMA와 CRMR이라 함)는 미국 대부분 주에서 원안대로 또는 원안에 수정을 가한 채 입법화됨.
- □ NAIC는 2011년 11월 CRMA와 CRMR 개정을 통해 미국내 미등록 재보험 회사에 대한 담보요건을 합리화하고 재보험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 한 규제를 강화함.

⁴⁴⁾ 송윤아(2012.12)를 인용함.

⁴⁵⁾ 크레디트(credit)란 출재분을 자산으로 인정하거나 부채에서 공제함으로써 출재사의 잉여금 압박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함.

- CRMA와 CRMR은 1997년에 제정된 이래 그간 재보험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면 재보험금 회수를 확실히 할 수 있겠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수차례 개정되었음.
- □ 상기 규제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출재사가 미국 내 미등록 재보험회사(해외재보험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재보험 크 레디트를 받기 위해서는 동 재보험회사로 하여금 출재사 소재 주정 부로부터 영업 인가를 받고 신용등급을 판정받은 후 신용등급에 근 거하여 수재위험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설정토록 하여 야 함.46)
 - 미등록 재보험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 야 함: ① 적격국(qualified jurisdiction) 소재 재보험회사, ② 최소 자본 및 잉여금 2억 5천만 달러 유지, ③ 두 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서 등급 유지, ④ 재보험회사에 취해진 규제조치를 10일 이내에 통보, ⑤ 감독규제목적의 재무정보 제출 동의(연간 분쟁중이거나 연체 중인 재 보험금 리스트, 연차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제출)
 - '적격국' 평가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재보험감독시스템의 실효성 과 적절성, 미국 재보험회사에 대한 차별 여부, 적절하고 신속한 미국 사 법권 집행 가능 여부, 정보공유 및 협조 여부
 - 출재사 소재 주정부는 인가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을 다음에 근거하여 결정함: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영업관행, 신속지급에 대한 평판, 규제조치 이력,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재보험회사 소재국 청산 관련 법의 출재사 권리 보호 정도 등
 - 동일 재보험회사라 할지라도 신용등급 및 담보요건은 주마다 상이할 수 있음.
 - o 출재사 소재주 감독당국은 재보험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담보요건을 달리 적용함.
 - 1등급은 수재위험의 0%, 2등급은 수재위험의 10%, 3등급 수재위험의 20%, 4

⁴⁶⁾ CRMR Section 8. 개정 전에는 해외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수재위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담보를 설정하여야만 동 거래를 재보험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담보요건이 해외재보험회사의 미국시장 진입을 어렵게하고 자원배분상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참조 바람: 송윤아(2012.11), "주요국 재보험감독기준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주간이슈, 보험연구원.

- 등급 수재위험의 50%, 5등급 수재위험의 75%, 취약등급은 수재위험의 100% o 출재사 소재 주정부는 재보험금 미지급 규모와 기간에 따라 재보험회사 의 신용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음.47)
- 15% 이상의 고객사에 90일 이상 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객사당 미수 금이 1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90일 이상 지급 지연된 재보험금이 5천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 주정부는 해당 재보험회사의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48)
- 이로써 출재사는 재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재보험회사에 출재할 유인을 가지고, 감독당국은 문제의 재보험회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o 2012년 현재 뉴욕, 플로리다, 뉴저지, 인디애나가 위험기준 담보요건을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주에서 채택을 논의 중임.
- □ 둘째, 보험회사는 특정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존도가 일정 수 준 이상인 경우 주정부에 통보해야 함.⁴⁹⁾
 - o 전년도에 출재사의 총 수입보험료의 20% 이상을 특정 재보험회사 또는 재보험그룹에 출재했거나 또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지 30일 이내에 주 정부에 통보해야 함.
 - 또한 특정 재보험회사 또는 재보험그룹으로부터 재보험환급이 전년도 계약자잉여금의 50%를 초과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지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함.
- □ 셋째, 출재사가 재무제표 상 재보험 크레디트를 받으려면 지급불능 약관(insolvency clause)과 중개자약관(intermediary clause)을 재 보험특약서상에 포함해야 함.
 - o 지급불능약관은 출재사가 지급불능에 빠지는 경우라도 재보험회사는 청 산인 등에게 재보험지급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임.50)

⁴⁷⁾ CRMR Section 8 B(5).

⁴⁸⁾ 분쟁건인 경우 제외함.

⁴⁹⁾ CRMA Section 2 J(Concentration Risk).

⁵⁰⁾ 지급불능약관의 제정배경은 다음과 같음. 1932년 Southern 보험회사가 파산하자 뉴욕주 보험감독청장인 Lewis H. Pink는 동사의 청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재보험회사에게 재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그러나 재보험회사는 재보험특약서상에 원보험자의 실제손해가 없으면 재보험회사의 보상이 없다는 실손보상원칙을 들어 지급을 거절함. 즉 출재사의 원보험금 지급이 없으면 수재사의

- 1990년대에 보험회사의 파산이 늘어나자, 1995년과 2001년 사이에 많은 주에서 지급불능약관 조항을 보험법에 신설하거나 이를 강화함.
- 기존 CRMR에서는 지급불능약관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았지만 개정 CRMR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⁵¹⁾
- 중개자약관은 재보험계약에 따라 출재사 또는 재보험회사가 보험중개사에 보험료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동 보험중개사로의 지급에 대해 재보험회사가 모든 신용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임.52)
- 기존 CRMA에서 지급불능약관이 강제사항이었던 반면 중개자약관은 권유사 항이었으며 기존 CRMR에서는 중개자약관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음.53)

2) 시장구조

- □ 미국 재보험시장에서는 소재국에 상관없이 많은 재보험사들이 활발 히 경쟁하고 있음.
 - 미국소재 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1997년 62%에서 2012년 41%로 감소한 반면 해외소재 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 해외소재 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1997년 38%에서 2012년 59%로 증가하는 추세임.
 - 원보험사가 미국소재 재보험사에 출재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볼 때, 미국 소재 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됨.

재보험금 지급도 없다는 논리인데 문제는 출재사가 지급불능에 빠져 원보험금 지급이 없는 경우 재보험금 회수가 불가하게 되고 재보험금 회수가 불가하니 원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됨. 결국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미 대 법원은 원고패소로 판결함. 결국 뉴욕주는 Fidelity & Deposit Co. of Md. v. Pink, 302 U.S. 224 사건을 계기로 지급불능약관을 재보험 크레디트 부여의 필요조건으로 하는 조항을 보험법에 신설함(N.Y. Ins. Law 1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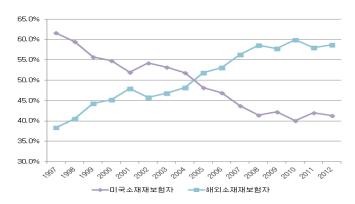
⁵¹⁾ CRMR Section14 A: ... Includes a proper insolvency clause, which stipulates that reinsurance is payable directly to the liquidator or successor without diminution regardless of the status of the ceding company, pursuant to Section [insert appropriate number] of the Insurance Code.

⁵²⁾ CRMR Section 14 C: includes a proper reinsurance intermediary clause, if applicable, which stipulates that the credit risk for the intermediary is carried by the assuming insurer.

⁵³⁾ CRMA Section 5.

- 스위스리가 13.5%로 가장 높고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3%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됨.
- RAA(미국 재보험자 협회)에 따르면, 미국 (재)보험사는 2012년 기준 110 개국에 소재한 3,252개 재보험사에 (재)출재함.

<그림 Ⅳ-3> 미국 재보험시장 점유율(1997~2012년)



주: RAA, Offshorre Reinsruance in the US Market 2012 Data.

<표 IV-13> 미국소재 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2012년)

(단위: 천 달러. %)

		(211. 2 2-1, 70)	
구분	수재보험료	시장점유율	
Swiss Reinsurance America Corp.	4,327,392	13.5	
Everest Reinsurance Co.	3,351,088	10.4	
Transatlantic/Putnam Reinsurance	3,280,711	10.2	
Munich Re America	3,077,222	9.6	
XL Reinsurance America Inc.	3,046,937	9.5	
Odyssey Re	1,871,447	5.8	
Berkley Insurance Co.	1,772,982	5.5	
Partner Re U.S.	1,219,374	3.8	
General Reinsurance Corp.	1,084,298	3.4	
QBE North America	1,032,975	3.2	
American Agricultural Ins Co.	904,698	2.8	
AXIS Reinsurance Co.	866,360	2.7	

주: 1) 수재보험료는 수입보험료에서 원수보험료를 제외함.

2) 미국소재 보험회사가 해외소재 재보험사에 직접 출재한 것을 제외함.

자료: RAA(2013)

- □ 미국소재 재보험사의 재출재율은 2012년 기준 약 33%로 이중 60% 이 상은 해외소재 계열재보험사에 재출재한 것임.
- □ 1981~2012년 기간 동안 미국소재 재보험사의 합산비율은 92~139%를 유지하고 있음.

<표 IV-14> 미국소재 재보험사의 성과

(단위: %)

구분	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ROE	보유율	투자수익률
2006	66.5	27.7	94.2	13.8	64.5	7.2
2007	64.0	29.5	93.5	11.0	62.9	4.4
2008	70.3	30.1	100.4	3.9	65.0	3.8
2009	62.9	29.4	92.3	7.7	67.0	4.9
2010	63.6	30.9	94.5	10.1	65.9	3.8
2011	76.8	30.3	107.1	6.5	66.2	4.3
2012	65.9	30.3	96.2	6.9	66.6	2.3

주: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마. 소결

- □ 국영재보험사의 독점체제를 장기간 유지하다 재보험시장을 해외재보 험사 등에 개방하는 경우 국영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로 하락하는 등 경쟁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관찰됨.
 - 브라질 IRB는 시장개방 후 2년만에 점유율이 26%(2010년)로 하락하였고 중국의 China Re는 손해재보험시장에서 2010년 기준 38%의 점유율을 보임.
- □ 역설적이게도, 브라질의 원보험사 또는 재보험사에 적용되는 각종 출재 및 재출재 제한은 해외재보험사들이 브라질에 법인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함.
 - O 원보험사는 수입보험료의 50%를 초과하여 출재할 수 없고 출재보험료의 40%를 현지 재보험사에 우선 출재해야 하며, 출재보험료의 10%를 초과하여 0ccasional 재보험사에 출재할 수 없음.

- 더욱이, 현지 재보험시는 수재보험료의 50%를 초과하여 재출재할 수 없고 계열재보험시에 20% 이상을 재출재할 수 없음.
- 따라서, 해외재보험사들이 우리나라처럼 특정 재보험사로부터 재출재받는 사업모형을 지향하는 경우 일정수준이상의 매출 및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음.
- 즉, 해외재보험사가 브라질 재보험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매출 및 수 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브라질에 합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함.
- □ 중국 재보험사의 낮은 재출재율은 재보험시장 개방 이후에도 유지되어 해외재보험사들이 국영재보험사로부터 재출재받는 사업모형을 추구하는 대신 중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경쟁을 촉진함.
 - ㅇ 중국 원보험사와 국영재보험사의 (재)출재율은 10% 미만임.
 - o 경제성장과 함께 원보험과 재보험 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지만, 커 진 시장을 China Re가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해외재보험사에 재출재하는 구조가 형성되지 않음.
 - o 커진 재보험시장을 China Re와 해외재보험사들이 각사의 담보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경쟁적으로 수재하는 구조가 형성됨.
- □ 중국, 브라질, 우리나라는 국영재보험사의 독점체제를 장기간 유지 하다 비슷한 시기에 시장을 개방하였으나, 현재 대조적인 시장구조 를 가지고 있음.
 - 브라질과 중국은 경제규모가 크고 시장개방 당시 보험시장의 성장이 진행 중이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보험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음.
 - 시장개방 당시 우리나라는 모든 차별적 규제를 폐지하고 재보험거래에 대한 구속력 있는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반면 브라질과 중국은 국내우선 출재제도 등 차별적 규제를 점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재보험거래 에 대한 각종 규제(출재 및 재출재 규제)를 제 · 개정함.

3.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적용사례

□ 그동안 재보험의 국제성과 복잡성 때문에 각국은 재보험거래 당사자 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규제하였으나. 최근 주요 보험 선진국에서는 계약자·출재사의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o 미국에서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연방규제를 재보험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McCaran-Ferguson Act를 개정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기도 함.54)
- 1945년 McCaran-Ferguson Act는 Sherman Anti-trust Act나 Federal Trade Commission Act와 같은 연방규제를 재보험산업에 적용하지 않고 재보험산 업의 반경쟁적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주법으로 규제하도록 함.
- o 마찬가지로, EU 집행위는 2010년 재보험산업에 대한 EU 경쟁법 적용 일 괄제외규정(Block Exemption Regulation)을 개정하여 경쟁법 적용제외 대상행위를 기존의 4개 유형에서 2개 유형으로 감축함.
- 계속 존치하는 2개 유형에 대해서도 적용제외 기준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일부 삭제함.⁵⁵⁾
- □ 그러나 특정 재보험사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이고 그 지위를 남용한 것에 대해 해당국이 경쟁법을 적용한 사례는 발견하기 어려움.
 - o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국영독점재보험사로 시작한 나라의 경우 대부분 시장개방 또는 민영화 이후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는 등 경쟁시장체제로 전환되었거나,
 - 오히려 정부가 건전성 규제 또는 자국의 재보험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적 진입장벽이나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 □ 본 절에서는 재보험시장 참여자의 반경쟁적 영업행위에 대한 미국과 EU의 경쟁법 적용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함.
- 가. 미국: 시장지배력을 가진 보험중개사와 재보험사간 담합56)
- □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는 재보험중개사의 수탁자 의무 위반과 재 보험거래 당사자의 반경쟁적 영업행위에 대한 각 주정부의 제소가 이어졌음.

⁵⁴⁾ Griffin, M. T., and Levin, A. J.(2007)

⁵⁵⁾ Eithne McCarthy and Laura Stefanescu(2010)

⁵⁶⁾ 송윤아(2012.9)

- o 재보험거래에서는 계약자, 원보험사, 재보험사, 재재보험사, 보험중개사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개입하기 때문에 보험중개사의 특정행위가 고객의 이해와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57)
- o 보험 중개 시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래 자체를 금지하기 보다는 정보공개와 고객의 동의하에 이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임.58)
- o 적절한 정보공개와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이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수탁자 의무(fiduciary duty)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 되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됨.
- □ 특히, 2007년 코네티컷 주정부가 보험중개사인 Guy Carpenter(이하 GC라 함)를 수탁자 의무 위반과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은 기존 거래관행에 많은 변화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임.59)
 - o GC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보험중개사이자 Marsh의 자회사이며, 미국 내에서는 중소형 원보험사를 위한 재보험 중개 부문에서 독보적인 위치 를 점하고 있음.
- □ 구체적으로, 코네티컷 주정부는 보험중개사인 GC가 수재사와 특수한 관계(쌍방대리와 공동소유)에 있고 이로 인해 고객(출재사)의 이해 를 침해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객에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수탁자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함.
 - o 시실상 CC는 출재사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수재사의 언더라이터로서 수재 사를 대신하여 재보험 거래조건 및 가격을 결정하였음.

⁵⁷⁾ 다음의 경우에 보험중개사와 출재사(고객)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음: ① 보험 중개 시 출재사를 대표하는 보험중개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이익수수료(contingent commission)를 수수하거나 중개한 계약에서 창출된 이익을 재보험사와 공유하거나 나누어 받는 행위 시; ② 재보험중개를 하는 것이 재보험중개사와 관련이 있는 재보험사와의 재보험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일 때; ③ 재보험중개를 하는 것이 재보험중개사와 관련이 있는 재재보험중개사와 의 재재보험중개를 하는 것이 재보험중개사와 관련이 있는 재재보험중개사와 의 재재보험계약 중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일 때; ④ 재보험중개를 하는 것이 재보험중개사와 관련이 있는 특정 재재보험사와의 재재보험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일 때; ⑤ 동일위험에 대해 원보험과 재보험을 일괄 중개하는 경우. 상세는 http://www.cbp.com.au/Portals/0/Newsletters/060310_AIDA%20Doc_Conflicts%20of%20Interest.pdf를 참조바람.

⁵⁸⁾ Wang, Wallace Hsin-Chun(2003)

⁵⁹⁾ State of Connecticut v. Guy Carpenter and Company, LLC and Excess Reinsurance Company, No. HHD-X03-CV-07-4033778-S.

- o 또한 GC는 수재사 중 하나인 Excess Re의 공동소유자이며, 총괄매니저 (general manager)로서 회사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가로 Excess Re의 수입보험료의 6.75%를 수수료로 받음.
- 동일위험에 대해 보험중개사가 출재사와 수재사 쌍방을 대리하거나 보험 중개사와 재보험사간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보험중개사의 특정 행위 및 의사결정은 출재사의 이익에 반할 수 있음.
- o 따라서, 이 경우 보험중개사는 쌍방대리 사실 또는 재보험사와의 특수 관계에 대해 출재사에 사전 공개하고 출재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 o 그러나, GC는 쌍방대리와 재보험 거래조건 및 가격을 직접 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Excess Re라는 재보험사의 공동소유자임을 고객인 출재사에 알리지 않음.

<그림 IV-4> 재보험거래의 당사자



- □ 또한, 코네티컷 주 검찰은 facility내 재보험사들이 GC의 중개물건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을 가지는 대신 서로 경쟁하지 않고 GC가 정한 재보험 거래조건과 가격을 따르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들이 50년이상 출재사와 원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독점적 이윤을 누린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함.
 - o CC는 facility라 불리는 다수의 재보험사로 구성된 그룹을 만들어 높은 수수료를 대가로 해당 facility내 재보험사들에게 재보험을 중개함.
 - o facility내 재보험사들은 거래조건 및 요율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GC에 양도하는 대신 GC의 중개물건에 대해서는 배타적 접근권을 가지고 있었음.
 - GC는 더 낮은 요율을 받기 위해 공개입찰경쟁을 하지 않고 GC가 결정한 거 래조건 및 요율로 facility내 재보험사에 출재함.
 - 코네티컷 주정부의 수사 따르면 GC와 facility내 재보험시들의 반경쟁적 영업행위로 인해 출재사의 비용이 10~40%까지 인상되었음.
 - o GC는 facility에 속하지 않는 재보험사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GC의 중

개물건에 대한 가격경쟁의 기회자체를 차단하였을 뿐 아니라,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GC의 가격이 시장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출재사들도 자신들이 부당한 가격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

- 나아가, 보험중개사인 CC는 시장지배력과 재보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원보험 거래조건 및 요율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함.
- □ 2011년 코네티컷 주정부는 GC와 Excess Re에 425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2015년 말까지 다음과 같은 영업상의 개선사 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함.⁶⁰⁾
 - 첫째, 재보험 중개 시 CC는 관련 재보험사와의 관계(소유, 대리 등)를 출재사에 밝혀야 함.
 - o 둘째, GC가 공동 소유한 facility에 재보험중개를 할 경우 GC는 해당 facility로부터 받기로 예정된 중개수수료와 기타 대가를 문서로 공개하고, 계약체결에 앞서 출재사의 서면동의를 득하여야 함.
 - o 셋째, GC는 facility의 구조를 설명한 문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함.
 - 넷째, GC는 특정 재보험사를 선택·추천한 이유를 해당 고객에게 공개해야 함.
 - o 다섯째, GC는 facility내 재보험사로부터 재보험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 객을 위해 facility와 경쟁하는 3개 이상의 재보험사들로부터 입찰서 또 는 견적서를 득하여야 함.
 - o 여섯째, GC는 매해 13개 출재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들을 위해 facility와 경쟁하는 3개 이상의 다른 재보험사들로부터 견적을 받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 o 마지막으로, 상기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시장의 거래조건 및 요율이 facility보다 더 낫다면, GC는 facility에서 재보험을 구입하는 고객에 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도록 고려해야 함.

⁶⁰⁾ 상세는 http://www.ct.gov/ag/lib/ag/press_releases/2011/013111guycarpent er.pdf 참조바람.

나. EU: 공동재보험에서 재보험사간 담합⁶¹⁾

- □ EU집행위는 2005년 6월부터 공동재보험 계약체결과정에서 관찰된 공 동행위가 EU조약 101조 1항의 금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음.
 - o 2002년 12월 제정된 Regulation 1/2003의 17조에 따라 EU집행위는 회원 국 간의 교역 행태, 가격의 경직성,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분야의 경쟁이 저해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정 산업부분 또는 여러 산업부분에 걸친 합의에 대해 시장분석(sector inquiry)을 실시할 수 있음.
 - o 이에 2005년 6월 EU집행위는 기업보험 및 재보험에 대한 시장분석을 실 시하기로 결정함.
 - 진입조건, 채널관련 수직적 합의, 공동(재)보험 관련 공동행위, 표준약관 조항에 대한 합의, 리스크 관련 데이터 공유 등을 조사하기로 함.
 - o 2007년 1월과 9월에 각각 시장분석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EU집행위의 시장분석에서 제기된 공동(재)보험 관련 반경쟁적 행위 실태조사 보고서가 2013년 발표됨.⁶²⁾
- □ 공동재보험 절차는 통상 간사사를 결정하는 1단계와 후발참여사를 결정하는 2단계로 구분되며, 2단계 후발참여사 결정방법에는 청약 방식과 비청약방식이 있음.⁶³⁾
 - 먼저, 계약자와 보험중개사가 위험분산 측면에서 1개 재보험사에 전체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간사사가 전체 위험을 100%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추가 담보력 확보를 위해 공동보험을 결정함.
 - 보험중개사가 계약자와 협의하에 계약초안을 작성한 후 간사사에 적합한 재보험사들에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입찰을 통해 보험료 · 보험조건 · 인수지 분율 등을 포함한 견적서를 받고 이를 토대로 간사사 및 조건을 결정함.
 - ㅇ 2단계 청약방식: 보험중개사는 추가 담보력 확보를 위해 간사사가 합의

⁶¹⁾ 상세한 내용은 송윤아(2013.10)를 참조바람.

⁶²⁾ European Commission(http://ec.europa.eu/competition/sectors/financial_services/inquiries/business.html).

⁶³⁾ 공동재보험 절차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별, 보험종목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보험중개사가 없는 계약에서는 간사사가 후발참여사에 접촉, 요율 및 조건을 협상하기도 함.

- 한 보험료 및 조건을 2단계에 참여하는 보험회사에 제시하고 후발참여사 (follower)들과는 인수지분율에 대해서만 협상함.
- 유럽보험중개사협회(BIPAR)에 따르면, 청약방식일지라도 후발참여사는 간 사사와 다른 요율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이를 계약자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음.
- o 2단계 비청약방식: 보험중개사는 2단계 후발참여자들에 간사사가 합의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요율과 인수지분율에 대해 개별적으로 협상하거나 입찰에 붙임.
- o 2013년 EU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약방식 공동재보험이 전체 공동재보험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널리 이용됨.
- □ EU집행위가 청약방식 공동재보험에 대해서 공정경쟁 측면에서 제기 한 이슈는 다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 ㅇ 첫째, 공동재보험 참여사간 단일 요율 및 조건
 - ㅇ 둘째, 최혜대우조항(Best Term and Condition Clause) 적용
 - ㅇ 셋째, 간사사가 합의한 요율 및 조건에 대한 정보를 후발참여사들에게 공개
- □ 먼저, EU는 후발참여사 선택 시 간사사 합의 요율 및 조건을 제시하고 입찰이 아닌 청약을 이용하는 메커니즘이 간사사 결정을 위한 입찰단계에서 재보험사끼리 담합할 유인을 제공하므로 경쟁법 위반의여지가 있다고 주장함.
 - EU집행위에 따르면 보험산업이 단일 요율 및 조건 관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동 공동행위로 인해 계약자가 누리는 이익(즉, 효율성)이 그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 O EU가 공동재보험의 단일 요율 및 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유럽보 험중개사협회는 2008년 4월 후발참여사가 개별 보험료를 협상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공동보험중개 5원칙을 발표하였음.
 - o 한편, EU는 2013년 조사보고서를 통해 공동보험참여시간 보험료 일치를 위한 어떠한 반경쟁적 합의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일 요 율 및 조건이 사용된 것을 확인함.
- □ 둘째, 최혜대우조항(Best Term and Condition Clause)이 경쟁법 위 반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함.

- o 최혜대우조항(Best Term and Condition Clause)은 후발참여사가 잔여위 험을 인수하기 위해 간사사 등에 비해 더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고 계약 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모든 참여보험회사의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하는 조항임.⁶⁴⁾
- 유럽보험중개사협회는 공동재보험중개 5원칙에서 간사사 등이 최혜대우 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것을 권고함.
- o 2013년 EU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EU 재보험시장에서 최혜대우 요구 및 수용이 줄었지만, 여전히 재보험사가 최혜대우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 □ 셋째, EU는 공동재보험의 요율 및 조건 투명성이 참여 보험회사 간 담합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함.
 - 보험중개시는 청약단계에서 간사사가 합의한 요율 및 조건을 요율산출 및 위험평가 능력이 간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후발참여사들에게 공개함.
 - 간사사와 후발참여사 간 시전적인 담합협정이 있는 상황에서 요율 및 조건의 투명성이 보장되면 담합협정 준수여부가 사후적으로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담합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낮아져 담합성공가능성이 높아짐.
 - 2007년 EU집행위는 실제 담합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론 적으로는 보험료 담합으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언급함.
 - o 반면, 보험산업은 요율 및 조건에 대한 정보가 효율성 측면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주장함.

⁶⁴⁾ 대개 최혜대우를 의미하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사용됨: same terms as most favored reinsurers, most favorable terms and conditions to apply, warranted no better terms carried.

Ⅴ. 경쟁상황 평가

- □ 본장에서는 재보험시장의 유효경쟁 존재 여부를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⁶⁵⁾
 - ㅇ 첫째, 재보험시장에 시장지배적지위로 추정되는 사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둘째, 경쟁유인을 저하시키는 또는 공동행위 유인을 유발하는 사업관행 이 존재하는지 여부
 - ㅇ 셋째. 신규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사실상의 장벽이 존재하는지 여부
 - ㅇ 넷째, 요율이 충분히 경쟁적인지 여부
- □ 또한, 재보험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것의 의 미를 제시함으로써, 신규진입 독려 및 경쟁촉진의 필요성을 역설함.

1. 시장지배적지위 추정 사업자 존재

가. 관련 법규정

- □ 독점규제법 제2조(정의) 제7호에 의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임.
 - 심사기준 III에 의하면 시장지배적지위 인정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또는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 한편, 독점규제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의하면 일정한

⁶⁵⁾ 일반적으로 유효경쟁 존재 판단 기준 및 조건은 대개 다음과 같음: ① 상당한 수의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있고, ② 그 어느 편이나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③ 그룹간의 공모가 없고, ④ 새로운 기업에 의한 시장참여의 가능성이 있고, ⑤ 기술개발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가격인하의 압력이 존재해야 함.

거래분야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3 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음.

□ 코리안리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인정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바, 본 보고서에서는 코리안리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함.

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의 추정

- □ 관련시장을 국내시장으로 상정할 경우 2005~2011년 기간 동안 코리 안리의 손생재보험시장 점유율은 41~61%임.
 - O RBC제도 도입이후 생명재보험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면서 전체 재보험시장 점유율도 증가함.
 - ㅇ 동기간 코리안리의 손해재보험시장 점유율은 61~65%임.
 - 원보험사의 재보험의존도가 높은 일반손보 점유율은 56~62%에 이름.
 -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점유율은 각각 56~75%, 71~87%임.
 - o 코리안리의 생명재보험시장 점유율은 14~43%임.
 - 원수생보시는 2009년부터 RBC제도의 부분 시행으로 인해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해외출재가 급감한 데 반면 국내출재는 소폭 증가함.
- □ 관련 상품시장을 손해재보험시장과 생명재보험시장으로 구분하고 관련 지리적 시장을 국내시장으로 상정할 경우, 코리안리는 독점규제 법 제4조에 의거하여 손해재보험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
 - o 손해재보험시장에서 코리안리의 점유율은 관찰기간 동안(2005~2011년) 60% 이상을 유지함.
 - o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를 살펴보면, 해외소재 재보험사들이 동기간 25~35%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국내 손해재보험시장에 대해서는 코리안 리보다 월등한 점유율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음.
 - 초기 상당한 자본금이 요구되는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코리안리의 높은 재출재율은 타 재보험사의 진입유인을 저하시킴.

- 거래상대방인 원보험사의 지배력(자본 및 보험료규모)이 코리안리보다 우월하지 않음.
- 특히 중소형 원보험사의 경우, 인수능력이 충분하지 않고 효율적인 재보험 업무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요율, 출재결정 등에 서 코리안리에 대한 의존도가 큼.
- □ 관련 상품시장을 손해재보험시장과 생명재보험시장으로 구분하고 관련 지리적 시장을 국내시장으로 상정할 경우, 생명재보험시장에서는 2011년 코리안리의 점유율이 43%이지만, 이는 2009년 RBC제도 도입으로 인해 원수생보사의 출재보험료가 급감한 상황에서 도출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상황의 점유율에 근거하여 경쟁도를 판단하기는 곤란함.
 - o 2009년 RBC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생명재보험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이 존재하였음을 점유율이나 수익성지표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음.
 - 2009년 RBC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코리안리의 점유율이 20% 정도에 불과하였음.
 - 또한 생명재보험시장에 집중한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 RGA나 하노버리의 경우 ROE비율이 타 지점에 비해 현저히 낮음.

2. 재출재율 47%의 의미: 경쟁유인 약화와 비효율 증가

- □ 손해재보험시장에서 코리안리의 65% 점유율은 사실상 47%의 재출재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음.
 - 코리안리는 원수손보사 출재보험료의 65%를 인수하고 이중 47%를 해외재 보험사 국내지점, 원보험사, 해외소재 재보험사 등에 재출재함.
 - 특히, 코리안리가 국내 원보험사로부터 수재한 보험료의 45%에 해당하는 일반손보의 경우 재출재율이 80%에 이름.
 - o 재출재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코리안리의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현 재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함.
- □ 세계 주요재보험사들의 재출재율이 10% 미만이고 이들이 경쟁사와

언더라이팅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최소한의 재출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리안리의 재출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세계재보험시장의 보편적인 관행이라 보기 어려움.

- IAIS(2012)에 따르면, 세계 재보험사의 손해보험 재출재율은 약 14%에 불과함.
- 더욱이, 2000년대 초중반 대형 자연재해가 빈발하여 재보험 수요가 급증하자 세계 주요재보험시는 긴급자본제공처로서 사이드카를 적극 활용한바 있는데, 경쟁자와 언더라이팅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재보험보다는 사이드카의 활용을 선호함.
- 사이드카는 프라이빗 에퀴티, 헤지펀드, 보험회사, 재보험사 등이 자본을 제공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재재보험과 유사하며, 재보험사는 사이드카와 비례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위험보유에 따른 출재·이익수수료를 수령함.
- 브라질의 국영재보험사인 IRB의 경우 시장개방 이후에도 50%에 가까운 재출재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국내우선출재정책'에 기인함.

<표 V-1> 세계 주요재보험사의 재출재율(2011년)

(단위: 백만 달러. %)

			(전체· 취단 크디, 20)
수재보험료 기준 순위	재보험사	수재보험료 (Gross Premium Written)	재출재율
1	Munich Reinsurance Company	33,719	4.3
2	Swiss Reinsurance Company Limited	28,664	20.2
3	Hannover Rueckversicherung AG	15,664	11.1
4	Berkshire Hathaway Inc.	15,000	4.1(2010년)
5	Lloyd's	13,621	26.5
6	SCOR S.E.	9,845	9.7
7	Reinsurance Group of America Inc.	7,704	4.0(2012년)
8	China Reinsurance (Group) Corporation	6,179	4.5
9	PartnerRe Ltd.	4,621	3.2
10	코리안리	4,551	33.1

주: 1) 재출재율 = (1-보유보험료/수재보험료)*100

2) 상기 표에서 재출재율 산출에 사용된 보유보험료와 수재보험료는 각 재보험사가 지역 또는 보험종목에 상관없이 보유 또는 수재한 전체 보험료로서, 코리안리의 재출재율 33.1%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재보험사 등으로부터 수재한 보험료가 반영된 수치임.

자료: A.M.Best(2012, 2013)

⁶⁶⁾ 송윤아전성주(2013)

- □ 무엇보다도, 코리안리의 높은 재출재율은 타 재보험사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는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경쟁하려는 유인 또는 의지를 약화시킬 개연성이 높음.
 - o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 또는 해외소재 재보험사에 코리안리는 고객(출재 사)이자 경쟁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국내시장에 진입하여 적극 적으로 경쟁할 유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내재함.
 - o 해외소재 재보험사가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국내위험 수재에 성공한다더라도, 그 규모가 코리안리의 재출재가능 위험의 규모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소재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중개사를 통해 국내 원보험사로부터 수재하는 것을 포기하고 코리안리의 재출재 물건을 수재할유인이 큼.
- □ 또한, 원보험사 입장에서 코리안리의 높은 재출재율은 적어도 이론 적으로는 거래비용이 이중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비해 보다 높은 요율로 귀결될 수 있음.
 - ㅇ 즉, 유통단계가 짧을수록 거래비용이 줄어든다는 단순한 논리임.

3. 높은 진입장벽 존재: 초기 자본금 압박

- □ 현재 재보험사 법인 설립 시 2가지 종류의 진입장벽이 존재함.
 - o 첫째, 법인 설립 인가를 위한 자본금은 3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정상적 인 재보험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초기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함.
 - o 둘째,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는 선발사업자의 존재는 그 자체로 신규 진입자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선발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초기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함.
- □ 먼저, 신규사업자가 정상적인 재보험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초기 상당한 자본 금이 필요함.
 -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재보험을 받은 회사가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투자부적격인

경우에는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하여야 함.

- 바꿔 말하면, 원보험시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투자부적 격인 재보험시에 출재할 이유가 없음.
- o 따라서, 재보험사가 정상적인 재보험영업을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투자적격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함.⁶⁷⁾
- 그러나, 신생업체의 경우 아무리 재무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좋은 신용 등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함.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신용등급은 5년 이상 큰 손실 없이 보험영업을 잘했을 경우 A- 정도의 등급을 획득할 수 있음.

<표 V-2> 신용평가회사(Moody's) 의 재보험사 평가방법 사례

평가요인	가중치
① 시장지위, 브랜드 및 판매채널	20%
상대적 시장점유율, 글로벌 재보험	
총재보험료 대비 직접재보험료	
② 사업 및 지역 다각화	15%
③ 자산 건전성	10%
투자자산 대비 위험자산 비율	
자기자본 대비 재재보험회수가능금액 및 영업권 비율	
④ 자본 적정성	20%
총 인수 레버리지	
99.6% PML 시 총자연재해노출	
99.6% PML 시 순자연재해노출	
⑤ 수익성	10%
자기자본이익률(ROE)	
영업수익률 Sharpe Ratio	
⑥ 준비금 적정성	10%
지급준비금 진전비율	
석면/환경오염 자금조달 비율	
⑦ 재무유연성	15%
재무 레버리지	
이익보상율	

주: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모범규준 전문 재인용

⁶⁷⁾ 한편, 해외재보험사 국내지점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유인이 없으며 오히려 국내법인 설립시 자본금과 설비, 인력 등을 대폭 확충하고 해외본사의 신용등 급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미국, 호주, 브라질의 경우 자국 보험사 가 해외소재 재보험사에 출재할 경우 해당 재보험사가 지급준비금에 준하는 담보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규제가 있어 자국에서 제대로 재보험영업을 하려면 자국내 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 둘째, 재보험시장에 시장점유율이 60%에 육박한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규사업자에 진입장벽이 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가 선발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초기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함.
 - 코리안리는 1997년 국내 재보험시장이 개방되기 전까지 국내 우선출재제도, 보험요율 구득제도 등을 통해 국내시장에 대한 법률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구축된 통계, 네트워크 등은 시장개방 이후에도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시장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함.
 - 국내시장에서 재보험은 관계영업으로 오랜 기간 거래해온 업체와 거래하는 경향이 짙어, 신규진입 재보험사가 코리안리와 경쟁하여 계약을 취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코리안리로부터 재출재받거나 코리안리가 기피하는 고위 험물건에 접근할 개연성이 높음.
 - 또한 신규진입을 고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의 유지·강화를 의도·목적으로 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방해·배제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동태적 학습효과나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서비스 공급을 늘려감에 따라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자인지와 상관없이 시장지배적사업 자에게 경쟁압력이 될 수 있으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방해 · 배제행위로 인해 경쟁의 압력이 약화되거나 소멸될 수 있음.

4. 요율경쟁과 수익성

- □ 코리안리의 국내수재 손해율과 수수료율을 다각도에서 비교·검토해 보면, 국내 손해보험, 특히 일반손해 재보험시장에 활발한 요율경쟁 이 존재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 무엇보다도, 코리안리의 해외수재 평균 손해율과 수수료율은 국내수재에 비해 높음.
 - 특히, 코리안리의 일반손보 손해율은 국내수재가 50%로 해외수재에 비해 약 30% 낮은 반면, 수수료율은 해외수재보다 불과 2% 낮음.
 - o 또한, 미국소재 재보험사의 최근 7년 평균 손해율은 67%, 세계 주요재보 험사의 최근 5개년 평균 손해율은 65%인 것을 감안하면, 코리안리의 일

반손보 재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상당히 낮음.

- □ 관찰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국내 손해재보험시 장에 참여한 재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누리고 있음.
 - o 최근 10개년 동안 코리안리는 보험영업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지 만, 투자영업이익에서 이를 보전함으로써 2012년에는 1,355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리안리는 해외수재에서 큰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수재만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양호한 보험영업실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됨.
 - o 보험영업적자의 주요인인 해외수재를 감안하더라도 코리안리의 최근 10 개년 평균 ROE는 11.6%로 세계 주요 재보험사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
 - 세계 주요 재보험사들의 최근 5개년 평균 ROE를 살펴보면, 미국버뮤다 소재 재보험사는 7.7%, 유럽소재대형4사는 7.8%, 로이드는 11.7%이며 동기간 코리안리의 평균 ROE는 10.4%임.
 - 또한 2011년 보유보험료 기준 상위 10개 재보험사(Munich Re, Swiss Re, Hannover Re, SCOR Se, Partner Re, Everest Re, Transatlantic Holdings) 의 2002~2010(9년)기간 동안 평균 ROE는 9.9%이며, 동기간 코리안리의 평균 ROE는 13.5%임.
- □ 요컨대, 코리안리의 상대적으로 낮은 손해율과 높은 ROE를 감안하면, 국내 재보험시장에 요율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적어도 국내 재보험시장의 수익성이 좋지 않아 신규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5. 고집중 재보험시장 존재의 의미

재보험시	시장의	유효경쟁	부재는	시장기	디배적사업	자의	지위	남용에	의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경쟁사업	자의	적극적인	진입-	유인을	약화시	<i>ヲ</i>
는 제반	환경에	의한 것	일 수도	있음.					

	시장지배적사업자의	TLOI	ITO어뮤네	시니아다		CON/OII	0
1 1	시성시배식사업사의	시위	일광어구에	OLTHUM OIL	고디언디의	h()%(J)	щ

박하는 시장점유율 및 유효경쟁부재는 다음의 관점에서 문제가 됨.

- ㅇ 첫째, 재보험시장에서의 경쟁 및 시장효율성 악화
- ㅇ 둘째. 신용리스크 증가와 원보험사계약자 피해
- ㅇ 셋째, 원보험사와 시장지배적사업자간 담합유인 제공
- □ 따라서, 재보험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는 그 지위 남용여부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것이 아니라 지배적 지위 자체만으 로도 경쟁 및 효율성,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효경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원보험 또는 일반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재보험이 다른 것은 재보험시 장에서 지배적사업자의 존재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음.

가. 경쟁 및 시장효율성 저해

- □ 재보험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사업자는 그 자체로 경쟁자에게 진입장벽이 됨(즉, 경제적 독점 형성).
 - 재보험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은 규모의 경제, 과거 법률적 독점권에 의해 구축된 국내 시장에 대한 경험, 통계, 관계 등을 통해 경제적 독점 을 형성할 수 있음.
 - 경제적 독점이란 어떤 산업의 기존 독점기업이 거대하여, 이윤의 폭이 크더라도 다른 산업에서 새로 여기에 참가하여 이미 확보되고 있는 시장을 잠식하여 선발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참가 불가능한 경우에 생기는 독점임.
- □ 더욱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신규진입자에 대한 지위남용행위 가능성은 재보험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나쁜 신호로 작용하여 시장 신규진입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음.
 - o 동태적 학습효과나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 신규진입사업자도 수재를 늘려감에 따라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음.
 - o 따라서 현재 비효율적인 사업자라도 시장에서의 공급확대를 통해 충분히 효율적인 사업자가 되어 장기적으로는 유효한 경쟁을 창출할 수 있음.

나. 신용리스크 증가와 소비자피해

출재가 특정 재보험	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원	보험사	입장에서	는
거래상대방리스크,	즉 선	신용리스크	(거래상대	대방의	지급불능	등리스크)	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함.					

- □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출재보험료의 60%가 코리안리로 간 상황에서 국지적 대재해(인재 또는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재출재를 통한 위험분산에 상관없이 코리안리는 일순 상당한 지급책임에 직면하게 됨.
 - 거래상대방리스크는 재보험사의 재출재를 통해 경감될 수는 있지만, 사라지는 것은 아님.
 - 왜냐하면, 재보험사와 재재보험사간 재출재계약은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간 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재보험사는 재보험금을 원보험사에 지급하고 이후 재재보험사에 출재분에 대해 재재보험금을 청구함.
 - 즉,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을 통해, 위험분산, 지급능력안정, 가용자본의 효율적 활용, 인수 능력 확대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재재보험과는 상 관없이 재보험사는 수재한 전체 위험에 대해 책임을 가지게 됨.
- □ 국내 재보험시장의 높은 집중도는 세계 재보험산업이 대형 재보험사 로 집중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름.
 - 민헨리 등은 수재위험이 지리적, 종목별로 분산되어 있는 반면 코리안리의 국내보험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80% 이상으로 수재위험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지 않음.
 - EC(2002)는 EU의 경우 수재위험의 다각화 때문에 원보험사의 출재선 다변화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고 지적함.⁶⁸⁾

⁶⁸⁾ European Commission(2002), p.102

다.	원보험사와	시장지배적사업자간	담합유인	제공
----	-------	-----------	------	----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요율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암묵적
담합을 통해 독점적 이윤을 공유하는 상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함.

- ㅇ 첫째, 원보험시장이 독점적이거나 원보험사들 간에 담합이 존재하여야 함.
- o 둘째,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얻게 되는 독점적 이윤을 재보험사 와 공유한다는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보험사들이 독자적으로는 독 점이윤을 얻지 못하고 재보험사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여야 함.
- 셋째,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수가 적어야 함.
- □ 일반손보의 경우 상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데,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원보험사의 공동인수의 경우 담합가능성이 상존함.⁽⁹⁾
 - o 건설공사보험 등 기술보험은 공동인수비율이 대형사 기준 80%를 넘어 공 동인수가 관행적으로 정착된 분야라 할 수 있음.
 - 참여사는 서로 다른 요율과 보험조건으로 입찰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사 의 요율과 조건을 사용함.
 - o 우리나라 공동원수보험의 경우 단일 요율 및 조건이 참여사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정해진 "게임의 법칙"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성 및 담합가능성이 내재함.
- □ 둘째, 원보험사들은 출재를 전제로 재보험사로부터 요율을 구득하는 등 재보험사의 협력을 필요로 함.
 - o 원보험사의 재보험사 협의요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원보험사 스스로 요율을 산출하는 능력이 부족함.
 - 기업성보험 중 재보험사 협의요율 사용 비중: 2005년 66.5% → 2010년 75.3%

셋째,	코리안리의	재출재를	통한	경쟁사와의	수직적	거래관계	유지
는 경쟁	맹을 제한하기	지는 않더리	나도 경	형쟁유인을 약	·화시킴.		

⁶⁹⁾ 송윤아(2013)

- o 국내 재보험시장에 재보험요율이 일정기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해외재보험사들이 국내 원보험사로부터 직접 수재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 구체적으로, 국내 재보험시장에 재보험요율이 일정기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소위 독점요율) 해외재보험사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음: ① 해외재보험사는 코리인리가 독점요율로 수재한 물건을 재출재 받음으로써 독점이윤 공유하기, ② 독점요율보다 낮은 요율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기
- ②를 선택할 경우 국내시장에는 결국 경쟁요율이 형성될 것이므로 해외재 보험사 입장에서는 ②를 선호할 유인이 작음.
- □ 더욱이,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재보험사와 원보험사 간 계약이 매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재보험사와 원보험사 간에는 암묵적 담합이 형성될 수 있음.
 - 반복계약이라는 재보험계약의 특성은 공동인수(☞ 원보험사간 공동행위 가능성 내재)와 협의요율(☞ 원보험사의 재보험사에 대한 의존도 심화) 과 결합하여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간 담합 유인을 증가시킴.
 -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간에는 원보험요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암묵 적 담합의 가능성이 상존하며, 담합의 결과는 온전히 계약자의 보험료 부 당으로 이어짐.

Ⅵ.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기본원칙

- 가. 건전성제고와 부합하는 경쟁촉진방안 강구
- □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은 건전성 이슈와 충돌할 수 있음.
- □ 예를 들어, 최근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은 재보험거래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 또는 강화하였는데, 건전성 규제를 명분으로 보호무역 주의를 강화한다는 비판이 EU소재 재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됨.
 - o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오랫동안 출재한도 규제, 요구자본산출시 거래 상대방리스크와 집중리스크 반영, 담보설정 및 재보험자산인정 요건 등 을 통해 재보험거래를 감독해옴.
 - EU소재 재보험사들은 담보설정 및 재보험자산인정 요건 등 주요국의 건 전성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함.
 - 첫째, 비인가 재보험거래에 대한 담보설정 및 재보험자산인정 요건은 국가 간 재보험감독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을 위한 IAIS의 움직임에 역 행함.
 - 둘째, 건전성 규제 강화로 인해 해당국 재보험시장이 괴점화되고 출재집중 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보험 가용성이 줄어들고 재보험요율이 인상될 것임. 즉, 해외소재 재보험사는 해당국 재보험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감소한 반면 해당국 보험회사는 소수의 인가 재보험회사에 출재할 유인이 증가함.
 - 셋째, 담보설정 및 재보험자산인정 요건으로 인해 해당국 금융시장에 위험 이 집중되고 해외 재보험회사에서 해당국 은행산업으로 위험전가가 이루어 질 것임.
 - 담보설정 및 재보험자산인정 요건으로 인해 해외 재보험회사 이용이 줄어 들거나 해외 재보험회사가 해당국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얻거나 신용장 개설을 할 것임.
 - 넷째, 해외 재보험회사에 간접적으로 담보설정 또는 자회사·지점 설립을 요구하는 것은 해외 재보험회사의 비효율적 지원배분과 사업비 증가를 초래

하고, 이는 결국 해당국 소재 보험회사와 계약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임.

- □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재보험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건전 성규제 목적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들을 중심으로 기 술하도록 함.⁷⁰⁾
- 나. 재보험에서 건전성 이슈가 중요한 이유71)
- □ 재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해 재보험회사의 분쟁 및 지급거 절과 지급불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
 - o 재보험금 미회수의 원인은 크게 재보험회사의 지급거절(unwillingness to pay)과 지급불능(inability to pay)으로 구분됨.
- 1) 재보험회사의 지급거절
- □ 지급능력과 상관없이 계약조건 및 손해사정에 대한 분쟁, 그 외 절 차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재보험회사가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있음.
 - o Brown and Julga(2005)에 따르면 분쟁 중인 대부분의 재보험계약은 리스 크에 대한 미고지 또는 부실고지, 계약조건의 부실고지, 부적절한 출재 보험료 및 손해액, 부적절한 통보 등에 기인함.⁷²⁾
 - 2009년 미국소재 출재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재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는 서류미비(46%), 담보분쟁(28%), 접수지연(3%), 통보부적절(1%)순으로 높음.
 - 동 설문조시는 미국, 푸에르토 리코, 캐나다, 버뮤다 등에 소재한 138개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2005년과 2009년에 실시됨.

⁷⁰⁾ 재보험과 관련하여 감독당국 등은 주로 '국제수지적자 해소와 원보험사의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개선안을 논의한 바 있지만, 저자는 '국제수지적자' 현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경쟁촉진을 위한제도개선안 제시시 고려하지 않음.

⁷¹⁾ 다음 자료를 인용함: 송윤아(2013. 05)

⁷²⁾ Brown and Julga(2005)

- 설문대상 국가에서는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분쟁 및 소송 중)없이 재보 험회사가 재보험금 지급을 90일 이상 지연할 경우 출재사는 해당 출재분을 재보험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표 Ⅵ-1> 재보험회사의 지급거절 사유

(단위: %)

구분	서류미비	담보분쟁	접수지연	통보부적절	기타
2005년	41	34	7	7	11
2009년	46	28	3	1	9

자료: An Aon Company(2010)

<표 Ⅵ-2> 재보험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

(단위: %)

출재보험료	재보험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				
물세노심묘	1~30일	30~60일	60일 이상		
100만 달러 미만인 회사	62	29	0		
100만 달러 ~ 500만 달러인 회사	65	27	8		
 500만 달러 초과인 회사	27	46	14		

주: 무응답 또는 응답거절 회사수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됨.

자료: An Aon Company(2010)

- □ 최근 재보험시장을 둘러싼 경제적·법적 환경 변화로 인해 과거와 달리 재보험계약 쌍방간 최대신의성실의무 준수 유인이 감소하고 재보험분쟁이 잦아짐.⁷³⁾
 - 과거 재보험계약 쌍방이 최대신의성실의무를 준수할 유인이 컸던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재보험회사는 출재사의 선의를 신뢰함으로써 리스크 또 는 클레임 조사처리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즉, 모니터링 비용과 사전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음.
 - 통상 출재시는 리스크 또는 클레임을 조사하고 수재시는 수재여부, 재보험 료 등을 결정할 때 출재사의 조사정보를 참고함.

⁷³⁾ Thomas, Steven W(1992)

- 둘째, 재보험시장에서 재보험회사가 많지 않고 널리 알려져 있어 반복적 인 거래관계가 관행이었으므로, 거래쌍방의 평판은 미래 소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 셋째, 상호 이익이 되는 장기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거래일방의 최대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실은 단기이익을 초과함.
- o 따라서, 과거 재보험시장에서는 거래당사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법적 기준보다는 자기유인(self-interest)이 더 중요하게 작용함.
- □ 잦은 분쟁을 야기한 경제적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재보험시장 에 진입과 퇴출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보험계약 당사자들은 과거에 비해 평판에 덜 구애받는 경향이 있음.
 - o 재보험시장 내 기업 수가 증가하거나 진입·퇴출이 잦아질수록, 신뢰할만 한 평판 구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상호 평판에 대해 알기 어려움.
 - 또한 재보험회사의 진입·퇴출이 잦은 상황에서 재보험거래 정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출재사 입장에서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민감할수밖에 없음.
 - 대개 재해보험은 사고발생 후 청구에서 지급 및 정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민감한 반면, 재물보험은 보상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신용리스크에 덜 민감함.74)
- □ 둘째, 보험영업의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재보험계약 당사자간 반복적 인 거래관계 유지 가능성이 낮아짐.
 - O 언더라이팅 손실(즉, 보험영업 적자) 및 이윤폭 감소로 인해 출재시는 장기거래관계보다는 보다 낮은 요율을 제시하는 재보험회사를 선택하고 보유를 최소화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려고 함.
 - o 재보험회사도 투자소득으로 언더라이팅 손실을 보전하고자 인수여력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보험료 수입을 통해 현금흐름을 높이려고 함.

⁷⁴⁾ 사고발생 후 청구에서 지급 및 정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장기간배상책임보험(lon g tail liability)과 단기간배상책임보험(short tail liability)으로 구분됨. 산재보험, 의료사고보험 등 재해보험은 대표적인 긴 꼬리 보상보험임(http://www.irmi.com/online/insurance-glossary/terms/l/long-tail-liability.aspx).

2) 재보험회사의 지급불능75)

- □ 재보험회사가 재보험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험회사에 적시에 지급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IAIS에 따르면 1980~2011년 간 29개 재보험회사가 파산하였고 이로 인한 누적손실은 동기간 출재보험료의 0.43%인 18억 달러임.⁷⁶⁾
 - 또한 A. M. Best에 따르면 미국 손해보험회사 파산(1969~2010년)의 3. 7%⁷⁷⁾, 그리고 생명·건강보험회사 파산(1976~2008)의 2.0%⁷⁸⁾ 가 재보험회사의 파산에 기인함.
- □ 최근 재보험산업의 높은 집중도와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 하향 추세 는 재보험의 상호연관성 및 재재보험 스파이럴 발생가능성과 결합하 여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제기함.
 - 구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재보험 활용도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소수 재보 험회사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음
 - 또한 투자환경 악화로 인한 투자수익 감소, 금융위기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그리고 대형 인재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재보험 회사의 신용등급이 하향세를 보임.

⁷⁵⁾ 다음 자료의 일부를 인용함: 송윤아(2012, 12)

⁷⁶⁾ IAIS, "Reinsurance and Financial Stability," 2012. 07.

⁷⁷⁾ A. M. Best, "1969~2010 Impairment Review," A. M. Best Special Report, 2011(Weiss, M. A., "Systemic Risk and the US Insurance Sector, Laval University, 2011 제임용)

⁷⁸⁾ A. M. Best, "1976~2008 Impairment Review," A. M. Best Special Report, 2009(Weiss, M. A., "Systemic Risk and the US Insurance Sector, Laval University, 2011 채임용)

2. 유효경쟁 촉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

- 가. 원보험과 구분된 재보험 법제 마련 필요성
- 1)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재보험업은 손해보험업으로 분류되어 재보험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제가 없음.
 - o 원보험과 재보험은 위험전가의 수단이고 신용리스크와 투자리스크가 존 재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 □ 재보험은 계약의 유형 및 복잡성, 변동성, 지역적 범위(국경간 거래), 현금흐름, 수재위험에 대한 정보, 요율체계 측면에서 원보험과 다르고, 이러한 차이는 원보험업과 재보험업간 상이한 규제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함.79)
 - o 구체적으로, 먼저 원보험은 손해보험의 대형리스크를 제외하고는 계약이 대체로 표준화되어 있는 반면 재보험은 출재사의 특정요구를 충족시키는 개별계약이 일반적이며 재보험사는 원보험사 뿐만 아니라 재보험사, 재 재보험사로부터 수재하기 때문에 위험의 구성이 원보험에 비해 훨씬 복 잡함.
 - 이는 재보험사의 실제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보험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함.
 - ㅇ 둘째, 재보험사업은 원보험사업보다 변동성이 더 큰 경향이 있음.
 - 원보험은 익스포저가 비교적 작은 다수의 증권들로 구성된 반면 재보험은 누적손실에 노출되어 있고 대형손실의 가능성이 큼.
 - 통상 재보험시는 최종 위험인수자로서 원보험시에 비해 보유율이 높음.
 - 셋째, 원보험과 달리 재보험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국경간 거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보험에 적합한 국내기반 감독은 재보험에 적합하지 않음.

⁷⁹⁾ IAI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재보험사의 기술적 준비금, 투자 및 유동성, 자본요건, 지배구조 등에 대한 감독은 원보험과 다른 재보험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이후 IAIS는 재보험사의 담보력에 대한 감독기준, 재보험사의 위험공지에 대한 기준, 재보험사의 투자위험 및 성과공시에 대한 기준, 재보험감독 상호인정에 관한 지침 등을 발표함.

- 넷째, 요율이 시전에 정해진 원보험계약과 달리 재보험계약에서는 이익수수료 또는 요율조정을 통해 재보험사와 출재사가 위험뿐만 아니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임.
- 요율조정조건부 계약은 고정요율조건부 계약보다 리스크 익스포저가 더 낮은 경향이 있음.
- ㅇ 다섯째, 원보험과 달리 신용등급은 재보험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대부분의 국가가 원보험사의 지급불능에 대비한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보험계약 체결시 원보험사의 신용등급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님.
- □ 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원보험업과 동일한 규제를 재보험업에 적용 하는 것은 건전성과 공정경쟁 측면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음.
 - o 예를 들어, 재보험거래는 원보험에 비해 상당히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원 보험과 동일한 보고 및 공시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재보험시장의 구조· 행태·성과 뿐 아니라 재보험사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2) 해외사례80)

- □ EU의회는 2005년 재보험지침(Reinsurance Directive)을 승인하여 EU 회원국이 2007년 12월까지 동 지침을 자국법에 반영하도록 함.
 - EJ 재보험지침은 재보험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재보험사업 영위 요건 등 재보험관리감독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기술함.
 - o EU가 재보험지침을 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재보험에 대한 규제가 회원국간 상이하여 역내 국경간 거래가 위축되고 재보험 영업과 감독에 비효율이 초래됨에 따라 EU는 회원국간 표준화된 재보험감독기준의 필요성을 절감함.
 - 둘째, 원보험과 다른 재보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재보험감독기준의 필요 성을 절감함.

중국은 2005년	재보험업 경	형영에 대한	규제(Regul	ations on	Administration
of Reinsurano	ce Busines	s)를 제정	하여 적용함	닭.	

⁸⁰⁾ 송윤아(2010.11).

3) 개선방안
□ 재보험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 재보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재보험업에 대한 법제는 건전성뿐만 아니라 재보험시장의 경쟁 및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나. 재보험거래에 대한 보고 및 공시 정보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원보험사와 재보험사는 재보험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 및 공사하고 있는데, 현행 보고 및 공시 정보로는 재보험시장 규모는 물론 재보험시장의 구조·행태·성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함. ○ 현행 업무보고서상의 자료만으로는 허핀달 지수는 물론 특정 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함. - 원보험사의 원수보험료 중 일부가 어느 재보험사에 얼마나 출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허핀달 지수를 산출할 수 없음. -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직접 수재한 보험료와 타 재보험사 등으로부터 재출재받은 보험료가 구분되지 않아 재보험사의 점유율 파악이 불가능함 (따라서, 특정 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거래내용이 거래단계별로 구분되지 않아(예를 들어, 출재보험료와 재를 재보험료가 구분되지 않음) 재보험시장 규모는 물론 재보험시장의 주조·행태·성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함.
□ 특정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투명성 부족은 거래당사자의 반경쟁적 행위 발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2) 개선방안

- □ 건전성뿐 아니라 공정하고 경쟁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 도록 재보험거래에 대한 보고 및 공시 정보를 전면 개선해야 함.
 - 무엇보다도, 거래상대방별·거래단계별 출수재보험료 등 거래내용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해야 함.

3) 기대효과

□ 재보험거래의 보고 및 공시 정보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는 거래당 사자의 반경쟁적 행위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3. 유효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가. 집중도 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
- 1) 현황 및 문제점
- □ 특정 재보험사에 대한 높은 집중도는 경쟁 및 효율성, 그리고 건전 성 및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o 재보험시장에 점유율 50% 이상의 선발사업자는 그 자체로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으로써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즉, 신규사업자가 선발사업자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초기 상당 한 자본금이 필요함.
 - 또한, 지역적으로 다변화되지 않은 유사위험을 특정 재보험사가 60% 이상 수재한 상황에서 국지적 대재해(인재 또는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원보험사, 원보험계약자(가계 및 기업) 등이 연쇄적으로 위험에 처할수 있음.
 - 코리안리는 국내 원보험사로부터 수재한 위험의 44%를 해외재보험사 등에 재출재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고 있지만, 국지적 대재해 발생 시 재출재를 통한 위험분산에 상관없이 코리안리는 일순 상당한 지급책임에 직면하게 됨.
 - 즉. 거래상대방리스크는 재보험사의 재출재를 통해 경감될 수는 있지만.

사라지는 것은 아님. 구체적으로, 재보험사와 재재보험사간 재출재계약은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간 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재 보험사는 재보험금을 원보험사에 지급하고 이후 재재보험사에 출재분에 대해 재재보험금을 청구함.

- □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은 재보험거래의 집중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역별 한도 등이 명시된 문서화된 기준을 마련하도록 출재사에 권고하고 있으나 동 모범규준은 실효성이 부족함.
 - ㅇ 모범규준의 경우 권고사항에 불과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
 - 또한, 내부통제 담당인력의 전문성과 재보험거래의 중요성에 대한 보험 회사의 인식이 부족하여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의 자율규제기능을 통한 재 보험거래의 건전성 확보를 기대하기 곤란함.

2) 해외사례

- □ IAIS는 출재사의 재보험사 선택 및 평가 기준의 최소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보험사의 지급능력 평가 뿐 아니라 1사당 또는 1그룹 당 거래한도 등 집중도 평가에 대한 기준 마련을 권고하고 있음.
- □ 미국과 영국의 경우 특정 재보험사에 대한 재보험 의존도가 일정 수 준이상이면 감독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 미국의 경우 전년도에 출재시는 총 수입보험료의 20% 이상을 특정 재보험사 또는 재보험그룹에 출재했거나 또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지 30일이내에 주정부에 통보해야 함.⁸¹⁾
 - 또한, 특정 재보험사 또는 재보험그룹으로부터 재보험환급(recoverables) 이 전년도 계약자잉여금의 50%를 초과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지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함.
 - o 영국은 연 단위 기준 총 수재보험료의 20% 한도 또는 40만 파운드(620만 달러)로 출재보험료 규모를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금액 초과 출재시 재 무건전성감독기구(PRA)에 동 사항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82)
 -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런던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의 규모가 크고 활동하는

⁸¹⁾ CRMA Section 2 J(Concentration Risk), 송윤아(2012.12)

⁸²⁾ 류성경·성주호(2011)

재보험사의 수가 많아 20% 이상의 물량이 출재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강행규정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관에 신고 시 한도를 초과해도 자유롭게 출 재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호주의	경우,	요구지	·본산출시	자산집중리	스크83)를	반영험	함으로써	원보
험사의	출재기	투정	재보험사여	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	84)

한편,	EC(2002))에 따르면	EU으	경우	수재우	혐의	다각화 때문에	원보
험사의	출재선	다변화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고	고지적함.	

3) 개선방안

- □ 첫째, 특정 재보험사에 대한 재보험 의존도가 일정 수준이상일 경우 출재사가 이를 감독당국에 통보하도록 해야 함.
 - ㅇ '일정 수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적용되는 페널티를 명시함 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 둘째,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작성 시, 출·수재사 모두 거래상대방별 출 · 수재보험료를 보고토록 해야 함.
 - ㅇ 현재 주요거래처별 출재보험료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출수재사간 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다수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규모가 누락되는 등 현행 보고항목만으로는 집중도를 모니터링하기 어려움.
- □ 셋째, RBC에서 신용리스크에 대한 요구자본산출시 집중리스크를 반 영함으로써 원보험사의 출재가 특정 재보험사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⁸³⁾ 자산집중리스크(asset concentration risk)는 보험사의 자산이 특정 자산이나 거래상대방에 집중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함.

⁸⁴⁾ APRA, Prudential Standard GPS 117 Capital Adequacy: Asset Concentration Risk Charge.

4) 기대효과
□ 원보험사의 출재집중도에 대한 규제는 유효경쟁 촉진 뿐 아니라 건 전성 제고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임.
나. 법인 재보험사 인가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재보험시장의 유효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인 재보험사 설립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진입이 필요함. ○ 동태적 학습효과나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 신규진입사업자가 수재를 늘려감에 따라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경우, 현재 비효율적인 사업자라도 시장에서의 공급확대를 통해 충분히 효율적인 사업자가 되어 장기적으로는 유효한 경쟁을 창출할 수 있음.
 □ 현재 재보험사 법인 설립 시 2가지 종류의 진입장벽이 존재함. ○ 첫째, 법인 설립 인가를 위한 자본금은 3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정상적인 재보험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초기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함. ○ 둘째,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는 선발사업자의 존재는 그 자체로 신규진입자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선발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초기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함.

□ 정상적인 재보험영업이 가능한 수준의 자본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인 설립 인가여부에 대한

ㅇ 법인 설립 인가여부를 예측할 수 없을 경우 거대 자본 유치가 어려울 수

예측이 가능해야 함.

있음.

2	\ 7L	ᅛ	ш	늰인
۷.	/ / [1	. 0	

- □ 법에 명시된 인가요건만 충족하면 재보험사 설립을 인가하겠다는 정 책적 신호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보내야 함.
 - o 인가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있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정책적 판단의 기준을 시장에 공개 함으로써 인가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3) 기대효과

□ 재보험시장의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인가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 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정책당국이 신규사 업자의 진입을 지지하는 신호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보낼 경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임.

4. 기타 경쟁당국의 모니터링 이슈

- □ 재보험거래는 원보험과 달리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복잡하며 재보험 사에 요구되는 보고 또는 공시 정보만으로는 재보험사의 행태를 파 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적용사례는 우리 경 쟁당국이 향후 재보험시장을 모니터링 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
- □ 본 보고서의 IV장 3절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적용사례'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EU와 미국 경쟁당국은 각각 공동재보험에서 재보험사간 담합, 그리고 보험중개사와 재보험사간 담합에 대해 경쟁법을 적용 또는 적용·검토한 바 있음.

가. 공동재보험에서 재보험사간 담합

□ EU집행위는 공동재보험 참여사간 단일 요율 및 조건, 최혜대우조항 적용, 후발참여사들에게 간사사의 요율 및 조건 공개 등을 경쟁법

o EU집행위가	가 있다고 주장함. 공동재보험에 대해 경쟁 측면의 문 자발적으로 문제 시정을 위한 조치		보험중
	보험사들이 재보험서비스의 주요 험과 관련된 거래행태는 지역어		
*	후 경쟁당국은 공동재보험의 거리 당국의 입장을 주시할 필요가 9		· EU 등
나. 시장지배력	을 가진 재보험중개사와 재보험사	간 담합	
향권 내에 ' 을 가지는 가격을 따르	컷 주 검찰은 시장지배력을 가 있는 재보험사들이 GC의 중개물 대신 서로 경쟁하지 않고 GC가 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들이 50년 '으로 독점적 이윤을 누린 것은	건에 대한 배타적 정한 재보험 거래 이상 출재사와 원	접근권 조건괴 보험계
	도 Marsh, Aon, GC 등 다국적 년 고 및 공시 체계로는 이들의 거리		
	거래당사자의 보고 및 공시 체 중개사와 재보험사간 공동행위	*	

참 고 문 헌

【단행본 등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2012.8)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고시 제 2012-52호
- 금융감독원(2012.10),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 해설서」, 금 융감독원
- 금융위원회(2012.6),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32호
- 김석영(2012), 「RBC 체계에서의 재보험 효과 연구」, 『보험학회지』 제92권, 한국보험학회
- 노상봉(1998), 『보험업법해설』, 매일경제신문사
- 류성경·성주호(2011.9),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 개선방안』, 금융감독원 용역보고서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년도
- 보험연수원(2012),『재보험실무과정』, 보험연수원
- 송윤아(2013.5), 「재보험금 회수가능성 제고를 위한 호주의 건전성규제 강화」, KIRI Weekly 제234호, 보험연구원
- ____(2013.3), 「재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공동운명원칙 적용 예외를 인정 한 최근 판결」, KIRI Weekly 제226호, 보험연구원
- ____(2012.12),「재보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법제 마련 필요성: 재보험신용리스크의 위험과 규제 공백」, KIRI Weekly 제214호, 보험연 구원
- ____(2012.12), 「재보험신용리스크 특징과 접근 방법」, KIRI Weekly 제 212호, 보험연구원
- ____(2012.10), 「미국과 EU 보험중개사의 정보공개기준 강화의 배경과 시사점: Contingent Commission과 이해 상충」, KIRI Weekly 제201호, 보험연구원
- ____(2012.9), 「재보험 거래 당사자의 반경쟁적 영업행위와 이해상충 문 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 KIRI Weekly 제200호, 보험연구원
- ____(2011.3), 「뉴욕보험거래소의 재설립 논의와 시사점」, KIRI Weekly 제122호, 보험연구원
- ____(2010.12), 「미국의 재보험규제 변화와 시사점」, KIRI Weekly 제112

호, 보험연구원

- ____(2010.11), 「주요국 재보험감독기준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KIRI Weekly 제107호, 보험연구원
- 송윤아전성주(2013.5), 「전통적 재보험의 한계와 보험연계증권의 성장」, 『계간보험동향』 제65호, 보험연구원
- 오창균(2008),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최적 보유수준 결정에 관한 연구: 재 보험모형의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박사학위 논문
- 유주선·최병규·김은경(2013), 『보험중개사제도에 관한 연구: 쟁점사항과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장덕조, 「재보험에 있어 원보험수익자의 직접청구권: 상법 제726조의 검토」, 보험개발연구, 1999
- 한기정·이봉의(2013), 「공정거래법상 재보험시장의 쟁점 보고서」, 코리안리 내부자료
- 코리안리(2011), 「알기쉬운 재보험과 코리안리」, 코리안리
- ktb 투자증권(2011.8), 「기업분석: 코리안리」
- A.M.Bset(2012.9), "Best's Special Report: Asia-Pacific Reinsurance Market Review"
- ____(2013.9), "Best's Special Report: Brazil Reinsurance Segment Review"
- An Aon Company(2010), "Ceded Reinsurance Operation Survey"
- APRA(2013), "Prudential Standard GPS 117, Capital Adequacy: Asset Concentration Risk Charge"
- AXCO(2013), "Insurance Market Reports: China"
- Brown, Brian Z., and Julga, Lori E.(2005), "Property & Casualty-Risk & Benefits Management," National Underwriter
- CIRC, Annual Report 각년도
- Cummins, J. David, and Weiss, Mary A.(2002), "The Global Market for Reinsurance: Consolidation, Capacity, and Efficiency," Mimeo
- Cummins, Feng, Zhijian., and Weiss, Mary A.(2011), "Reinsurance Counterparty Relationships and Firm Performance in the US Property-Liability Insurance Industry," Mimeo
- David M.Raim and Joy L.Langford(2010), *Chapter 40 Understanding Reinsurance*
- European Commission(2002), "Study into the methodologies for

- prudential supervision of reinsurance with a view to the possible establishment of an EU framework"
- Griffin, M. T., and Levin, A. J.(2007), "US Insurance and Reinsurance Industry Faces Scrutiny for Anticompetitive Practices," *Federation of Regulatory Councel Journal Vol. 18*
- Group of Thirty(2006), "Reinsurance and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 Holzheu, Thomas, and Lechner, Roman(2005), "The Global Reinsurance Market," Swiss Re
- IAIS(2012), "Global Reinsurance Market Report 2012 Edition" (2012.7), "Reinsurance and Financial Stability"
- Ken Reserch(2011), North America Reinsurance Market Outlook to 2015 -Entering into the Stability Phase
- Lloyd's(2013.1), "Market Presentation: China"
- Mark Radford(2010), "Broker Issues: Conflicts of Interest faced by reinsurance brokers and duties owed by producing and placing brokers to the reinsured," Colin Biggers & Paisley
- McCarthy, Eithne and Stefanescu, Laura(2010), "The New Block Exemption Regulation for the Insurance Sector," *Competition Policy Newsletter*, European Parliament
- Norton Rose Fulbright(2010.7), New Amendments to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reinsurance business
- Outreville, J. Francois(1998.1), "Size and Concentration Patterns of the World's Largest Reinsruance Companies,"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23(86)
- _____(2012), "The World's Reinsurance Groups: A Look at Names, Numbers, Countries and Performance," Working Paper No. 1/2012 RAA(2013), "Offshore Reinsurance in the US Market-2012 Data"
- S&P(2011, 2012, 2013), "Global Reinsurance Highlights"
- Thomas, Steven W.(1992), "Utmost Good Faith in Reinsurance: A Traditional in Need of Adjustment," *Duke Law Journal* (41)
- Wang, Wallace Hsin-Chun(2003), *Reinsurance Regulation: A Contemporary* and Comparative Study, Kluwer Law International

【웹 자료】

-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 · Bureau Van Dijk, Isis database
- · CNseg 웹페이지 http://www.fenaseg.org.br/
- · IRB 웹페이지 http://www.irbbrasilre.com/
- · SUSEP 웹페이지 http://www.susep.gov.br/

보험업 시장분석

인 쇄 : 2013년 11월 발 행 : 2013년 11월

발행인: 노 대 래·강 호 발행처: 공정거래위원회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Home Page: www.ftc.go.kr

(사) 보험연구원

150-60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화재보험협회 빌딩)

Home Page: www.kiri.or.kr

인 쇄: 문중인쇄(주) 044) 868-7153~4

*본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 구조개선과(TEL: 044-200-43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